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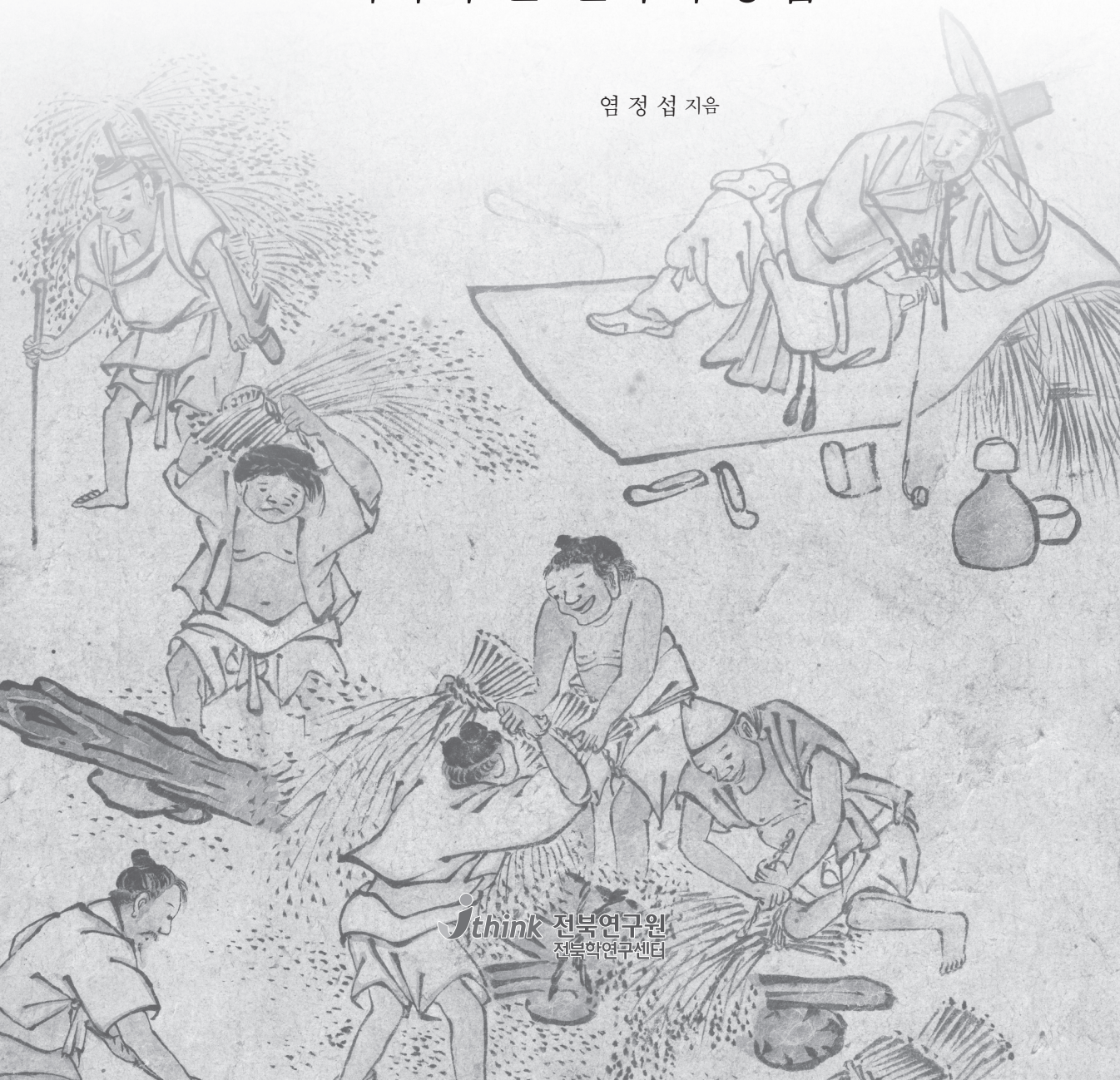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

염 정 섭 지음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

염 정 섭 지음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

호남평야가 자리한 전북은 대표적인 농도(農道)로써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곳입니다. 2020년 복원된 전라감영 앞에 새겨진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은 우리 지역 농업이 가진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대 이후 전북은 일제의 농업 침탈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북 근대 농업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데 이어, 본 총서는 조선후기 농업사를 밝혀나감으로써 한국 농업사의 전체 전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지역 연구의 당면과제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본 총서의 중심자료인 응지농서에서는 무엇보다 당대에 조정과 백성이 농업을 대했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응지농서란 정조 임금의 왕명에 응하여(응지;應旨) 중앙 관료부터 지방 서민까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작성하여 올린 글입니다. 조선 각지의 견문과 경험이 진상된 가운데 호남, 그 중에서도 전북 지역 군현과 연관된 응지농서는 16편입니다.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은 응지농서의 배경과 응지를 진상한 응지인의 성격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농업기술의 지역적 성격, 개간과 간척을 비롯해 수리시설의 특징 등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북의 농업의 생생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반추하고 현재의 가치를 되새기는 초석이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지농서는 기본적으로 농법(農法)과 농정(農政)을 다루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농촌과 농민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산업이기 이전에 백성의 삶과 안녕을 위해 의견을 모았던 조정의 역할을 돌아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에게도 뜻깊은 일이며, 도정에서 실현된 ‘삼락농정’의 참뜻을 돌아보게끔 합니다. 이번 연구가 전북 농업의 긍지를 회고하고 농도의 자부심을 되새김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한 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12월

전북연구원장 권혁남

머리말

이 책은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역사적 실상을 살펴보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정조가 재위 후반에 새로운 농서 편찬을 추진할 때 중앙과 지방의 여러 응지인(應旨人)이 응지농서(應旨農書)를 올려 국왕의 프로젝트에 호응하였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많은 응지농서가 편찬되었는데, 그 가운데 당시 전북 지역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를 중심으로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전북 지역 응지인의 응지농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지역적인 농법의 성격, 개간과 간척 그리고 수리시설의 특징, 농촌과 농민의 변화양상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성격을 대략 간추려 제시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조선시대 농서 편찬과 농법의 발달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부터 ‘지역 농업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역 농업사 연구에 대한 마음 속의 의욕만 있었을 뿐 이를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의지와 실행 사이의 괴리를 스스로 자각하면서도 조선 시대 하삼도를 비롯한 팔도 각 지역의 농업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림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제의 연구작업을 수행한다든지 특별한 부탁과 요청을 받아 긴급한 탐구작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지역 농업사 연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벌써 20년 전에 발표한 저서에서 개괄적으로 ‘18세기 후반 지역농법의 구조와 특색’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틀림 없는 사실이었다. 이 책을 간행하게 되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마음 속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미루고 미뤄뒀던 숙제 하나를 풀어냈다고 자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다행스럽다.

본 연구는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부실한 내용의 연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연

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주었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친절한 도움을 전해주었다. 이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던 시기 학교에서 교양 교육을 관할하는 보직을 맡으면서 연구 작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 때마다 전북학연구센터 여러 선생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연구내용을 조금씩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미흡한 상태의 초고를 읽고 토론해 주신 양선아 교수님과 감수 의견을 작성해 주신 오인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난잡한 원고를 맡아 편집과 교정에 정성을 다해주신 동인기획 편집부 선생님들께 크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뒤늦게 철이 든 남편과 아빠 때문에 속 썩이고 답답해하면서도 곧장 웃는 낯으로 감싸준 아내와 딸, 아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이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내는 마지막 자리이다. 앞으로 ‘지역농업사 연구’를 토대로 삼아 ‘한국 농업사’의 전체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 농민의 역사적 삶을 재구성하는 연구 목표를 다시 한번 눈앞의 책상머리에 되새기려고 한다. 공교롭게도 2022년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근대사회의 문제’라는 난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가 근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미미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디딤돌로 삼아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되새기고 현대 사회에 시사를 던져줄 수 있는 연구 작업에 매진하자고 한다. 역사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작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들의 농사짓기와 동질적인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사짓는 농민의 지혜와 노동을 본받아 ‘여농(如農, 농사짓기와 같게 하다)’하는 연구 의지를 마음속에 다지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연구실의 형광등 불빛을 돋우려고 한다.

2022년 12월 한림대 연구실에서

염정섭 올림

본 저서에 게재된 내용이 (재)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저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발간사	5
• 머리말	6
I. 서론	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 현황과 문제 제기	16
3.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21
II.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	31
1. ‘농서대전’ 편찬 추진	32
2. 응지인의 성격	36
3. 응지농서의 특색	41
III. 농업 기술의 지역적 성격	55
1. 벼농사 기술의 전개	56
2. 밭작물과 상품작물의 재배	66
IV. 개간·간척과 수리시설의 특징	81
1. 개간과 간척의 실상	82
2.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	91
V.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	107
1. 농촌 구조의 변화	108
2. 농민층의 처지와 대응	130
VI. 결론: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성격	151
• 참고문헌	166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현황과 문제 제기
3.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농업의 역사적 실상을 복원하여 재구성하려는 탐구 작업의 일부이다. 조선 후기 시기 중에서도 전북 지역 농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갖춰져 있는 정조가 재위한 18세기 후반을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18세기 후반 정조가 새로운 농서 편찬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면서 이른바 응지농서(應旨農書)에 해당하는 사료가 많이 편찬되었고 그 중에 상당수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당시 지방과 중앙에서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應旨人) 가운데 전북 지역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는 인물을 찾아서, 그들이 편찬하여 정조에게 올린 응지농서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¹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을 살피는 데에 매우 요긴한 자료인 응지농서를 활용하여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18세기 후반이라는 연구 대상 시기를 매우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 자료를 극히 세밀하게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대상 공간도 전북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으로 연구 대상 주제를 설정하고 당시 전북지역에서 편찬된 응지농서를 주요하게 검토하는 연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의 농업, 그리고 농촌 및 농민을 둘러싼 역사적 변화 양상과 더불어 특징적인 존재 양상에 주목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모습도 주목해야 할 것이

1) 18세기 후반 정조에게 올려진 응지농서와 응지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金容燮, 「十八世紀 農村知識人の 農業觀-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一潮閣, 1968; 염정섭, 「조선시대 농서 편찬과 농법의 발달」,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다.² 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대상 지역과 시기, 그리고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여기에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주제를 제한적으로 범주화하여 이를 통해 특정 공간(지역)의 특색(존재양상)과 변동(변화양상)을 살피는 연구작업이다. 또한 역사적 특색과 변화를 전체 지역과의 연관 속에서 정리하고, 특정 시간의 성격(변화양상)을 전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정리하는 연구과제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농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주의하면서 이와 더불어 특수한 개별적인 사례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이 18세기 후반에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살피는 연구가 어떠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본 연구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은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의 현재 상황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연구작업이라는 점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더 부연 설명하자면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실상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당대 다른 지역의 농업사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제시되는 전북지역 농업과 농촌의 실제 모습과 역사적 변화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지역 농업사의 실상과 흐름과 비교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8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고정하고 앞선 시기와 뒤따른 시기를 같이 살

2) 조선왕조의 농업기술은 크게 보아 점진적인 변화 발달이라는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벼농사, 밭농사를 통해 생산하는 작물의 경작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작물 경작법의 지역적 차이와 시대적 변화라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 연구에서 조선시대 농업기술의 지역적 차이와 시대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1988; 吳仁澤, 「18,19세기 水稻 乾播法의 지역적 전개와 農法의 성격」, 『釜山史學』 20, 부산사학회, 1991; 葉正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해보면서 농업의 시간적 변화 양상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가 농업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였지만, 대개의 경우 농업기술, 수리시설 등에 한정된 것이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 19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실태와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번째로 본 연구의 필요성은 18세기 후반이라는 시점이 조선사회가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일본식민지로 변화하는 과정, 즉 한국사회가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에 두고자 한다. 즉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진입하기 직전 조선사회의 농업 현황에 대한 파악을 보다 밀접하게 수행해야 할 시점이 바로 18세기 후반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의 현황을 정리하는 것은 조선사회의 근대 전환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정조대를 중심으로 조선 농업의 실제 모습과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북지역은 일제의 식민지 농업 침탈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난 곳이라고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전북 지역의 농업현황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소순열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전북의 지주제, 지주 경영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⁴ 다만 전북 지역에서 식민지 지주제가 활발하게 전개된 농업사적 배경의 하나로 조선후기 18세기 이후 전북 지역 농업현황, 농촌동향, 농민치

3) 조선시대 농업사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李永鶴, 「朝鮮時期 農業生産力 研究現況」 『韓國中世社會解體期の 諸問題』 下, 한울, 1987.

4) 소순열, 「전북 근대 농업사 연구현황과 전망」 『전북 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 II』, 제1회 전북학대회 발표자료집, 2021.

지 등에 대한 연구가 뚜렷하게 지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항 직전 시기 조선 농업의 현황을 응지농서를 중심으로 가장 원활하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기와 지역이 바로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로 지역사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특히 최근에 들어서 지역사, 지방사 등의 분야사 명칭이 일반화되어 이용되고 있다.⁵ 그런데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연구 성과는 대개 고고학적 조사, 문화재 중심의 현장 조사 등에 치우쳐 있었다. 게다가 지역 중심의 연구시각을 견지한 탓에 특정 지역의 역사가 독자적인 흐름으로만 정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긴장관계, 즉 중앙의 지배 강화와 지방의 자율 확보를 둘러싼 갈등관계와 더불어 지방 내부의 계층 사이와 소지역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망을 살피는 연구는 드물었다.

조선시대 지역사 연구는 당대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 부문이자, 당대에 생존했던 인물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지역 농업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전체 조선 사회의 농업생산이 일률적으로 단일한 성격의 그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개별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농업의 변화 발전도 개별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지역사 연구는 지역농업사 연구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 농촌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전된다면 앞

5) 이해준, 「한국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체제 시론」 『한국사론 32: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2001.

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측면의 지역사 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현황과 문제 제기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정조(正祖)에게 올려진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應旨農書) 및 농업 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하여 당시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역사상을 복원 정리하는 연구이다.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후 농업기술의 변화·발달, 농업기술문명의 구체적인 면모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폭넓게 수행되었다. 조선시대 농업생산력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미 여러 차례 연구사 정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괄목할 만한 것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수전(水田), 한전(旱田)의 작물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 농서 편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⁶ 또한 한전농법을 중심으로 보리 경작법, 시비기술 등을 살핀 연구도 발표되었다.⁷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는 전답(田畓)에서 작물(作物)을 재배하는 농업생산 과정을 주요한 줄기로 삼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 즉 농법(農法), 농업기술을 정리하여 수록한 농서(農書)의 편찬 전개, 전답을 확보하여 경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경지를 관리하는 개간(開墾)과 간척(干拓)의 전개과정, 그리고 작물의 재배에 관개수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수리시설과 수리도구의 활용, 토지소유를 둘러싼 여러 계층 사이의 관계와 권력 및 신분 개입을 살펴보는 토지소유관계의 변화, 토지 주인의 자립적인 농사짓기에

6) 金容燮, 『朝鮮 後期 農學의 發達』 韓國文化研究叢書 2,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970.

7)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一潮閣, 1990.

서 토지주인과 소작인의 농사짓기를 전체적이고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농업경영의 변동, 국가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농정책(農政策)의 전개 등 매우 조밀한 세부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외에 농민의 활동 공간으로서 농촌, 그리고 농촌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농민,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도 진행되었다. 다만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농촌의 실제 모습은 농촌의 조직화와 농촌 구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커다란 연구의 집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농업생산을 비롯한 농업관련 활동의 주체인 농민에 대한 연구성과도 마찬가지로 농민들 스스로 산출한 역사 사료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연구의 활성화를 지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 가운데 특별히 전라북도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과 저술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⁸⁾ 개항기를 전후한 시기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전북 지역의 농업을 살핀 연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조선시대 전북 지역 농업사 연구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의외라고 판단된다. 결국 현재의 연구 현황에서 조선시대 전북 지역 농업의 역사적 실상과 변화를 다룬 성과가 적은 편이라는 점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연구 대상 지역을 전북으로 한정할 경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전체적인 농업사 연구현황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현황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

8) 최근에 조선시대 전북 지역 농업사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 정리가 발표되었지만 매우 소략한 것이었다. 염정섭, 「전북 조선시대 농업 연구의 흐름과 과제」 『전북 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 II』, 제1회 전북학대회 발표자료집, 2021.

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본 과제에서 주목하는 연구 대상 자료인 응지농서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조는 1798년 11월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 綸音)」을 내리고, 조선의 농정을 혁신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조는 ‘농가지대전(農家之大全)’ 즉 ‘농서대전’에 해당하는 농서를 편찬하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다. 이때 정조에게 전국의 많은 관리, 유생 등이 응지농서를 올렸다. 김용섭은 응지농서를 자세하게 분석 검토한 논문을 제출하였다.⁹ 그리고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應旨人)들을 농촌지식인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염정섭은 응지농서의 편찬과 응지인의 성격 등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이들은 농촌지식인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정조의 농정책과 농업개혁에 호응한 우호세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수정된 입장을 제시하였다.¹⁰

지금까지 응지농서를 검토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지농서의 전체적인 진정(進呈) 현황, 응지농서의 전체 내용에 대한 분석, 응지인의 성격 규명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응지농서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응지인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전북지역의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를 당시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해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분석하는 연구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응지농서는 그 자체가 지역의 농업실정을 담고 있는 지역농서에 해당한다. 이들 응지농서를 조사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그리고 전후 다른 농서와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전북 지역의 응지농

9) 金容燮, 「十八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業觀-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朝鮮後期農業史研究』 1, 一潮閣, 1968.

10) 염정섭, 「조선시대 농서 편찬과 농법의 발달」,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서에 담겨 있는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현황을 추출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농업사의 흐름 가운데 농업기술과 개간·간척 및 수리시설에 연관된 연구현황은 아래와 같다. 김용섭, 민성기 등의 연구에서 조선 후기의 농업생산력 발달을 지적하면서 17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급격한 농법의 발달을 강조하였다. 다만 농법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점차 변화해나가는 것이라는 속성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수전과 한전의 생산 기술이 경종법(耕種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발전이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수전 이양법(移秧法)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전 작물 가운데 중요한 곡물인 보리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농종법(壟種法)이라는 방식으로 경작하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견종법(畝種法)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농업기술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일부 언급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개간 간척을 다룬 연구를 보면 연해 지역의 간척을 다룬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다. 이태진은 16세기 척신정치의 경제적 배경 일단을 언전(堰田) 개발을 통해 밝혔고, 이경식은 연해지역 한광지의 간척을 둔전(屯田) 설치와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또한 송찬섭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신전(新田) 개간의 확대와 경영형태를 살펴보면서 개간에 지주층을 비롯하여 상인 등도 참여하고 있었고, 개간에 투여한 물력에 따라 개간지의 소유구조가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남궁봉은 김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농지개간과정을 살펴보고, 양선아는 19세기 간척을 통해 조성된 부안 용동궁 장토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홍금수는 19세기 중반 이전 조선사회에서 이루어진 전북지역의 연해지역 간척의 특색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 개간 간척

에 대한 연구 속에서 전북 지역을 조사하는 본 연구는 ‘장토문적’을 비롯한 둔전, 궁방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시대 각 지역 농업의 현황과 변화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오인택은 18, 19세기 수도(水稻) 건파법(乾播法)의 지역적 전개와 농법(農法)의 성격을 검토하여 건파법을 활용하는 농업지대에 주목한 바가 있었다.¹¹ 그리고 최홍규는 수원 유생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千一錄)』을 중심으로 18세기 후반 수원지방의 수전농업 즉 벼농사 기술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¹² 또한 염정섭은 2002년에 ‘18세기 후반 지역농법의 구조와 특색’을 소개한 저서를 발표하였지만 개괄적인 설명에 그친 것이었다.¹³ 한편 김성우는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지역개발과 영남농법을 연결시켜 구조화한 논지를 발표하였고,¹⁴ 이정수는 노상추(盧尙樞)가 남긴 일기를 분석하여 재산변동을 농업경영과 연관시켜 설명하기도 하였다.¹⁵

이와 같이 농서 자료, 일기 자료를 지역의 농업사 자료로 활용하여 농업경영, 농지확보의 전개 양상을 정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농사관행의 개별성, 수리시설의 특색, 기경법과 파종법 등의 측면에서 보이는 각 지역 농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과제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피는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1) 吳仁澤, 「18,19세기 水稻 乾播法의 지역적 전개와 農法의 성격」, 『釜山史學』 20, 부산사학회, 1991.

12) 崔洪奎, 「正祖代 水原地方의 水田農業의 발전」 『正祖思想研究』 第2號 -八達李大均會長古稀記念, 正祖思想研究會, 1999.

13)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14)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 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2012.

15) 이정수, 「조선후기 盧尙樞家の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29, 부경역사연구소, 2011.

3.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채택 활용할 연구방법의 첫번째는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應旨農書)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18세기 후반 정조에게 올려진 응지농서 가운데 전북 지역에 해당하는 군현과 연관된 응지농서가 16편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 연구에서 충실하게 분석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연구 현황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60년대 김용섭의 연구와 2000년대 염정섭의 연구가 응지농서를 다루었지만 전체적인 현황과 특징을 다룬 것이고, 특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응지농서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진정된 응지농서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승정원일기』, 『일성록』,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응지농서를 상소 형식, 책자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응지농서의 내역

상소 형식	책자 형태
함열(咸悅) 현감 이인채(李寅采)	남원(南原) 유학(幼學) : 노익원(盧翼遠), 장현경(張顯慶), 허질(許耄), 허호(許顯), 장윤(張火+允)
순창(淳昌) 군수 서유구(徐有渠)	무장(茂長) 유학(幼學) : 강석운(康錫運), 강순(康洵) 전주(全州) 유학(幼學) : 김상직(金尙直), 송상휘(宋相彙), 이장렬(李章烈), 이여효(李汝孝)
*순장(巡將) 정도성(鄭道星)	고부(古阜) 유학(幼學) 박도흙(朴道欽) 진안(鎭安) 유학(幼學) 박종혁(朴宗赫) 순창(淳昌) 유학(幼學) 신보권(申輔權) *전라(全羅) 도사(都事) 김하련(金夏璉)

추가로 응지인의 연관 지역이 전북 지역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호남 인물로 기재된 전라 도사(都事) 김하련(金夏璉), 순장(巡將) 정도성(鄭道星) 두 사

람의 응지농서도 적극적으로 참고 활용할 것이다.

두번째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활용할 연구방법은 ‘지역성’이라는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시각으로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살핀다는 점이다. 앞서 전북 지역 응지농서의 지역적인 특색을 주목한 것과 더불어 농업기술, 개간·간척 및 수리시설, 그리고 농촌과 농민의 변화양상에 반영된 지역성, 지역적인 성격을 주요한 분석과 정리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농업기술 즉 농법의 구체적인 성격을 오랜 기간에 걸쳐 수립된 각 지역의 농사관행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 지질과 하천의 특색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개간, 간척, 수리시설의 특색 또한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을 상소문, 소지, 민장 등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지역성을 중심에 놓는 연구방법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타 지역과의 비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사 관행이나 농기구, 수리시설, 개간·간척 등의 농업실천은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선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정리된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타 지역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조선 후기 전체적인 농업의 변화 흐름과 전북지역의 그것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세번째로 본 연구과제에서 채택하는 연구방법은 농업기술이나 개간, 간척, 수리 시설 등과 관련된 서술 내용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18세기 후반 농업, 농촌이라는 공간적, 시간적 경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전해지는 역사 자료의 현황은 애초의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그 속에서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의 농업 농촌의 역사적 변화를 찾아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농업사 연구의 당면 과제는 지역 농업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는 전북 지역의 농업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사의 해명이라는 차원과 지역 농업사를 정리하는 것은 서로 깊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 연구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해준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이해준은 지역사 자료에 관련한 조사방법론과 자료 정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를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중앙중심적 평가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②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각 지역마다 전해오는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을 선입관 없이 충분히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 ③ 지역사와 지역문화의 특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서술하는 일이 요망된다고 정리한 바 있다.¹⁶ 이해준의 논의를 지역 농업사의 현안 과제와 연결시켜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지역의 농업사 관련 자료를 정리 연구하는 것과 지역의 문화 특성과 연관시켜 체계화하고 서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공간적으로 설정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로 볼 때 전라북도 지역에 해당한다. 전북지역이라는 지역 단위는 사실 1896년(건양 1)에 전국을 8도에서 13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라도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었다.¹⁷ 호남은 고려 초에 금강 이남을 강남도(江南道)라 부른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강 상류의 호강(湖江) 남쪽에 위치하는 지방이기에 호남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벽골지의 남쪽이라는 의견도 있다.

호남지방의 지리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금강이,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이 각각 호서지방(충청도)과 영남지방(경상도)의 경계를 이룬다. 호남지방

16) 이해준, 「한국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체제 시론」 『한국사론 32: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2001, 223쪽.

17) 호남지방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남지방」(2022년 10월 10일 검색).

은 소백산맥에 이어 노령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 있어 동고서저의 지형을 나타내며, 노령산맥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의 경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소백산맥에는 백운산과 덕유산 등의 명산들이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영남 지방과의 교통로로 이용되는 육십령(六十嶺)·팔랑치(八良峙) 등이 있다. 노령산맥에는 운장산(雲長山)·내장산(內藏山) 등의 명산이 있다. 또한 노령을 통하여 예로부터 남북 교류가 이루어졌다. 하천은 남쪽에 영산강이 흐르고 북쪽에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 하천 유역에 전남평야와 호남평야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 기후는 내륙산지로 갈수록 고랭지의 성격을 띠어 한서의 차가 크고 강수량이 많으나, 해안에 가까울수록 한서의 차는 감소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쪽지방에서 더욱 뚜렷하다.

전북지역을 하나의 농업단위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남지방의 기후, 토양 조건에 근거하고 여기에 전북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감안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생태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의 농업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¹⁸⁾ 전라북도호 호남평야로 대표되는 평야지대인 서부와 무진장으로 대표되는 산악지대로 크게 구분된다. 평야지대와 산악지대의 접이지대라 할 수 있는 남원, 순창, 임실, 완주 등도 위의 두 지대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이 지역들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전북의 지역농업이라고 할 때 전북이라는 단위가 20세기에 만들어진 행정단위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전북 지역의 농업지대를 크게 서해안에 접해 있고 예전에 전라우도에 속해 있던 벼농사 중심 지역과 내륙 산간 지역에 해당하고 예전에 전라좌도로 지목되었던 밭농사 중심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8) 양선아, 「토론문」 『2022년 전북학 학술연구 성과발표회』, 2022.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18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후반은 주요하게 정조의 재위시기에 해당하지만, 이 시기는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로 이어지는 국왕이 재위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의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왕대에 걸쳐 100여 년에 달하는 이 시기동안 정치사적으로 볼 때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숙종대에 빈발하였던 환국(換局)은 영조 재위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붕당 사이의 정권 교체가 상대당에 대한 복수와 함께 벌어졌다. 그리고 숙종대부터 대두하였던 탕평론(蕩平論)을 영조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탕평책(蕩平策)이 실시되었고, 정조도 또한 영조가 추진한 탕평책을 계승하면서 나름대로 발전시킨 독자적인 탕평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순조가 즉위하면서 탕평의 색깔은 사라지고 세도가문(勢道家門)이 득세하는 세도정치시기로 변환되었다.¹⁹

18세기 초중반 이후 조선의 향촌사회에서 사족(士族)들은 앞선 시기에 향안(鄉案)과 동약(洞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행사하던 지배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변동, 그리고 이와 연관된 신분질서의 변동은 신향(新鄕)이라 불린 새로운 신흥세력의 대두를 촉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숙종대 중반 이후 관주도(官主導) 향촌통제책이 점차 면리제(面里制)의 강화와 더불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향(吏鄕) 세력과 수령(守令)이 향촌사회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19)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 조선사회의 정치적 변화 흐름에 대해서 다음 논저를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鄭奭鍾, 『朝鮮後期の 政治와 思想』, 한길사, 1994; 朴光用, 「조선후기 ‘蕩平’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4;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研究』, 지식산업사, 1997;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반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1990;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숙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2010.

행정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호(饒戶) 또는 부민(富民)이라고 불린 새로운 사회세력들은 총액제(總額制)로 운영되는 수령의 부세행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기존의 사족들이 장악하던 향촌사회 지배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기존 세력과 신흥 세력 사이의 세력 다툼이 향전(鄉戰)이라는 양상으로 첨예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국가의 부세체제는 점차 총액제의 경향과 지세(地稅)로 변화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민들은 도결(都結)을 중심으로 지세화되고, 군현 단위로 총액제로 운영되어 나가는 부세체제의 변동 속에서 전답에서 유리되어 도시 지역의 빈민(貧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궁방(宮房)이나 아문(衙門)의 토지 침탈에 자기 소유토지를 상실한 소작 농민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지 못한 소작농들은 전주(田主)와 국가가 자행하는 경제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전주의 지대 수취에 저항하는 항조(抗租) 운동이나 국가의 전결세(田結稅) 수취 등에 저항하는 항세(抗稅) 움직임을 펼쳐나갔다. 나아가 군현의 부세행정에 저항하는 부민(富民)과 연합하여 농민항쟁(民亂)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왕위에 오른 정조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²⁰ 정조가 주도한 대응책 모색은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전 분야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인 변화 나아가 정치적인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숙종대 후반 이후 강화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려는 것이었다.²¹ 또한 정조대에 추진되었던 제반 정책은 전체적으로 18세기 국

20) 18세기 후반 正祖 在位 시기를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그 동향에 대하여 다음 연구업적을 참고할 수 있다. 鄭玉子, 『朝鮮後期 文化運動史』, 일조각, 1988;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金文植, 『朝鮮後期 經學思想 研究』, 일조각, 1996.

21) 李泰鎮,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 23 서울대 국사학과, 1990.

왕들이 추구하였던 소민보호(小民保護)의 구체적인 발현이었다.²² 그리고 그러한 소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가장 특별하게 본격적으로 펼친 것이 바로 새로운 국가적 농서 편찬 사업이었다.

정조가 주도한 권농책이자 나아가 소민을 보호하기 위한 분투가 바로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려는 것이었다. 정조는 1798년(정조 22) 11월 30일 「권농정구 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을 반포하였다. 정조는 종합적인 농서(農書)를 편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농정(農政)의 커다란 변화를 꾀하려는 의지를 이 윤음 속에서 피력하고 있었다. 정조가 「농서윤음」을 팔도의 백성들에게 낱낱이 반시되기를 바란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종합농서로 '농서대전(農書大全)'을 편찬하려는 것이었다.²³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기 위한 방식이 일차적으로 전국의 농업기술 현황 즉 농법의 현황을 조사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조에게 올려진 전북 지역 응지인의 응지농서를 중심으로 18세기 후반에 초점을 맞추어 전북 지역 농업의 역사적 실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차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서론’에서는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피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현황과 문제 제기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를 가늠하고, 이어서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서론의 설명을 통해 본론의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22) 19세기 후반 高宗代 民國 정치이념을 18세기 탕평군주의 소민보호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李泰鎮, 「大韓帝國 皇帝政과 民國 정치이념의 전개-國旗 제정·보급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22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998.

23) 正祖의 ‘農書大全’ 편찬추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十八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業觀-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韓國史研究』 12, 韓國史研究會, 1968; 廉定燮, 「18세기말 正祖의 ‘農書大全’ 편찬 추진과 의의」 『韓國史研究』 112, 韓國史研究會, 2001.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할 것이다.

‘Ⅱ.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에서는 정조대 ‘농서대전’의 편찬 추진과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한다. 정조대 후반 응지농서가 진정(進呈)되는 상황 속에서 전북 지역 응지농서의 전체적인 현황과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의 성격을 살펴본다. 다른 지역에서 올려진 응지농서와 비교하면서, 응지농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하여 응지농서의 분석을 통해 당시 전북지역의 농업생산, 농촌사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제시할 것이다.

‘Ⅲ. 농업 기술의 지역적 성격’에서는 18세기 후반 전북지역 농업기술의 특징과 특색을 정리한다. 먼저 벼농사 기술의 조선 팔도에서의 양상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 벼농사의 특색을 품종, 재배법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밭작물과 상품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자가 소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정리하려고 한다. 남초 즉 담배를 중심으로 상품작물의 재배가 상품 교역 체제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필 것이다. 특히 응지농서 이외에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농업기술의 변화 흐름을 검토할 것이다.

‘Ⅳ. 개간·간척과 수리시설의 특징’에서는 조선 후기의 개간 간척 양상을 바탕으로 특히 전북지역 서해안에서 전개된 간척에 주목하여 정리할 것이다. 궁방(宮房) 등과 전북 지역의 농민이 주도하는 간척 활동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그리고 수리시설의 경우 응지농서,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전북지역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양상에 보이는 특색을 살펴볼 것이다.

‘Ⅴ.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에서는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응지농서 등을 분석 정리하여 농촌사회 구조의 변화 양상과 농민층의 대응과 분화 실상을 정리한다. 농촌사회의 변화는 국가적인 통제 양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농민층의 처지와 대응을 응지농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조선사회의 변동 속에서 전북

지역의 농민층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I.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성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 현재적 시사점 등을 정리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현재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서술할 것이다.

II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

1. '농서대전' 편찬 추진
2. 응지인의 성격
3. 응지농서의 특색



1. '농서대전' 편찬 추진

정조대 후반 응지농서가 진정(進呈)되는 상황 속에서 전북 지역 응지농서의 전체적인 현황과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의 성격을 살펴본다.²⁴ 정조는 1798년 11월 30일에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 이하 「농서윤음」으로 약칭)」이라는 윤음을 내외(內外)에 반포하였다.²⁵ 정조는 「농서윤음」에서 조선의 농정(農政)을 혁신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경외(京外) 신민(臣民)의 협력을 크게 당부하였다.

정조는 「농서윤음」을 반포한 목적 즉 자신이 추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윤음 본문내용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농서(農書)를 편찬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의 인용문이 「농서윤음」에서 윤음의 반포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내가 일찍부터 근본을 돈독히 하고 실제에 힘쓰는 정사(政事)에 뜻을 두고 농서를 편찬하여 여러 주군(州郡)에 반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서로 다르고 풍토(風土)가 똑같지 않으며, 가난하고 부유함을 고르게 하기 어렵고 일과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것만을 지키게 할 수가 없다. 대궐은 만리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마다 각자 양책(良策)을 진달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절충해 쓸 것이니 그런즉 농가(農家)의 대전(大全)<農家之大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²⁶

24) 응지농서와 응지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金容燮, 「十八世紀 農村知識人の 農業觀-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一潮閣, 1968; 염정섭, 「조선시대 농서 편찬과 농법의 발달」,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25) 『日省錄』 正祖 22년 11월 30일 己丑 (27권 99-101면) 下勸農政求農書綸音.

26) 『日省錄』 正祖 22년 11월 30일 己丑 (27권 99쪽-101쪽) 下勸農政求農書綸音; 竊嘗有意 於敦本

정조는 농정을 혁신하는 것과 함께 ‘농가지대전(農家之大全)’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서 편찬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²⁷ 정조가 편찬하려고 하였던 새로운 농서의 명칭에 대하여 일단 ‘농서대전(農書大全)’이라고 붙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²⁸ 정조는 ‘농서대전’에 담으려고 생각하였던 농업기술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권농정구농서윤음」에서 제시해놓고 있었다. 바로 농업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리(水利), 토의(土宜), 농기(農器)를 제시하면서, 수리의 진흥(興水功), 토의의 파악(相土宜), 농기의 개선(利農器) 등을 강조한 것이었다. 정조는 세 가지의 농업기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각 지역의 농업 현실에서 정립된 농사 관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종합 정리하여 ‘농서대전’의 편찬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정조는 「농서윤음」을 팔도의 백성들 모두에게 낱낱이 알리고자 하였다. 정조는 「농서윤음」을 반포한 바로 그날 경외에 「농서윤음」을 내려보내도록 지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정리자(整理字)로 「농서윤음」을 인출(印出)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 「농서윤음」을 게시하여 백성들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농서윤음」은 한문본 뿐이어서 그 내용을 당시 백성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시 서울에 올라와 있던 김천숙(金天肅)의 언급에서 「농서윤음」이 언해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김천숙은 1798년 12월에 정조에게 자신의 농정과 농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務實之政 命編農書 欲頒州郡 而古今之各異也 風土之不并也 貧富之難齊也 事力之未逮也 有不可以硬定而膠守 則階庭莩里 人人各陳良策 我則受之 折衷而用之 可謂農家之大全.

27) 『綸音⑤』(奎5166) 「御製勸農政求農書綸音」.

28) 염정섭, 「18세기말 正祖의 ‘農書大全’ 편찬 추진과 의의」 『韓國史研究』 112, 韓國史研究會, 2001.

신은 멀리서 농사짓는 백성으로 마침 경낙(京洛, 한성부)에 머물고 있었는데, 농정윤음(農政綸音)이 진언(眞諺)으로 번역 등사되어 방곡(坊曲)에 두루 게시(揭示)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감격하고 고무됨을 이기지 못하였다.²⁹

김천숙이 어떠한 이유로 서울에 올라와 있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가 한성부에서 본 「농서윤음」은 한문본과 언문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서윤음」의 언해본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용문에 보이는 진언(眞諺)이 바로 진서(眞書, 한문)와 언문(諺文, 언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농서윤음」이 언해되었을 가능성은 이 윤음이 수록되어 있는 『윤음(綸音)』(奎5166)을 살펴보면 더욱 짙어진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윤음(綸音)』(奎5166)에 총 6건의 정조가 내린 윤음이 수록되어 있는데, 「농서윤음」 이외에 5건의 윤음은 모두 언해(諺解)가 첨부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1794년에서 1797년 사이에 정조가 내린 윤음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천숙이 「농서윤음」의 언해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 그대로라고 파악해야 온당할 것이다.

정조의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많은 응지농서가 올라왔는데, 그 전체적인 현황은 『일성록』, 『승정원일기』, 각 개인의 문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략 1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응지농서를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응지농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⁰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를 바탕으로 ‘농서대전’ 편찬이 추진되었다. ‘농서대

29) 『承政院日記』1802책, 正祖 22년 12월 16일 乙巳 (95-540나) 前 同知 金天肅 上疏.

30) 『日省錄』에 실린 應旨農書의 내용을 분류하고 세밀하게 연구성으로 金容燮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十八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業觀 - 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韓國史研究』12, 1968.

전' 편찬 추진 작업은 정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농서대전'의 편찬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1799년 4월 20일 이후의 일이었다. 정조가 '농서대전'의 구체적인 편찬을 4월 말에 지시한 점은 다량의 응지농서가 검토되는 5월 22일의 『일성록』 기록에서 낱낱이 확인된다.³¹ 1799년 5월 하순에 신편(新編) 농서(農書)의 편찬 추진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³² 정조는 그때까지 특히 이틀 전에 대대적으로 실행한 응지농서에 대한 검토 작업의 결과를 무엇인가의 대상에 편입시키는 것이 백성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이미 농서를 구한 본 뜻에도 걸맞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때 정조의 언급에서 나오는 '편입'이라는 말은 당시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바로 '농서대전'의 편찬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서대전'의 편찬 추진은 규장각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조력을 기울인 인물은 이서구(李書九)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서구는 '농서대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응지농서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였다.³³ 이서구는 계속해서 농서운음을 내린 목표, 즉 정조가 최종적으로 성취하려는 목적이 새로운 농서를 편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하였다. 그 자신이 응지농서를 검토하여 정조에게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조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서구는 “장차 하나의 농서를 편성하려고 하였다”라고 정조의 구체적인 의도를 명

31) 응지인 23명이 올린 應旨農書에 대한 備邊司의 回啓 내용이 『承政院日記』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2) 『承政院日記』 1809책, 정조 23년 5월 24일 辛巳 (95-945나); 上曰 農書 多是陳譚 而其中 亦豈無 一二可採 既已求之 亦不可無信 今之道 看詳抄出 以爲編入之地 似好矣.

33) 李書九, 『惕齋屏居錄』(규장각 古0320-9); 戊午 己未間 聖意惓惓民事 宵旰憂勤 命侍從出宰者 各陳民邑之弊 又以重穡力農 爲敦風正俗之本 頒降綸音 令方伯居留之臣 以至士庶 各陳務農之道 將欲編成一農書.

백하게 반영하여 편찬작업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추진한 ‘농서대전’ 편찬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 응지농서를 검토하여 ‘농서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정리는 많이 진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를 정리한 이후 초초(初草, 첫번째 초고)를 만드는 작업으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농서대전’ 편찬작업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수행할 편찬 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른바 찬집(纂輯) 당상(堂上)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살핀 이서구는 실제의 찬집을 담당하는 당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기초자료의 정리작업으로 응지농서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1799년 5월 이후 어디에서도 ‘농서대전’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비공식적으로 찬집을 맡아 수행할 사람이 지정되어 찬집과정이 진행되었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과정인 교정(校正)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서대전’ 편찬 추진의 의의는 농서의 체제라는 측면보다는 지역적인 농법의 종합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정조에게 올려진 응지농서는 그 자체가 각 지역의 지역농서들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 후기 농업기술의 발달을 총괄하여 집대성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2. 응지인의 성격

정조의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을 좀더 자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전북 지역의 응지인의 성격을 같이 살펴본다. 정조는 「농서윤음」에서 조선의 농정을 개선하고, 전국의 농법 현실을 종합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공공연하게 요구

하였다. 정조가 애타게 도움을 달라고 고대하던 상대는 바로 「농서윤음」의 직접 수령자인 대소신서(外大臣庶) 즉 관료, 유생, 백성들이었다. 정조의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료, 지방 유생, 서민 등이 자신의 견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기술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작성하여 정조에게 진정(進呈)하였다. 정조에게 자신의 지혜와 방략을 적어 올린 이들을 응지인(應旨人)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팔도의 응지인들이 정조에게 올린 농서(農書)들이 바로 응지농서(應旨農書)라고 지칭할 수 있다.

정조는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응지(應旨)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려 깊고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었다. 하나는 장소(章疏)의 형식으로 상소문(上疏文)을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책(簿冊)의 형태로 농서(農書)를 만듦으로써 제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각지의 응지인(應旨人)은 혹은 상소를 올리거나, 혹은 책자를 올렸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형식으로 팔도의 응지인들이 정조에게 올린 농서(農書)들이 바로 응지농서(應旨農書)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응지인들이 응지농서를 저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사전문가인 노농(老農)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 노농의 도움을 받아서 얻은 식견이나, 또는 노농의 행적에 대한 견문(見聞)에 근거하여 응지농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또한 응지인 중에는 스스로 노농(老農)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수고로움'과 '농민들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도 하였다. 응지인 중에는 정조와 지근거리에서 세자(世子)의 사부(師傅) 자리를 맡고 있던 고관(高官)이 있었고, 반면에 서울에 살고 있던 서민(庶民)도 있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사람들은 중앙 관리와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 유생이었다. 중앙 관리로 활약하던 응지인 중에 정약용(丁若鏞), 박지원(朴趾源), 서유구(徐有渠) 등은 정조와 규장각을 중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었다.

또한 응지농서의 응지인 중에는 정조와 특별한 학문적인 측면의 교분(交分)

을 쌓았던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정조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든 선집류(選集類)의 교정(校正)에 참여하여 정조와 친분을 맺은 인물들이었다. 즉 교정유생(校正儒生)으로 정조의 편찬사업에 관여하였다가 응지농서 응지인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조가 규장각을 통하여 주도한 편찬사업 과정 특히 교정과정에서 참여한 인물은 지방의 유생으로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는 지방의 여론 주도층을 정국 운영에 깊숙히 개입시켜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을 광범위하게 만들고 또한 확고하게 다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정조의 교정 유생으로 선발된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전북 지역에서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이었다.

1798년 정월 『어정대학언의유선(御定大學衍義類選)』과 『어정주서집략(御定朱書輯略)』을 교정하는 유생이 전라도 전역에서 선발되었다.³⁴ 이는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득신(李得臣)이 주관한 것이었는데, 그는 총 14명의 유생을 뽑아 교정에 참여하게 하였다.³⁵ 광주 목사 서형수(徐滢修)와 순창 군수 서유구(徐有渠)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전라도내의 교정유신을 선발하여 광주 향교에서 교정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³⁶

정조의 어정책자 교정사업에 교정 유생으로 참여하였다가 뒤에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이 된 인물들 전라도 지역에서 여러 사람 찾아볼 수 있다. 담양(潭陽)의 남극엽(南極曄), 순창(淳昌)의 신보권(申輔權), 고부(古阜)의 박도흙(朴道欽), 영광(靈光)의 이대규(李大奎), 능주(綾州)의 남익(南燧), 장흥(長興)의 위백

34) 전라도 담양의 유생으로 선발된 남극엽의 사례에서 교정 유생 선발 상황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南極曄, 『愛景堂遺稿』 卷3, 營抄再校.

35) 李得臣은 1797년 5월 전라도 觀察使에 임명되었다<『正祖實錄』 권46, 正祖 21년 5월 辛亥 (47-22)>.

36) 正祖가 전라도 유생을 시켜서 교정하게 한 것은 眞德秀의 『大學衍義』와 丘濬의 『大學衍義補』에서 가장 긴요하고 더욱 경계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려 뽑아 손수 평점하고 채집한 『大學類義』라는 책이었다(『正祖實錄』 권54, 附錄 正祖大王行狀 (47-294).

순(魏伯純)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³⁷⁾ 전라도 지역의 응지인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남극엽(南極曄)을 필두로 『대학연의(大學衍義)』 등을 교정하는 유생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들 교정유생으로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들은 중앙과 지방의 관료직에 있거나 지방 유생으로서 정조의 농업 개혁 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조가 추진하는 농정 개혁과 농서 편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깊은 지역의 농업현실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농정의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응지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시무책(時務策), 경세서(經世書), 농서(農書) 등을 상소(上疏) 또는 책자(冊子)의 형태로 정조에게 진정(進呈)하였다. 즉 응지농서(應旨農書)는 2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장소(章疏)의 형식을 갖춘 상소문(上疏文)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책(簿冊)의 형태로 책자(冊子)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었다. 응지농서에 담겨 있는 농정(農政), 농법(農法)에 대한 여러 응지인(應旨人)들의 개선론, 개혁론은 당대의 사회 개혁론, 농업개혁론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

최근에 응지인들 가운데 학계에서 실학자로 손꼽히는 몇 명의 인물의 행적에 대한 심도 있는 천착이 필요한 사실(史實)을 발견한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니라 박지원(朴趾源), 정약용(丁若鏞), 서유구(徐有榘) 등 몇 사람이 1797년에서 1798년 사이에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였고, 이들이 정조의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응지농서를 올렸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들이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게 된 배경에 정조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소상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지원의 경우 1797년 7월에 충청도 면천군수로 임명되었다가 1800년 6월

37) 南極曄, 『愛景堂遺稿』 권3, 雜著 大學衍義參校.

정조가 승하한 직후 8월에 이르러서야 양양부사로 임명되면서 먼전을 떠났다. 먼전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박지원은 정조가 내린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응지농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과농소초(課農小抄)』이다. 그리고 정약용은 1797년 윤6월 황해도 곡산부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곡산부사로 재임하던 때에 「응지논농정소(應旨論農政疏)」라는 제목의 응지농서를 올렸다. 또한 서유구는 1797년 7월에 전라도 순창군수로 부임하였는데 앞선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렸고, 그것이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3인이 각각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군현의 수령으로 내려가게 된 시기가 1797년 윤6월, 7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동일하게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점은 무엇인가 정조와 이들 사이에 암묵적인 또는 보다 분명한 교분(交分)이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응지인이 올린 상소와 책자는 내용의 측면에서 두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농서(農書)라는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양자는 정조의 「농서윤음」에 응하여(應旨) 올린 것이라는 작성 동기의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정조의 「농서윤음」에 응하여 올렸다는 ‘응지(應旨)’의 특징과 농업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서술을 담고 있다는 ‘농서(農書)’라는 성격에 의거하여 응지인이 올린 상소와 책자를 함께 부를 때 ‘응지농서(應旨農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의 후손들은 응지농서를 포함한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작업을 선조에 대한 추송 뿐만 아니라 가문에 대한 현창의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진행하였다. 후손에 의해서 편찬된 문집에 포함된 응지농서는 활자 인쇄를 통해 세상에 존재를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농학적인 차원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농법의

정리 결과물인 농서가 인쇄, 간행되어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농서 편찬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응지농서를 살피는 연구에 이렇게 문집에 수록된 응지농서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응지농서는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농정(農政)에 대한 주장도 담고 있었다. 응지인은 평소 노농(老農)에게 전수 받은 농업기술이나 노농의 행적에 대한 견문에 의거한 식전에 근거하여 응지농서를 저술하였다. 또한 지역의 농업 실정에 근거한 농업경영, 농지개간, 수리시설 등에 대한 나름의 방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응지인은 정조의 요구대로 조선의 농정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조선의 당대 농업기술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농서를 올린 것이었다.

3. 응지농서의 특색

18세기 후반 정조에게 올려진 응지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의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요소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농정(農政)의 폐단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응지농서의 내용은 당시 각 지역의 농법(農法) 현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응지농서를 올린 사람들은 중앙과 지방의 관료직에 있거나 지방 유생으로서 정조의 농정책(農政策)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조가 추진하는 이른바 ‘농서대전(農書大全)’ 편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깊은 지역의 농업현실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농정의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올린 응지농서는 18세기 후반 각 지역의 농업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북 지

역에서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을 살펴보면 전북 지역 응지농서의 특색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지방 수령과 관련된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던 함열 현감 이인채(李寅采)가 올린 응지농서와 순장(巡將) 정도성이 올린 응지농서를 살펴본다. 이인채는 1799년 3월에 응지농서를 올렸는데,³⁸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 정조의 언급에 따르면 1798년 11월 30일 정조의 윤음이 내려진 다음 수령 가운데 응지(應旨)하여 농서(農書)나 농소(農疏)를 올린 사람이 없었다. 이에 1799년 1월 7일 정조가 윤음(綸音)과 하교(下敎)를 내려 독려하였던 것이다. 이인채는 정조의 독려에 힘입어 응지농서를 편찬하여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채는 우선 정조의 윤음에 대하여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백성을 중히 여기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정조의 윤음에 대하여 “농무(農務)를 근실하게 수행하고 농서(農書)를 널리 구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굳게 만들고, 백성의 하늘 즉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뜻”³⁹이라고 풀이하였다. 함열 현감 이인채의 상소는 전반적인 내용 구성에서 환향(還餉, 환곡), 군포(軍布)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 군현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른바 민은소(民隱疏)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조의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올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지농서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인채는 본래 숙속(菽粟)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상토의(相土宜)나 홍수공(興水功)이 권농(勸農)의 중요한 임무이고, 백성의 힘을 덜어주고 백성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 권농의 커다란 근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

38)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30일 戊子 (95-797나) 咸悅 縣監 李寅采 上疏.

39)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30일 戊子 (95-797나) 咸悅 縣監 李寅采 上疏: 臣又伏見 綸音下者, 勤咨農務, 博求農書, 固邦本重民天之意.

고 바로 후자 즉 백성의 힘을 덜어주고 백성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 방도에 대한 것으로 상소의 내용을 채운다고 설명하고 있었다.⁴⁰ 따라서 이인채는 정조가 요구하는 농정(農政)을 권면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상소를 올린 것이었다. 물론 이인채도 정조가 「농서윤음」을 반포한 주된 이유가 농서를 구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리적인 설명을 자신의 상소(上疏) 앞머리에 붙여서 합리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결국 이인채의 상소도 정조(正祖)의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올려진 응지농서의 하나로 파악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⁴¹

다음으로 순장 정도성(鄭道星)의 응지농서를 살펴보면, 그가 정조의 의지에 깊이 감응하여 농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심지어 정조의 「농서윤음」을 100회나 읽었다고 토로하면서 민정(民政)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덕(聖德)과 지의(至意)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전답에서 농사짓는 일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자라면서 농무(農務)의 궁경(肯綮) 즉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정도성의 언급은 자신의 상소를 응지농서로 간주하고 자신이 정조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조는 비변사에서 정도성을 불러 전후 사정을 살펴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비변사의 초기에서 정도성의 내력을 대체로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도성은 양반의 후예이지만 여러 대에 걸쳐 쇠미해져서 지금은

40)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30일 戊子 (95-797나) 咸悅 縣監 李寅采 上疏.

41)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30일 戊子 (95-797나) 咸悅 縣監 李寅采 上疏; 臣本疎迂無比, 菽粟不辨, 利農之方, 全所未味, 故不敢不知爲知, 未信而言。然而第伏念, 相土宜興土功者, 勸農之急務也, 紓民力和民心者, 勸農之大本也。民力未紓, 民心未和, 則雖有周官辨壤之法, 夏后治洫之制, 民不肯盡力, 而農以之不登矣。

42)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9일 戊午 (95-603가) 巡將 鄭道星 上疏. 『日省錄』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영인본 27권 274쪽-275쪽) 巡將 鄭道星 疏陳 農務 諸條 賜批.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계속해서 진자(賑資)에 쓸 곡물을 염출하여 관품을 계속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는 문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상소할 때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⁴³ 이러한 사정을 살펴본다면 정도성은 순장이라는 관직을 받았지만, 이는 과거가 아니라 진자곡을 염출한 것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응지농서를 올린 것도 정조의 지향에 크게 호응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도성은 뚜렷하게 대토지를 소유한 전주(田主)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벼 품종, 우금(牛禁, 소 도살 금지), 환곡(還穀), 개간 권장 등으로 응지농서의 내용을 채우고 있었다. 『일성록』에 수록되어 있는 정도성의 상소문 발췌에서는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의 정조의 비답 속에서 정도성과 연관된 지역을 전라도 지역으로 지목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이고 있다.

너의 상소는 불과 10여 줄이지만 삼도(三稻)의 파종하는 법, 우금(牛禁)을 펼친 것은 모두 실질에 힘쓰고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유사당상은 완백(完伯, 전라도 관찰사)을 거쳤으니 너를 불러서 의견을 상세히 묻는다. 너의 말로써 남읍(南邑)의 시험할 만한 곳에 시험하여 이후에 효과를 거두면 반드시 초기(草記)하도록 하라.⁴⁴

정조의 비답 내용은 정도성이 상소한 내용에 대하여 시험할 것을 지시하는

43) 『日省錄』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영인본 27권 275쪽); 命 巡將 鄭道星 左相 招見 草記.

44) 『承政院日記』 1802책,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 (95-603가); 巡將 鄭道星 上疏. 『日省錄』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영인본 27권 274쪽-275쪽) 巡將 鄭道星 疏陳 農務 諸條 賜批.

것이였다. 그런데 남쪽 읍에서 시험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도성도 아마 남쪽 읍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완백 즉 전라도관찰사를 거친 유사당상으로 하여금 의견을 내게 하고 계속에서 남쪽에서 시험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정도성이 분명 전라도 지역의 인물로 보인다.

정도성의 응지농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벼 품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벼농사가 수재와 한재의 재해를 입어 흉년이 드는 것은 그 중요한 도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벼 품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홍수나 가뭄에 아물러 해가 없다고 설명하고 이어서 강한 벼 품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대개 벼 품종의 강한 것은 3가지가 있다. 민간에서 부르는 천상도(天上稻), 두어라산도(斗於羅山稻), 순창도(淳昌稻)가 바로 그것이다. 세가지 벼 품종의 종자는 그 성질이 가장 강해서 그런 고로 무논이면 이앙하고 마른논이면 직파하는데 2월에 기경하고 3월에 파종한다. 그러면 늦은 모를 이앙할 때 이 세가지 품종은 모가 벌써 반이나 이미 성장해 있고, 결실도 또한 이르다. 비록 홍수와 가뭄을 만나도 조금도 손상되는 바가 없다.⁴⁵

정도성이 지목한 강한 벼품종은 결국 조도(早稻)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삼남 지역에 논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 세 품종을 심게 한다면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고 가을 수확에서 커다란 이득이 있을 것으로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무장 유학 강순(康洵)이 편찬하여 진정한 응지농서를 찾아볼 수

45) 『承政院日記』1802책,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 (95-603가); 巡將 鄭道星 上疏, 『日省錄』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 (영인본 27권 274쪽-275쪽) 巡將 鄭道星 疏陳 農務 諸條 賜批.

있다. 강순의 농서는 문집에 수록된 것과⁴⁶ 『일성록』에 초록되고 비변사의 회계(回啓) 내용을⁴⁷ 통해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문집에 실린 강순의 응지농서는 상당히 정연한 체제를 갖춘 것이었다. 이는 『일성록』에 보이는 대략의 목차에 해당하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개 농가집성(農家集成)의 분류를 따라서 11조목을 나열하여 기록하였는데, 총론에 해당하는 것도 붙여 놓았다. 농사짓는 법으로 첫번째는 곡종(穀種), 두번째는 농량(農糧), 세번째는 농기(農器) 및 농우(農牛), 네번째는 승옥(乘屋, 작업장), 다섯번째는 분전(糞田, 거름주기), 여섯번째는 심경(深耕, 깊이 갈이), 일곱번째는 관주(灌注, 관개), 여덟번째는 토의(土宜, 토양의 성질), 아홉번째는 대시(待時, 적시 맞추기), 열번째는 사의(蓑衣, 비옷), 열한번째는 백곡파획(百穀播穫, 파종과 수확)이다.⁴⁸

강순의 농서를 살펴본 정조는 반드시 새로 만드는 신편 농서(‘농서대전’)에 강순이 지적한 바를 수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비변사의 의견도 정조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비변사는 강순의 농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회계(回啓)하면서, “이 여러 조목들이 가볍게 말한 것은 농사꾼들이 아는 바이고, 깊게 말한 것은 일 잘하는 농부들이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⁴⁹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변사는 강순이 빈부(貧富)가 가지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실함’을 강조했다는 점과 근실함을 강조하는 책무가 바로 수령에 있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서 강순은 수령과 감사의 근실함이 절실하

46) 康洵의 <進御農書>《慵睡齋遺稿》(成均館大, D3B-761).

47) 『日省錄』 정조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茂長 幼學 康洵 所陳 農書.

48) 『日省錄』 정조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茂長 幼學 康洵 所陳 農書.

49) 『日省錄』 정조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茂長 幼學 康洵 所陳 農書.

게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순의 농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백성들이 농사짓는 데에 근심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백성이 모두 농사에 근심하면 우양(雨暘, 비오고 해나고)에 때에 맞추는 것은 바로 감응하고 부르는 이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⁵⁰ 라고 언급하였다. 『일성록』에 보이는 강순의 주장은 사실 고전적인 권농 정책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강순의 문집인 『용수재유고(慵睡齋遺稿)』 상편(上篇)에 실려 있는 「진어농서-부의소(進御農書-附擬疏)」에 보이는 응지농서의 내용은 농법(農法)의 정리에 크게 내용을 할애한 것이었다. 특히 강순의 농서 12조목이 집안에서 가전(家傳)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한 점이 주목된다.⁵¹ 정조의 명에 따르기 위하여 다시 정리했을 가능성도 많지만 그러한 정리작업이라는 것도 본래 집안에서 전해지던 농서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농업기술을 강순 세거지의 농법, 강순 문중의 농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순의 응지농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전북 지역 응지농서가 순창 유학 신보권(申輔權)이 올린 농서이다. 신보권이 올린 책자 형태의 응지농서는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일성록』에 초록되어 전해지는 것만 보더라도 정연한 체제를 갖춘 농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비변사에서 정조의 명을 받아 신보권의 농서책자를 살펴보고 회계한 내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다.

신보권의 농서 책자를 보니 일왈(一曰) 통설(統說), 이왈(二曰) 삼농토의(三農土宜), 삼왈(三曰) 천시(天時), 사왈(四曰) 수공(水功) 부이수차(附以水車), 오왈(五

50) 『日省錄』 정조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茂長 幼學 康洵 所陳 農書.

51) 康洵, 『慵睡齋遺稿』 上篇, 進御農書-附擬疏.

曰) 농기(農器) 부이사목(附以飼牧), 육왈(六曰) 경치(耕治), 칠왈(七曰) 파예(播藝) 부이농포(附以圃農), 팔왈(八曰) 운자(耘耔) 부이치황(附以治蝗), 구왈(九曰) 수확(收穫), 십왈(十曰) 공효(功效)로 되어 있다.⁵²⁾

신보권이 올린 농서책자는 농서로서의 정연한 목차구성을 갖추고 있었다. 작물의 경작법에 해당하는 경치(耕治), 파예(播藝), 농포(圃農), 운자(耘耔), 치황(治蝗), 수확(收穫) 등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농사의 원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통설(統說), 삼농토의(三農土宜), 천시(天時) 등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었다. 게다가 수공(水功), 수차(水車), 농기(農器), 사목(飼牧) 등 농기구와 수리 관련 내용, 가축 사육과 연관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비변사의 회계 내용에서도 신보권이 '안설(按說)'을 붙여 놓아 농리(農理) 설명에 심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신보권이 올린 책자는 이렇게 완성된 농서로서의 구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도 신보권이 올린 농서에서 채용할 만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내각에서 새롭게 편찬하는 '농정서(農政書)'에 편입하게 하라는 왕명을 내리고 있었다. 정조의 명령과 반대로 비변사는 신보권의 농서에 수록된 여러 조목이 일반적인 논의여서 지금 시행할 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순창군수 자리에서 응지농서를 올린 서유구의 사례를 살펴본다.⁵³⁾ 서유구는 1797년(정조 21년) 7월 4일 순창군수(淳昌郡守)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 때 서유구는 한창 규장각에서 서적 편찬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시절이었다. 7월 16일 정조는 아직 하직(下直)하지 않은 수령들을 당일(當日) 곧바로 사조(辭朝)하게 하라는 왕명을 내리면서 “순창군수 서유구는 책(冊) 만드는

52)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2쪽) 淳昌 幼學 申輔權 所陳 農書.

53) 徐有渠, 『淳昌郡守應旨疏』, 『楓石全集』 3冊, 『金華知非集』 卷1.

일을 아직 마치지 못하여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언급하였다. 정조도 서유구가 한창 편찬사업에 몰두하고 있어 전라도 순창까지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7월 18일에 이르러 정조가 서유구에게 “주서(朱書, 주자의 편지)를 살펴서 확정하는 것을 마친 다음 곧바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명하자, 서유구가 “마땅히 가까운 시일 안에 사조(辭朝)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서유구는 지금 당장 끝내야 할 일만 마무리하고 순창군으로 내려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즉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작업만 마무리하면 순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다.

서유구가 갑자기 전라도 순창군수로 임명된 배경이 무엇인지 현재로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전라도 순창군수라는 외직(外職)으로 나아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자료에서도 언급하는 바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각일력』 7월 6일 기사를 보면 서유구가 정조에게 검교 대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검교 각신이 3인을 넘게 되면 임금에게 아뢰어 처리해야 한다는 왕명이 있었는데, 윤6월에 이존수(李存秀)가 새로 검교 대교에 임명되면서 3인을 넘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초에 서유구가 순창군수에 임명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유구를 내직(內職)이 아닌 외직(外職)으로 임명한 분명한 이유는 아직도 미상이다. 서유구는 자신이 새로운 관직인 순창군수로 부임하게 되면 자연히 3인을 넘은 검교 각신을 덜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7월 22일 서유구는 순창군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순창군수로 부임한 서유구가 어떠한 목민관으로 일했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서유구가 순창군수로 지내면서 민폐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798년(정조 22년) 3월 정조가 상경해 있던 서유구를 소견(召見)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서유구는 호남 지역의 백성들이 겪는 폐단을 설명하면서, 순창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서유

구의 지적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거두는 폐단이 심한 곳은 바로 종이가 생산되는 4읍인데, 나주와 남평은 본래 민고(民庫)가 있어 여기에서 부담에 응하고 있고, 남원은 앞서 환미(還米) 즉 환곡미를 획득받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지탱할 수 있다. 그런데 순창은 종이로 원래 납부해야 할 것이 많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오로지 백성들 토지에서 염출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있으니 남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곡물을 갖고 있는 관청에서 3,000석을 빌려주어, 이를 환곡으로 운영하고 그 모곡(耗穀)을 일부는 본래 곡물을 빌려준 관청에 보내주고, 나머지를 종이 납부에 쓰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남원의 사례에 따라 시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서유구는 순창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고충사항을 해결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조와 대면하는 자리에서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었다.

서유구는 순창군수의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원임 대교로서 규장각의 편찬 사업에 계속 관여하였다. 『어정주서절약(御定朱書節約)』과 『대학유의(大學類義)』를 편찬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어정주서절약(御定朱書節約)』은 교정을 맡아 수행하였고, 『대학유의(大學類義)』는 왕명을 받아 광주와 더불어 순창에서 교정(校正)에 참여할 유생을 모아 교정하고 교정본을 다시 올려보내는 일을 담당하였다. 당시 중부 서형수가 광주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같이 『대학유의』의 교정 작업 진행과정에 참여한 것이었다.

1798년(정조 22) 11월 30일에 정조는 「농서윤음」을 내려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에게 농업기술을 정리한 농서(農書) 또는 농정(農政)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농소(農疏)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정조의 윤음에 호응하여 중외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서책자 또는 상소문을 올렸다. 순창군수 서유구는 정조의 명령에 호응하여 응지농서(應旨農書)를 올렸다. 서유구가 올린 글은 「순

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라는 제목으로 『풍석전집』에 실려 있다.⁵⁴

서유구는 27살 때인 1790년(정조 14) 증광(增廣)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쳐, 1797년 전라도 순창군(淳昌郡) 군수로 부임하였다. 1898년 정조(正祖)의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호응하여 응지농서(應旨農書)를 올렸다. 서유구가 응지농서를 올린 것은 18세기말 정조의 '농서대전(農書大全)' 편찬 추진과 직결된 것이었다.

1798년 정조의 윤음에 호응하여 서유구가 올린 응지농서인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에서 두 사람의 공통적인 현실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서유구는 한전(旱田)에서 수전(水田)으로 바뀐 번답(反畓)에도 급재(給災)할 것을 요청하면서 현실의 수전(水田) 중심의 농업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언을 만들기에 적당한 지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언(堤堰) 수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도(諸道)에서 각각 농서(農書)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때 문식(文識)이 뛰어난 선비로 하여금 그 지역의 농법(農法)을 정리하는 책임을 맡기는 것이었다.⁵⁵ 이와 같이 서유구는 정조의 농서편찬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지농서를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농서 편찬이 요구되는 사정을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북 지역 응지농서 가운데 남원 지역 유학의 응지농서 여러 편을 1799년 1월 8일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기사에 보이는 비변사의 검토 회계의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몇 사람의 응지농서가 책자 형태였기 때문에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에 모두 전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남원 유학 허질(許耄),

54) 徐有渠, 『楓石全集』 「金華知非集卷第一」 上疏, 淳昌郡守應旨疏.

55) 徐有渠, 「淳昌郡守應旨疏」, 『楓石全集』 3冊, 『金華知非集』 卷1.

남원 유학 장윤, 남원 유학 허호(許顥)가 올린 농서책자에 대한 검토가 자세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내용이 새롭게 편찬되는 ‘농서’에 수록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계속해서 전북 지역 응지농서의 대부분은 1799년 5월 22일 『일성록』 기사에 서 확인된다. 1799년 5월 22일 비변사는 응지인의 응지농서 23건을 한 묶에 회계하였고, 이것을 정조가 일일이 살펴보고 비답을 내렸다.⁵⁶ 정조가 검토한 응지농서의 양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추진하던 ‘농서대전’ 편찬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정조의 언급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정조가 검토한 농서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전북 지역 응지인의 응지농서였다. 순창 유학 신보권이 올린 농서를⁵⁷ 비롯하여 앞서 <표 1>에서 정리한 전주 유학 이여효(李汝孝), 전주 유학 이장렬(李章烈), 고부 유학 박도흙(朴道欽), 무장 유학 강순(康洵), 남원 유학 노익원(盧翼遠) 등이 올린 농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전주 유학 김상직(金尙直), 전주 유학 송상휘(宋相彙), 진안 유학 박종혁(朴宗赫), 무장 유학 강석운(康錫運), 남원 전 현감 장현경(張顯慶) 등의 농서도 짧은 검토 내용이 『일성록』에 실려 있다.

남원 전 현감 장현경은 나이가 70을 채운 노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직함이 남원 전 현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응지농서를 올리는 시기에 향촌에 물러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응지농서 내용에 읍촌(邑村), 장시(場市)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농업 현황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조는 장현경의 응지농서에 대하여 향촌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나이 70을 채웠는데 이렇게 응지한 것에 대해 크게 가상하게 여기고 있었다.⁵⁸

56)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0-914쪽).

57)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2쪽) 淳昌 幼學 申輔權 所陳 農書.

58)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南原 前 縣監 張顯慶 所陳 農書冊子.

이상에서 살펴본 전북 지역 응지인과 응지농서의 특색을 정리하면 먼저 대부분의 응지인이 농사전문가인 노농(老農)의 도움을 받아 응지농서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강순의 경우 삼남 지역 농법의 특색, 고금(古今) 농사의 차이까지 언급할 정도였고, 장윤은 남원 지역의 농력(農曆)을 상세하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장윤, 허호, 허질 등 남원 유학 세 사람에 대하여 정조가 권농관에 적합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농사일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즉 전북 지역 응지인 상당수가 노농에 상당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올린 응지농서도 전북 지역의 농법(農法), 농정(農政)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 지역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가 이른바 전북 지역의 ‘지역농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지역 응지인 중 일부는 정조와 특별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어 정조의 지우(知友)로 불릴 만한 인물 또는 정조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창군수로서 응지농서를 올린 서유구(徐有渠)는 규장각을 통해 정조가 굳건한 믿음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정조와 특별한 학문적인 측면의 교분(交分)을 쌓았던 인물들은 정조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든 선집류의 교정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이들이 올린 응지농서는 마땅히 지역의 농법의 특색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전북 지역에 인접한 전라도 담양에 거주하던 남극엽(南極曄)이 올린 응지농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남극엽의 『농서부책(農書簿冊)』은 18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 지역의 농법의 특징을 담고 있는 지역농서였다. 그가 정리한 당시 담양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던 농법은 구체적인 농작업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 방식과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곡종(穀種)과 토성(土

59) 염정섭, 「18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 儒生 南極曄의 農法 정리와 農政 개혁책」 『歷史學研究』 69집, 호남사학회, 2018.

性)이 서로 적합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토양 관리, 토질 개선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기경(起耕)의 원리와 주의해야 할 점 등도 밝혀놓았다. 그리고 시비기술에 관하여 숙분법(熟糞法)으로서의 자분법(煮糞法)을 강조하였다. 또한 좋은 종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종자를 온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강순의 경우도 삼남(三南) 특히 호남(湖南)을 지목하면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게 짓는 이유에 대하여 보리를 논에 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도맥이모작(稻麥二毛作)이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순의 농서는 무장이라는 지역의 색채가 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지역 응지농서 응지인은 중앙과 지방의 관료직에 있거나 지방 유생으로서 정조의 왕명에 적극 호응하여 정조가 추진하는 농서 편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깊은 지역의 농업현실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농정의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정조가 추진한 ‘농서대전(農書大全)’ 편찬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농정의 개혁을 추구한 개혁 후원 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 전북 지역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전북지역 농업의 실상을 천착하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농업 기술의 지역적 성격

1. 벼농사 기술의 전개
2. 밭작물과 상품작물의 재배



1. 벼농사 기술의 전개

15세기 『농사직설』에 그 기술체계가 잘 정리된 벼농사 이앙법은 16세기를 거치면서 경상도 그 전역과 전라도·충청도의 일부 선진 지역까지 보급되기에 이르렀다.⁶⁰ 16세기 초반 경상도의 상당 지역과 영동 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앙법을 채택하고 있었다.⁶¹ 1512년(중종 7) 강원도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은 영동과 영서의 농사 형편을 설명하면서 영동 지역에서는 오로지 묘종(苗種) 즉 이앙(移秧)에만 힘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⁶² 영서지방은 비록 홍수와 가뭄이 들더라도 수전과 한전이 반반씩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농사를 전부 망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지만, 영동 지방은 비록 수전이 많아도 수경작파에 힘쓰지 않고 묘종만 일삼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바람의 재앙이 들게 되면 이앙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어 수확이 부실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16세기 초에 이르면 이앙법이 경상도·강원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16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게 되면 이앙법은 경상도 지역 여러 곳으로 보급되어 나갔다. 예천(醴泉), 대구(大邱)의 경우 16세기 후반에는 이미 이앙법을 채택하여 수전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었다. 예천은 낙동강 서쪽의 내륙지역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높은 산이 많고, 남쪽으로 향하면서 높이가 점차 낮아져서 구릉지로 변하는 지형이었다. 현재 예천군은 논농사 위주의 농업지역으로 논이 총경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은 경상도 내륙 중

60) 조선 후기 벼농사, 밭농사 기술에 대한 설명은 아래 연구를 참조하였다.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Ⅱ—農業變動·農學思潮 (一潮閣, 1971); 민성기, 『朝鮮農業史研究』[一潮閣, 1990]; 엄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61) 『成宗實錄』 권6, 成宗 원년 6월 壬戌 (8-510).

62) 『中宗實錄』 권15, 中宗 7년 5월 丁巳 (14-575).

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곳이다. 예천과 대구 지역의 이앙법의 보급 상황을 예천을 세거지로 삼은 권문해(權文海)가 남긴 『초간일기(草澗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³

16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수전 경종법의 하나인 이앙법의 보급이 삼남으로 특히 전라도·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전라도 옥과현에 거주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에 순절한 유팽로(柳彭老)는 자신이 지은 농서(農書)인 『농가설(農家說)』에서 5월 망종(芒種)을 이앙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었다.⁶⁴ 유팽로가 망종을 이앙의 한계시기로 설정한 것은 당시 그곳의 농사관행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농가설』에서 특히 수경직파에 대한 언급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16세기 후반부에 전라도 옥과 지역에 이앙법이 보급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이와 같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16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삼남(三南)의 여러 지역으로 이앙법이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충청도 지역의 경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충청도 임천(林川)에서 피난생활을 한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에서 이앙법의 원리가 수도(水稻)재배에 동원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앙법에 의한 수도재배를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희문이 채택한 경종법은 직파법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벼의 모(苗)가 성기게 자라는 곳에 보묘(補苗, 部分移植)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보묘(補苗)를 하는 시기가 음력 5월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앙을 하기 위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양기(秧基)에서 자라고 있던 화묘(禾苗)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도 지역에서도 적어도 16세기 말경 이앙법의 원리를 활용한 벼 경작법이 실행되고 있었다.

(63) 丁淳佑 權敬烈, 1997「解題: 草澗日記의 資料의 性格과 意味」『草澗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4) 柳彭老, 『月坡集』卷2, 農家說(향토문화연구자료 4집, 전라남도, 129면). 四月…移秧以芒種爲限 則不早不晚而可合天時矣 村中有憂故者 一村齊力救農 則是亦厚豐也

(65) 柳彭老, 『月坡集』卷2, 農家說.

16세기 중반 이후 이양법이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편차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보급된 사정은 농서에 기록된 경종법의 증보, 양기(秧基) 작성의 변화, 건양법(乾秧法)의 개발·보급 등으로 알 수 있다.⁶⁶ 이러한 이양법의 보급 원인으로 소규모 보 시설의 증가와 같은 수리시설의 점진적인 호전, 농업에 관한 지식이 향상되면서 이양법이 제초노동력의 절감, 토지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잇점을 농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⁶⁷ 직파에서 4·5차례의 제초작업이 필요하던 것이 이양을 할 경우에는 2·3차로 그칠 수 있었고 절감된 노동력을 다른 방면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점과⁶⁸ 이양법에서의 수확량이 직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 이양을 하면 모맥이모작(稻麥二毛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 이양법의 이점을 곧바로 이양법의 보급 원인으로 이해하였다.⁶⁹

이양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유용성 뿐만 아니라 이양법이 갖고 있는 해결해야할 난점, 즉 이양기의 물문제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달이 바로 이양법 보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양법이라는 경종법의 기술적인 체계과 세부적인 기술 요소의 발달, 즉 이양법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발달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급이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66) 金容燮,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이양법의 보급에 대하여」(『증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 일조각, 1990), 20-22쪽.

67) 조선후기에 水利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사정은 아직 移秧에서 부딪히는 물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시설의 개선이라는 점을 이양법 보급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설정하기 힘든 상황이다(金容燮,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이양과 수리문제」(『증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II), 일조각, 1990), 110쪽).

68) 李瀾의 지적에 따르면 이양법을 채택할 경우 功力을 播種(直播)에 비해서 5분의 4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星湖僿說』 3, 人事門 本政書 上 251쪽)

69) 金容燮,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이양법의 보급에 대하여」(『증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II), 일조각, 1990). 金容燮,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도·맥이모작의 보급에 대하여」(『증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II), 일조각, 1990)

실로 이양법의 보급은 이양법의 기술수준의 진전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것은 이양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술 요소로서 양기관리와 양기시비에서 나타난 발전과 이양시기를 절적하게 맞추기 위한 파종시기의 선택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양법 실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적인 기술개발이었다. 또한 이양법의 채택으로 야기되는 노동력의 집중적인 투입, 즉 이양기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노동조직으로서 두레의 형성이라는 농업여건의 변화가 특히 삼남지방 전역에 이양법이 보급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⁷⁰ 이와같이 이양법의 보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의 농업기술의 특징과 특색을 지역성의 검출과 복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리한다. 벼농사 기술의 조선 팔도에서의 양상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 벼농사의 특색을 품종, 재배법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6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벼 경종법의 하나인 이양법(移秧法)의 보급이 삼남(三南)으로 특히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무렵이 되면 문집에 실려 있는 문인(文人)의 글 속에서도 이양(移秧)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었다. 전라도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인물인 양대박(梁大撲, 1544~1592)의 시(詩) 희우(喜雨) 구절 가운데, “교외의 들판의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양을 하느라 시끄럽고, 마을 거리의 동쪽과 서쪽에서 보리를 줍느라 바쁘구나(郊原遠近移秧闌 村巷東西拾麥忙)”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⁷¹ 시구에 보이는 것처럼 양대박이 멀고 가까운 논에서 모내기를 하느라 시끄럽고, 마을의 이곳저곳에서는 보리를 타작하기에 바쁘다고 묘사한 구절 속에서 당시 이양법을 실행하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양대박이 임진왜란이 일어 났을 때 창의(倡義)하

70) 주장현에 따르면 두레의 보급은 이양법의 중심적인 채택지역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두레 전파의 계선은 바로 이양법의 한계지역과 일치한다고 한다.

71) 梁大撲, 『靑溪集』 卷1, 喜雨

였다가 완산(完山)에서 순절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이앙작업을 관찰한 시기는 그보다 앞선 때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가 보고 시로 옮긴 정도도 그 자신이 생활하고 있던 남원 근교의 상황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앙작업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 지고 있었고, 이앙법의 실행이 남원의 들판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삼도 지역에서 벼농사의 중요한 경작법으로 이미 17세기 중반 이래 자리를 잡은 이앙법에 대하여 응지농서를 올린 전북지역의 응지인들은 대체로 지역적인 농업여건에 맞춰 이앙법 또는 직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단 서유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남쪽 지역 즉 호남지역은 벼농사가 우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개 남쪽 지방의 풍속에 무논에서 김매기하는 것<벼농사>이 우세하고 밭에서 화경(火耕)하는 일은 열세하다. 즉 벼를 파종하는 것은 성대하고 보리나 콩의 파종은 드물다.⁷²

서유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순장 정도성은 남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벼 품종으로 3가지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남쪽에서 파종하는 벼 품종은 성질이 강한 것이어서 무논에서는 이앙으로 재배하고, 건답(乾畓)에서는 직파로 경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가 지목한 품종 이름은 민간에서 천상도(天上稻), 두어라산도(斗於羅山稻), 순창도(淳昌稻)라 부르는 것이었다. 3가지 품종 가운데 순창도는 바로 전라북도 순창에서 많이 재배하는 또는 순창에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세가지 벼 품

72) 徐有渠, 「淳昌郡守應旨疏」, 『楓石全集』 3冊, 『金華知非集』 卷1. 大抵 南俗 水耨之功勝 而火耕之務遜 秔稻之種盛 而麥菽之播罕)

종의 종자는 그 성질이 가장 강해서 그런 고로 무논이면 이양하고 마른논이면 직파하는데 2월에 기경하고 3월에 파종할 수 있었다. 그러면 늦은 모를 이양할 때 이 세가지 품종은 모가 벌써 반이나 이미 성장해 있고, 결실도 또한 이르다. 비록 홍수와 가뭄을 만나도 조금도 손상되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⁷³ 정도성의 설명은 당시 전북 지역에서 재배하는 우세 벼품종을 지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벼 품종이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 3가지 품종이 우세한 또는 우량한 품종으로 당시 전북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벼농사에서 이양법을 실행할 경우 지역적인 농업기술, 농법의 특색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제초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전반 전라남도 능주 지역의 벼농사 경작방식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바로 제초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19세기 전반 전라남도 능주 지역의 농업기술을 보여주는 지역농서로 한석효(韓錫敷)(1777~?(1849 이후))가 지은 『죽교편람(竹僑便覽)』 「치농편(治農篇)」이 있는데, 한석효가 여기에서 벼농사짓는 법의 하나로 중요하게 설명하는 기술이 바로 제초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제초 횟수를 3회로 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벼농사 기술에서 경종법으로 이양법을 채택할 경우 직파법의 경우보다 제초 횟수가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초횟수가 5회내지 6회에서 2회내지 3회로 감소한다는 점 등이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⁷⁴ 그런데 「죽교편람」은 묘종한 후에 3회에 걸친 제초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⁷⁵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3) 『承政院日記』 1802책,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 (95-603가); 巡將 鄭道星 上疏, 『日省錄』 정조 22년 12월 29일 戊午 (영인본 27권 274쪽-275쪽) 巡將 鄭道星 疏陳 農務 諸條 賜批.

74) 金容燮, 「朝鮮後期の 水稻作技術-移秧法の 普及에 대하여」 『亞細亞研究』 13, 1964; 『朝鮮後期 農業史研究 II - 農業變動·農學思潮』, 一潮閣, 1971, 재수록.

75) 『竹僑便覽』 人冊, 「治農」 苗種.

〈표 2〉 19세기 전반 전라도 능주지역 벼농사 제초방식

제초 횟수	시기	제초 방식	주의사항
첫번째 제초	(이앙 이후) 25·6~30일	물을 뺀 다음 손제초 또는 호미로 제초	생토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두번째 제초	(첫번째 제초 이후) 14·15일	물을 뺀 다음 호미로 제초	잡초를 전토 표면에 묻기
세번째 제초	(두번째 제초 이후) 30일	•	•

* 출처 : 『죽교편람(竹僑便覽)』 인책(人冊), 치농(治農) 윤초(耘草)

「죽교편람」은 3회의 제초 중에서도 특히 첫번째 제초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 공력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제초의 효과가 가늠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3회의 제초를 마치게 되면 수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18세기 후반 응지농서를 올린 남원 유학 장윤은 이앙했을 경우 제초하는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만드시 먼저 번경(翻耕)하고 다음에 물을 가두워야 하고, 또한 때에 맞춰 이앙(移秧, 모내기)하고 김매기해야 한다. 이앙을 한 지 20일 후에는 첫 제초작업을 수행하고, 첫 제초한 다음 13일 후에는 두번째 제초하고, 두번째 제초한 다음 15일 후에는 세번째 제초하면, 곧이어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때를 어기면 조장(助長)하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⁷⁶

장윤의 응지농서에 따르면 남원 지역에서는 3번에 걸쳐 제초를 하는 것을

76) 『承政院日記』 1803책,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95-619가) 備邊司 南原 幼學 張윤(火+允) 農書冊子.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1쪽-292쪽) 備局 以南原幼學 張윤(火+允) 疏陳農務諸條 回啓.

관행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3회 제초는 당연히 앞서 경종시기를 거론하였던 조도(早稻)에 대한 것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앙 이후 20일, 13일, 15일 간격으로 3회의 제초 작업이 이어지는 농력이었다. 그렇다면 이앙 이후 48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제초작업과 같은 형태의 농작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19세기 전반 전라남도 능주 지역의 경우에 비해서 이앙 이후의 제초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능주 지역에 비하여 남원 지역의 경우 조도(早稻)를 빠른 시기에 경작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앙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전주 유학 김상직(金尙直)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벼농사 경종법에 대한 주장이 매우 압축적이고 간략하면서 핵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장을 전라북도 지역의 벼농사 경종법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벼농사 경종법에 대한 의견을 당시 조선의 벼농사 짓는 법에 대한 일반론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상직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앙은 간간이 득실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만, 직파는 애초에 득실이 나타날 것이 없다. 관개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직파할 필요가 없이 이앙을 하면 되고, 물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곳에서는 직파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⁷⁷ 김상직의 주장은 결국 관개 즉 수리조건을 갖춘 곳에서는 이앙을 해도 무방하고, 수리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부종(付種) 즉 직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남원 유학 노익원(盧翼遠)은 이앙법과 직파법의 실시와 관련해서 매우 고식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이앙하는 것은 나중에 재해를 입어도 부세를 감면하지 말고, 직파하는 것은 재해가 생기면 특별히 부세의 절반을 덜어주라

77)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4쪽) 全州 幼學 金尙直 所陳 農書.

는 것이었다. 결국 이양을 수행하여 재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급재를 하지 않아 이양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김상직의 일반적인 이양법 조건 실행론조차 수용하지 않는 단호한 이양법 반대 의견이었다. 비변사조차 향곡 유생이 사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한 것으로 치부할 정도였다. 비변사의 검토 보고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언하는 내용이었다.⁷⁸

전북 지역 응지농서 가운데 『일성록』에 초록 정도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의 요책을 잘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응지농서가 바로 고부 유학 박도흙(朴道欽)이 올린 것이었다. 그런데 박도흙의 농서와 비변사의 검토 보고에서 이양과 직파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박도흙이 응지농서에서 “연변(沿邊, 하천 양안)에서 부종(付種, 직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비변사는 평원으로 육지에 가까운 토지는 견경(堅硬)하여 주양(注秧)에 적당하고 연해(沿海)의 포구 근처의 토지는 토성이 유연(柔軟)하여 부종에 적합하다고 한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러한 박도흙의 주장에 대해서 비변사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주양(注秧)을 허락하고 저기는 부종(付種)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었다.

비변사의 논의는 이양하는 것이 법전에서 허락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토양의 견경함과 유연함은 토지의 비척(肥瘠)에 관계된 것이고 포구와 떨어진 원근(遠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주양을 허락하고 저기에서는 부종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형세와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⁷⁹

이양법이 보급되어 나간 배경 가운데에는 수전의 위치, 토질 등 전토의 주변 조건이 이양법을 채택하는 데 적절한 지역에서 수전(水田)이 증대하고 있었다

78)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3쪽) 南原 幼學 盧翼遠 所陳 農書.

79)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6쪽) 古阜 幼學 朴道欽 所陳 農書.

는 점이 있었다. 16세기를 경과하면서 수전결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전이 많이 개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⁸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수전이 자리한 위치 조건은 경종법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는 요인이었다.

한전을 수전으로 바꾸는 번답(反畓) 또는 번전(反田)의 성행이 수전의 증대를 가져온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논으로 적당하지 않은, 오히려 밭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만 논으로 변화된 전토에서 벼가 많이 경작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번답이 성행된 상황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지(低地) 개간과 언전(堰田) 개발 등에 힘입어 수전의 절대적인 결수 증대가 발생하였다.⁸¹ 작답(作畓)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러한 경로의 수전 증대는 사실 전반적인 개간의 증대뿐만 아니라 도작(稻作)의 성행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유래된 것이기도 하였다.

번답(反畓)의 확산은 결국 이전에 비해서 수리조건이 열악한 수전이 대량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수전의 위치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토지의 위치조건에 따른 이양법의 확산이라는 경향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었다.⁸² 번답의 열풍에 대하여 19세기 초반 서유구(徐有渠)는 당시의 전체 수전 가운데 10분의 3이 한전에서 수전으로 바뀐 번답의 성행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⁸³ 그런데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는 그대로 이양법의 보급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었다. 바로 서유구의 지적이 호남 관찰사의 경험, 전라북도 순창군수로서의 체험에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번답의 열풍에서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0) 16세기 下三道 지역 개발과 水田 증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李載鸞, 「16세기의 量田과 陳田收稅」 『孫寶基博士停年紀念論叢』, 1988.

81) 李景植, 「17세기 土地開墾과 地主制의 전개」 『韓國史研究』 9, 한국사연구회, 1973.

82) 徐有渠, 『杏浦志』 田制 (『農書』 36, 7~57면).

83) 徐有渠, 『杏浦志』 (『農書』 36, 51면).

이상에서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응지농서에 담긴 벼농사 짓는 법과 관련된 주장과 의견을 분석한 결과 당시 벼농사 경작법의 주요한 논점을 모두 거론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이앙법의 보급, 확산과 관련된 논의에서 제기되는 관개 가능 여부, 토성과의 연관성, 재해 발생과 부세 감면 부여 여부 등 다양한 논점이 남김 없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 지역은 벼농사 중심의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앙법과 직파법에 관련된 특유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적합한 경종법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2. 발작물과 상품작물의 재배

16세기를 거쳐 17·18세기를 경과하면 한전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방식은 15세기 조선전기에는 1년1작이 지배적이던 단계에서 1년2작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16세기 후반을 거쳐 17세기에 이르면 근경(根耕)의 일반적인 채택, 간종(間種)의 확대 적용, 맥전(麥田)에서의 조세법과 한전에 급재를 하지 않는 국가정책의 원칙 등을 배경으로 1년2작식, 즉 한전이모작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

17세기 초반에 편찬된 고상안(高尙顔)의 『농가월령』을 살펴보면 모맥(粦麥, 보리)의 근경 경작의 경우, 춘모맥→대소두·서숙·녹두, 춘모맥→수임(水荳) 등 두 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맥을 경작한 이후 다른 작물을 근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맥을 후작 작물로서 경작하는 경우는 조서(早黍)·조숙(早粟)→추맥(秋麥), 숙숙(菽粟)→추모맥 두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농가월령』에 보이는 근경법은 춘모맥을 경작하고 대소두 등 다른 한전작물을 경작하는 경작방식과 조서·조숙, 대두 등 숙숙을 경작하고 추모맥을 근경으

로 재배하는 경작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간종법의 경우는 근경법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양상을 찾아낼 수 있다. 모맥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세 가지 방식의 모맥 모두를 간종 경작을 활용할 수 있었다. 춘모맥→대두(수임·당(糖)·마(麻)·수임(水荏)), 동모(凍麥)→속(적소두)·대두, 추모맥→속속 등으로 이어지는 경작방식이 그것이었다. 여기에 모맥 이외의 다른 작물도 간종 방식의 경작방식을 활발하게 진행시켰다. 목화→수임, 목화→속(粟) 등과 같이 목화전에 여러 가지 작물을 간종으로 경작하는 방식이 있었다. 목화전에는 간종 외에도 호마(胡麻)를 혼종(混種)으로 경작할 수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월령』에 보이는 근경법, 간종법 등은 앞선 15세기에 편찬된 『농사직설』에 비해 훨씬 상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그리고 근경과 간종에 붙어 있던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떨어져 나가 보다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16세기 후반 17세기 초 『농가월령』에 보이는 한전작물의 작부체계는 사실상 17세기 중반 이후에 확고하게 자리잡는 1년 2작이라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선후기의 한전 경작방식에서 1년2작 형태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토에 대한 조정의 급재 원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적인 조세체계에서도 한전의 이모작 관행을 당연시하여 한전에 급재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강력하게 수행하였다.⁸⁴ 숙종대에 한전 급재에 대한 논란을 예로 살펴보면 한전에 급재를 내리는 것은 수재가 아주 참혹하거나 재해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 남원지역의 농작업 시기를 응지농서를 올린 장윤(張允+允)의

84) 金容燮,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도·맥이모작의 보급에 대하여-」, 『중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 일조각, 1990, 53~54쪽.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윤의 응지농서는 상소 형식이 아니라 농서책자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현재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양자 모두에 축약된 부분만 전해지고 있다.⁸⁵ 비변사가 남원 유학 허질, 허호와 더불어 장윤의 농서 책자를 살펴보고 보고하면서 장윤의 농서 내용을 소개한 것과 정조가 비답에서 인용한 부분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만 전해지고 있는 장윤의 농서 내용 가운데 정조가 인용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남원 지역의 농력(農曆)을 복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양한 밭작물의 재배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우수(雨水)에 마전(麻田)을 갈아주고, 경칩(驚蟄)에 농기구를 갖추어 준비하며, 춘분(春分)에 조도(早稻)를 경종하고, 청명(淸明)에 조서(早黍)를 경종하며, 곡우(穀雨)에 호미를 만들고, 입하(立夏)에 수임(水荇, 들깨)을 경종하며, 망종(芒種)에 저마(苧麻)를 수확하고, 하지(夏至)에 가을보리를 수확하며, 입추(立秋)에 교맥(蕎麥, 메밀)을 경종하고, 처서(處暑)에 조도(早稻)를 수확한다.⁸⁶

장윤이 24절기에 맞춰 수행해야 할 농작업을 지적하고 있는 위 인용문은 달리 표현하면 18세기 후반 전라북도 남원지역의 농력(農曆)이라고 할 수 있다. 농력의 작성은 각 지역의 농사현실에 반영되어 있는 농작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논밭에서 벼농사와 잡곡농사를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았는데,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의 흐름에 제대로 순응하면서 각각의 농작

85) 『承政院日記』 1803책,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95-619가) 備邊司 南原 幼學 장윤(張火+允) 農書 冊子.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1쪽-292쪽) 備局 以南原幼學 張윤(火+允) 疏陳農務諸條 回啓.

86) 『承政院日記』 1803책,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95-619가) 備邊司 南原 幼學 장윤(張火+允) 農書 冊子.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1쪽-292쪽) 備局 以南原幼學 張윤(火+允) 疏陳農務諸條 回啓.

업을 수행하고 그리하여 소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기준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24절기였다.

정조가 인용한 장윤이 제시하는 남원 지역의 농력에서 입하 다음에 소만(小滿)이 생략되어 있고 하지 뒤의 소서 대서도 빠져 있는데 이때가 농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서까지만 기록하고 그 뒤의 절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조도(早稻) 만을 지적하고 다른 도종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다는 점이다. 아마도 장윤의 농서에서는 남원 지역의 농력을 24절기에 따라 빠짐 없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정조가 인용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전북 지역 한전 농법의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구전(區田)을 조성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는 구전법(區田法)이었다. 구전(區田)은 가로 세로 각각 1.5척(尺)인 구(區)를 1척(尺) 깊이로 파서 여기에 숙분(熟糞)을 넣어 경작하는 방식이다. 구전(區田)은 밭을 구획하는 경지 정리 방식, 그렇게 구획된 밭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법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달리 구전법(區田法)이라 부를 수 있다.

구전법은 중국 농서에서 가사협(賈思勰)이 지은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이 『농정전서(農政全書)』에 전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구전(區田)은 거름 기운(糞氣)을 요체로 삼고 반드시 비옥한 땅[良田]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리고 야산이나 주거지 근처, 높은 지역의 경사진 곳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구전은 작물이 자라는 바로 그 구역[區]만 시비를 하면서 지력을 활용하고, 작물이 자라지 않는 옆의 땅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애초에 경지의 전면(全面)에 대한 기경(起耕) 작업을 생략하는 방식이었다.⁸⁷

87) 徐光啓, 『農政全書』 卷5, 田制, 農桑訣田制篇, “賈思勰曰 區田以糞氣為美 非必須良田也 諸山陵

구전법은 박지원이 지은 『과농소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과농소초』 이외에 앞선 시기에 편찬된 농서인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⁸⁸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⁸⁹ 박제가(朴齊家)의 『진북학의소(進北學議疏)』⁹⁰에도 소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19세기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편찬한 서유구(徐有渠)는 구전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쉽게 물을 댈 수 있다는 점, 거름성분을 뿌리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전법을 소개하였다. 서유구는 1811년(辛未年)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구전으로 재배한 작물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경험담도 곁들이고 있었다.⁹¹

박지원은 구전법에 대해서 상세한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먼저 척박한 땅에 서만 실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비옥한 땅에서는 더욱 좋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전(旱田) 뿐만아니라 수전(水田)에서도 또한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⁹² 박지원이 붙인 주석은 세상에서 전해오는 구전법과 관련된 일화를 정리한 것이었다. 바로 전주 지역에 거주하던 상신(相臣)을 지낸 이상진(李尙眞)이 아직 급제하지 않았을 때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는데, 토교(土校) 전동홀(田東屹)의 도움을 받은 일화였다. 이에 따르면 전동홀은 건지산(乾支山) 아래 사람이 쓰다가 버린 밭 반일경(半日耕)을 사서, 가을에 나무 말뚝 수천 개를 1척 길이로 만들어 망치로 밭 가운데에 박아놓았다가, 다음해 봄에 말뚝을 빼고 거기에 조를 심어 50석을 수확하였다는 것이다. 박지원은 이렇게 망치 하나

近邑高危傾阪 及丘城上 皆可爲區田 區田不耕旁地 庶盡地力.”

88) 洪萬選, 『山林經濟』 卷之一, 治農, 耕播, “區種之法 凡山陵近邑 高危傾阪 皆可爲區田 糞種水澆 備旱灾也.”

89)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卷2 治農.

90) 朴齊家, 『進北學議疏』, 區田,

91) 徐有渠, 『林園經濟志』 「本利志」 卷1, 田制, 區田.

92) 朴趾源, 『課農小抄』, 田制, “區田之法 不獨瘠瘠之地宜行也 凡於膏沃之土尤善 不獨旱田爲宜 雖水田亦好.”

와 나무말뚝으로 많은 곡식을 수확한 것을 구전법의 별법(別法)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⁹³

이상진과 전동홀이 등장하는 구전법과 유사한 경작법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담집 가운데 하나인 『학산한언(鶴山閑言)』에도 들어 있다. 조선 숙종 때 신돈복(辛敦復)이 견문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야담집이 『학산한언』이다. 이 책은 『야승(野乘)』 제21책으로 실려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⁹⁴

『학산한언』에 따르면 전동홀은 전주(全州) 읍내의 중인(中人)이었다. 앞서 『과농소초』에 전동홀이 구입한 토지가 건지산(乾支山) 아래라고 하였던 것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건지산이 바로 전주부의 북쪽에 자리한 진산(鎭山)이었다.⁹⁵ 계속해서 나무 말뚝을 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쌀 5되로 술을 빚어 읍인(邑人)에게 먹이고 한 사람당 길이 1척 반짜리 말뚝 50개를 만들어 오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구한 말뚝을 건지산 아래의 시장(柴場) 가운데 풀을 깨끗이 없앤 곳에 꽂고, 다음해에 조를 심어 수확을 거두었

93) 朴趾源, 『課農小抄』, 田制, “世傳故相臣李尙眞之末第也 家貧埃寒 三餘工課 無以爲資 土校有田 東屹者所善也 爲悶之 乾支山下 有人廢田半日耕地 以錢五十文買之 方秋樹木津盛 相與取其枝柯 可腕大者 作橧杙數千枚 遍椎插其田中 至翌年春 拔其橧 以熟土一掬 盈其科 下粟數粒 更以熟土覆之 及秋得粟五十石 盖木橧入土經冬 雪水木津土液相凝 橧皮朽爛亭毒 自成糞壤 地氣堅實 所以能致大熟也 不煩耒耜 只一小椎 一尺木橧 能得千斗粟 不負薪 而數千橧 足煖三冬 此其區種之別法.”

94) 辛敦復, 『鶴山閑言』(『野乘』 21책, 장서각 소장 K2-238).

95) 乾支山은 乾止山, 또는 乾芝山이라 쓰기도 하는데 나지막한 야산이어서 농지로 활용할 만한 곳이였지만 조선은 祖宗의 신령이 머무는 곳이라 하여 起耕을 금지시키고 進穡지로 남겨놓으려 하였다. 하나의 실례로 다음 기사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中宗實錄』卷54, 中宗 20년 6월 20일 戊申 (16-428), “全羅道觀察使馳啓曰 全州乃 祖宗毓靈之鄉 其鎭山 致意培植 而以一時弊政 因循起耕 亦造家舍 請還陳 以重肇基之地(州 乾止山本爲陳荒 廢朝內嬖人所受 勢家又受 故啓之).”

다.⁹⁶

『학산한언』에 나오는 전동홀과 관련된 일화 속에는 구전(區田)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박지원은 자신이 정리하고 있는 구전법 기사와 전동홀의 일화를 연관시켜 서술하면서 궁박한 유생(儒生)들이 힘써 농사짓거나 땀감을 짊어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만한 것인데 실제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⁹⁷ 이와 같이 박지원은 구전법(區田法)과 유사한 조선의 경작법을 소개하면서 구전법의 농리(農理)에 기반을 둔 경작법이 조선에서 널리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지원의 구전법 소개와 중인 전동홀의 일화 속에서 18세기 후반 무렵에 전주 지역 일대의 특유한 한전 농법으로 구전법과 유사한 경작법이 실행되고 있었던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농업에서의 상품작물의 재배,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농업의 변화양상이 전라북도 지역의 농업과 연관된 모습을 살펴본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생산이 자급자족적인 성격의 소농 경영 뿐만 아니라 지대수취와 주요하게 미곡을 창고에 비축하는 목적의 지주의 농업경영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특히 새로운 작물을 상품작물로 경작하고 수확하여 그 수확물을 시장에서 소화하는 방식의 상품

96) 辛敦復, 『鶴山閑言』(『野乘』 21冊), 田東屹全州邑內中人, “田東屹 全州邑內中人也 風骨秀傑多智 畧有鑑識 時李相國尚真 居在邑隣 獨奉偏母 惇然塊處貧窮之極 菽水難繼 東屹 年雖少 常竒李公為人 傾身交結 共為知己 常分財穀 周其急 李公甚感之 一日初冬末 東屹謂李公曰 子之形自終當貴富 而今貧困如此 何以濟拔 吾有一計 子但依而行之 故取五斗米 及麴授李公曰 但釀之熟則告我 李公如其言 釀既熟 東屹乃遍告邑人曰 李措大雖貧 乃賢士夫也 奉偏親 無以為生 今欲經紀生理 所需者 柳櫟木錐也 爾輩湏飲其酒 每人但致柳櫟錐 長一尺半 五十介 足矣 邑人莫曉其意 然素信東屹 又重李公 皆許之 東屹乃出其酒飲二百餘人 數日後 皆致柳櫟錐 如其數.”

97) 朴趾源, 『課農小抄』, 田制, “此其區種之別法 最為窮儒力不能躬耕負薪者效 而空傳美談 竟無行之者 良可慨惜 東屹亦登武科 官至鐵山府使云.”

작물(商品作物)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른바 상업적농업(商業的農業)이라 불린 지주층과 부농층의 상품작물 생산은 주요하게 곡물과 채소의 재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상품작물 생산을 꾀하는 상업적농업은 부농층과 지주층들이 주도하였고, 전호(佃戶)에게 상업적농업을 권하거나, 심지어 직접 고공을 고용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상업적농업에서 곡물의 경우 계절적, 지역적인 곡물의 가격 차이를 이윤창출의 매개 고리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채소를 상업적농업으로 경작할 경우, 도시화된 지역의 주변에서 채소를 공급하면서 이윤을 도모하였다. 조선후기에 상업적농업이 가장 발전한 것은 인삼(人蔘)을 비롯한 약초재배였다.⁹⁸

상업적농업에 대한 강조는 17세기 초반에 편찬된 『농가월령(農家月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상안이 지은 『농가월령』의 조목을 보면 어염(魚鹽)을 무역하고, 남초(南草), 목화(木花) 등의 재배와 판매를 강조하였다.⁹⁹ 즉, 시장과 일정하게 연결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을 수행하는 분위기의 성숙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부농층이나 지주층은 당시 발전하던 상품화폐경제를 잘 이용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18세기 학자인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나 19세기 학자인 정약용(丁若鏞)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도 당시 상업적농업의 발달 양상이 잘 기록되었다. 즉, 상품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시세에 맞게 판매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인다. 상업적농업은 유통경제의 발달과 함께 도시 주변이나 장시 주변에서는 더욱 번성하였다. 정약용은 이러한 지역적인 상업적농업의 발달에 따른 대표적인 작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98) 조선후기 상업적 농업의 전개와 상품작물의 재배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金容燮, 『增補版朝鮮後期農業史研究』(II), 일조각, 1990; 李永鶴, 「조선후기 상품작물의 재배」, 『외대사학』 5, 서울 한국외대 사학연구소, 1993, 221-242쪽.

99) 金容燮, 『農家月令』의 農業論, 『조선후기농학사연구』, 일조각, 1988, 148-150쪽.

한전(旱田)에서 심는 곡물은 9곡(穀)뿐만이 아니다. 모시, 삼, 참외, 오이 따위와 온갖 채소, 온갖 약초를 심어서 진실로 농사만 잘 지으면 한 고랑의 밭에서 얻는 이득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서울이나 대도시 주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에서는 10무에서 수백 냥(兩)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畝는 논으로 4斗落, 萬錢은 100兩), 서북(西北) 지방의 연초(煙草)밭, 관북(關北)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은 모두 수전(水田) 상상등(上上等)의 수입과 비교하더라도 그 이득이 10배나 된다.¹⁰⁰

이러한 상품작물을 재배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 수익은 매우 비옥한 논에 수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같이 부농으로서 선진적 계층은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장시에 내다팔아서 부를 축적해 갔다.

상업적 작물로서 특히 상품화가 활발하게 진전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쌀이었다. 이양법의 발달과 수전이모작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은 쌀의 재배를 촉진시켰고, 당시 주곡(主穀)으로서 쌀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하여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밭을 논으로 바꾸는 번답(反畓)현상이 활발한 것도 이러한 미곡의 상품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 당시 경기도 여주(驪州)·이천(利川)지역은 쌀을 일찍 재배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렸던 곳으로 전해진다. 또한 여주·이천지역의 농민들은 상품(上品)의 미질(米質)로 인하여 서울에서의 수요가 높아 많은 이득을 보았다.¹⁰¹ 19세기 초의 기록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쌀은 장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물품에 포함되었다. 미곡이 주된 상품생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반도지풍(飯稻之風),’

100) 丁若鏞, 『經世遺表』 권8, 地官修制 田制 11, 正田議 3.

101) 金容燮, 「조선후기의 경영형 부농과 상업적 농업」, 『중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 일조각, 1990, 301쪽.

즉 쌀밥 먹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면서 다른 잡곡에 비해 고가(高價)로 거래될 수 있었던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간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시기에는 보다 나은 시세를 따라 다른 군현(郡縣)의 장시로 진출하여 팔기도 하고, 서울 근교에서는 서울까지 올라와서 매매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의료(衣料)작물의 상품화가 진전되었다. 특히 면포(綿布)는 고려말에 전래된 이래 의생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서 상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실제로 자가소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면포는 상품유통체계에 편입되어 상품화되었다. 또한 시장을 의식하는 상품화 작물로 재배되어 전업적인 면농(綿農)이 등장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주된 의류가 면포였다면, 견직물은 주로 부유층에서 소비하였고, 마포(麻布)와 저포(苧布)는 여름철의 의류나 상복(喪服) 기호품으로 소비되었다. 면포가 이렇게 주된 의류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면화가 가지고 있는 섬유로서의 우수성(내구성·변통성·보온성)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¹⁰² 면포의 생산은 농가의 부업으로 왕성하지 않았고, 전업적인 직물생산업자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상품으로서 직물이 농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은 전반적인 유통구조의 발달과 더불어 농촌경제의 현황을 보여주었다.

한편 상업적농업은 소채(蔬菜), 약재(藥材), 남초(南草) 등을 대상으로도 영위되었다. 특히 채소는 도시 인근지역에서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고, 18세기 이후에는 서울 교외에서 상업적농업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채소 재배는 15세기 말경에 『사시찬요(四時纂要)』를 초록하면서 조선의 농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편찬한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서 일부 기술 설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17세기 중엽이래 채소의 재배법이 적극적으로 농서(農書)에 수록되었

102) 權泰億, 「조선후기 방직기술 개량론」,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출판사(간행처), 1983.

다. 허균(許筠)은 1618년경에 『한정록(閑情錄)』을 완성하면서 「치농편(治農編)」에 비록 중국 농서 『도주공치부기서(陶朱公致富奇書)』를 발췌한 것이기는 했지만 채소 재배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허균은 택지론(擇地論)에서 수륙교통의 요지, 물산이 풍부한 평야지대에 자리를 잡고 사업을 경영하는 상업적 농업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상업적농업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채소와 같은 상품작물이었다.¹⁰³ 특히 채소 재배가 농촌경제에 영향을 준 것은 자급자족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채소가 상품작물로서 매매되는 점이었다. 18세기 이후 서울 교외의 상업적농업이 특히 크게 발전하였다.¹⁰⁴

한편 남초(南草, 담배)도 기호식품으로서 농민들에게 광범한 이득을 준 상품작물로 자리를 잡았다. 임진왜란 무렵 전래된 남초는 처음에는 약초로 인식되었지만 곧바로 널리 기호품으로 애용되었다. 17세기 초반에 고상안이 지은 『농가월령(農家月令)』에서도 남초를 재배하는 기술이 수록되어 있었다. 남초가 사람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해로운지에 대한 논쟁적인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초 흡연의 풍조는 점차 유행이 되고 남초는 기호품으로 자리잡아 갔다.

17세기 후반 이후 남초는 특히 농민들에게 광범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상품작물로 간주되었다. 남초는 널리 기호품으로 애용되고 점차 중독의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남초의 수요가 격증하였다. 남초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조선에서 남초 재배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남초를 수입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한 남초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17세기 중엽 이후 남초 재배지역이 증대되고 산지가 형성되었고, 남초 생산의 증가

103) 金容燮, 『『閑情錄』의 農業論』, 『조선후기농학사연구』, 일조각, 1988, 125-132쪽.

104) 朴趾源의 『穢德先生傳』에는 왕십리에서 무, 살곶이 다리에서 순무, 석곡에서 가지, 오이, 수박, 연희궁에서 고추·부추·해채, 청파에서 마나리, 이태원에서 토란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와 더불어 남초 매매가 증대되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남초 재배의 상황을 살펴보면 18세기 중엽이 주목된다. 이 시기에 전라북도의 진안(鎭安) 장수(長水) 등이 연초 산지로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나아가 18세기 후반에는 호남지역과 서북지역이 남초재배의 주산지를 형성하였고 점차 전국적인 연초 주산지의 형성이 나타났다.¹⁰⁵ 남초는 면포, 미국과 더불어 전국의 절반 이상의 장사에서 취급되는 상품이었다. 이는 후대의 지적이지만 정약용은 남초재배의 소득이 수전 상상등(上上等)에서의 그것보다 10배나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초의 재배가 커다란 이득을 주기 때문에 주산지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남초재배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비옥한 농지가 급속하게 연전(煙田)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남초재배의 확산은 농가부업적인 위치에서 전업적인 위치로 전환하였음을 말해주며, 상업적농업으로의 발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남초가 크게 재배되어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은 18세기 초반에 이미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1732년 원성(原城, 원주) 유학 이주익(李周翊)이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상소하여 열 가지 방책을 아뢰었다.¹⁰⁶ 이주익이 건의한 10가지 정책 가운데 우금(牛禁), 주금(酒禁), 금남초(南草禁) 이렇게 세가지 금령을 제안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 정조가 이주익을 조정에 불러 인견하고 문답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주익은 남초 금지라는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¹⁰⁷ 그는 남초를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래 경작하

105) 李永鶴, 「18세기 연초의 생산과 유통」, 『韓國史論』 13, 서울대 국사학과, 1985, 191~201쪽.

106) 『英祖實錄』 권32, 英祖 8년 7월 21일 乙巳 (42-313).

107) 『承政院日記』 747책(탈초본 41책) 英祖 8년 7월 21일 乙巳.

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령들이 쉽게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성부에서 남초가 매우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보고 재물을 낭비하는 매우 커다란 폐해이니 남초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주익을 인견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동부승지 이귀휴(李龜休)가 전라북도 남초 재배의 현황을 알려주는 매우 주요한 언급을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臣, 이귀휴)이 30년 전에 호남을 왕래하였을 때 남초를 재배하는 밭을 보니 울타리 아래의 자그마한 텃밭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그 후에 경술년(庚戌年, 1730년)에 경차관(敬差官)으로 호남을 왕복하면서 보았더니 남초를 경작하는 곳이 모두 비옥한 양전(良田)이었다. 장수(長水) 진안(鎭安) 등의 군현에서는 한 군현의 토지가 거의 모두 남초를 재배하는 곳이 되어 버릴 정도였다. 신이 보지 못한 곳인 해도(海島) 등지는 거의 섬 전체가 남초를 심는다고 한다.¹⁰⁸⁾

동부승지 이귀휴의 언급은 자못 18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 전라북도 지역 남초 재배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언급한 주요한 군현이 장수, 진안이라는 점에서 특히 전라북도의 내륙 지역에서 남초 재배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도(海島)에서 섬 전체가 남초를 경작하는 데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18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전라북도 지역에서 남초 재배가 크게 확대되어 나갔던 것은 남초를 상품화할 수 있는 남초 흡연의 열풍이 당시 크게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남초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격증하자

108) 『承政院日記』 747책(탈초본 41책) 英祖 8년 7월 21일 乙巳.

남초를 재배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경작 농민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남초의 주산지인 전라북도의 여러 지역이 자리잡은 것이었다.

남초에 대한 조정의 대응은 대체로 남초를 재배하면 곡물을 경작하는 전토가 줄어들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앞서 남초 재배지의 확대를 증언한 동부승지 이귀휴의 입장도 남초 재배를 금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들이 남초 재배를 생업(生業)으로 삼고 있지만,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많은 토지가 이러한 무익한 것(남초)을 경작하는 데 활용되고 결국은 (남초가) 태워 없어지고 만다는 점을 지목하였다. 그는 봄에 남초를 경종할 때 수령이 엄히 금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조도 이귀휴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비옥한 전토에서 남초를 재배하여 곡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농상을 권장하는 방도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정조는 삼남의 도신(道臣)에게 비옥한 전토에서 남초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분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라북도 응지인의 응지농서에서도 전라북도 지역이 남초(南草)의 주요한 생산지였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 전주 유학 김상직(金尙直)의 응지농서 내용이 일부 『일성록』에 초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초(南草)를 금지하는 일”에 대한 것이 있었다. 당시 남초 재배 금지에 대한 조정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변사는 김상직의 응지농서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이미 여러 차례 복계(覆啓)하였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검토 보고하였다.¹⁰⁹ 또한 전주 유학 이장렬(李章烈)도 ‘금남초(禁南草)’를 자신의 응지농서의 한 조목에 넣어서 남초 재배의 금지를 주장하였다. 비변사는 앞서 다른 응지농서에 대해서 검토 보고한 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¹¹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 전라북도 지역의 상품작물 재배는 특

109)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4쪽) 全州 幼學 金尙直 所陳 農書冊子.

110)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5쪽) 全州 幼學 李章烈 所陳 農書冊子.

히 남초 즉 담배 경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응지농서를 올린 북태진(卜台鎭)이 서북(西北) 지역과 남토(南土) 지역에서 담배 재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¹¹¹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태진은 당시 일부 사람들이 “남초가 전(錢)을 만들어내는 방도가 종곡(種穀)하는 것보다 두터우니 마땅히 금지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에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그의 반대 주장에서 오히려 당시 담배 경작 유행이 확연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응지농서를 올린 인물인 윤재양(尹在陽)은 빈부귀천(貧富貴賤),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따지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모두 남초를 피워마시고 있다고 극단적으로 당시의 남초 성행(盛行)을 과장 평가하기도 하였다.¹¹² 이와 같은 남초의 유행과 경작의 확대라는 조선 농업의 변동 양상이 전라북도 지역 18세기 농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바로 남초가 농민들에게 수익을 전해줄 수 있는 상품작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111)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0일 己酉 (95-560나) 副護軍 卜台鎭 上疏.

112)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2일 辛亥 (95-577가) 前 持平 尹在陽 上疏.

IV

개간·간척과 수리시설의 특징

1. 개간과 간척의 실상
2.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



1. 개간과 간척의 실상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개간(開墾)과 간척(干拓)은 농지를 확대하려는 그리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상 수익의 증대와 국가 전세 수입의 증가, 또한 토지소유자의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된 지역개발, 국토개발이었다. 개간과 간척 각각의 대상이 되는 진황지와 간척지 가운데 농지로 개발하는 것이 용이한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착수 가능한 곳이 우선 개간 간척 작업의 대상이었다. 내륙의 저지와 저습지, 천변의 자연제방과 충적대지, 해안 지역의 간척지 등지가 바로 그러한 개간 간척의 대상지였다.

전라북도 지역은 서쪽의 바닷가에 인접한 연해 지역과 동쪽의 산간 지대로 이어지는 내륙 지역 모두 개간 간척의 대상이었다. 개간이나 간척은 토지소유를 목표로 전개되는 것이지만 소규모 자연가호 단위로 소농경영을 위해 벌어지는 것을 예외로 한다면 대부분 커다란 재원을 투여하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토지소유자와 권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전라북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간척은 간척지를 대상으로, 간척 주체, 간척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농지개발 작업이었다. 조선 팔도 가운데 특히 서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간척지 개간, 곧 간척사업이 벌어졌다. 간척은 농경지 확대를 위한 사람들의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면서 연해안 지역의 환경변화를 일으킨 사업이었고, 또한 특정한 사회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연해 지역의 간척(干拓)사업은 농경지의 증대를 기본적인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간척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간척사업을 수행한 경우도 있고, 궁방(宮房)이나 권세가(權勢家), 척신(戚臣) 등이 주도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궁방과 손을 맞잡은 부민(富民)이 나선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연해 지역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서(島嶼) 지역도 간척의 대상지역

이 되었다.

앞서 조선 전기 16세기에는 간척 작업을 해택(海澤) 개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간석지(干潟地)의 농지화는 주로 권력에 가까운 권세가들이 주목하였다. 의정부는 인구의 증가와 전토의 제한성을 논거로 삼아, 바다에 가까운 주군의 해변에 제방을 쌓아 수전(水田)을 만들도록 감사를 독려하자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¹¹³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경종할 만한 전답을 얻게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해택의 조성은 많은 인력(人力)과 물력(物力)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것이었고, 따라서 권력(權力)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작업이었다. 16세기에는 왕실의 외척을 중심으로 한 권세가(權勢家)들이 둔전(屯田)의 명목으로 해택(海澤) 즉 간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런데 경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유지(私有地)로 변화시키고, 주민을 병작자(竝作者) 즉 소작인으로 흡수하여 농장(農場)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¹⁴ 또한 연해지역 한광지(閑曠地)의 간척을 통해 국가나 군현이 운영하는 둔전(屯田)이 설치되기도 하였다.¹¹⁵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신전(新田) 개간은 대체로 본래 소유하던 농지를 박탈당한 몰락한 소농이 노동력으로 참여하고, 지주층과 상인, 권세가 등이 개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천 인근의 자연제방, 범람원, 충적대지, 저습지 등이 주요한 개간 대상지였다. 개간에 투입한 물력(物力)에 따라 개간지의 소유구조가 결정되었고, 노동력을 투입한 농민들에게도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되었다.¹¹⁶

정조를 비롯한 조선시대 중앙정부가 수행한 권농정책의 한 방향은 한광지

113) 『世宗實錄』 권92, 세종 23년 1월 乙丑 (4-333).

114) 李泰鎮, 「16세기 沿海地域의 堰田 개발」,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115) 이경식, 「조선초기의 農地開墾과 大農經營」 『한국사연구』 61-62, 한국사연구회, 1991.

116) 宋讚燮, 「17-18세기 新田 開墾의 확대와 경영형태」 『韓國史論』 12 서울대 국사학과, 1985.

(閑曠地)와 진전(陳田)의 개간(開墾)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조정에서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쳤다. 그리하여 농경지의 확대가 17세기에서 18세기 무렵에 확연히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수전의 증대가 남다른 것이었다. 정조는 개간의 장려를 위해 역대 조정이 마련한 여러 가지 시책을 계승하여 수령에게 개간을 독려하고, 개간지에 대해 몇 년 동안 면세(免稅)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개간자에게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까지 조정에서 수행하였던 개간에 대한 시책이 정조대에도 준행되었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러서도 진전(陳田) 주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근원적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 한광처(閑曠處)일 경우 기경자(起耕者)를 토지 주인(主人)으로 삼는다는 규정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기경(起耕)이라는 조건이 무주 한광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가장 커다란 요건이었다. 그런데 무주 한광처의 소유권을 근원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官)에서 입안(立案)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¹¹⁷ 무주 진전의 기경자를 주인으로 우선 보호하고, 입안을 받은 자가 근거 없이 기경자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수교(受敎)들이 모두 모여서 『속대전(續大典)』에 등재되었다.¹¹⁸

18세기 후반 정조는 개간을 독려하고 권장하는 권농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기경자를 우대하는 입장을 계승하고 있었다. 정조는 때때로 진황전(陳荒田)을 개간하라는 왕명을 내리면서 개간의 독려와 진전의 감소를 지시하였다.¹¹⁹ 정조는 중농(重農)하는 정사에서 개

117) 『新補受敎輯錄』 戶典 量田.

118) 『續大典』 권2, 戶典 田宅.

119) 『承政院日記』 1801책, 正祖 22년 12월 7일 丙申 (95-514가); 林川 郡守 尹志範 上疏; 惟我聖上 軫念裕民之方 嚮下起荒之敎.

간을 권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표방하고 있었다.¹²⁰

정조대 후반에 이르러 개간장려 시책을 한단계 높여 개간자, 기경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규정이 시행되었다. 개간 장려의 성패는 사실상 수세(收稅) 문제, 즉 진전을 개간하였을 때 수세의 측면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의 시행 여부에 달려 있었다. 정조는 진향전의 개간을 권장하기 위해 수세의 측면에서 근원적으로 혜택을 내려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기한을 정해 면세하는 방안에서 한단계 더 앞서 나간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 시책은 바로 진전을 다시 기경전으로 개간하였을 때 전품(田品)을 낮추어주는 것과 감세(減稅)해주는 것을 이미 영남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팔도에 모두 적용하게 한 것이었다.¹²¹ 전품(田品)의 강등(降等)은 일시적인 감세(減稅)가 아니라 영구적인 감세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개간을 장려하는데 획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책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조는 진전 개간을 장려하여 한편으로는 무주(無主)일 경우 기경자를 주인으로 삼았고, 또한 유주전(有主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수확을 독차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래 묵은 유주(有主) 진전을 개간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본주(本主)를 중심으로 소유권 귀속을 정리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전북 지역의 개간·간척의 전개 양상은 살펴보면 우선 하천 인근 지역의 개간작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김만경평야를 중심으로 농지개간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¹²² 만경강 유역의 산간 계곡 지류 곡지의 오랜 취락들이 갖고 있는 입향 시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600-700년 이전 고려말에 입향하여

120) 『綸綍』(奎12855) 庚申(1800년) 6월 1일; 重農之政 豈有過於勸闢... (중략)...不可無獎勵之舉.

121) 『正祖實錄』 권52, 正祖 23년 11월 辛未 (47-220).

122) 남궁봉, 「한국의 농지개간과정 - 김만경평야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9.

정착농업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만경강 상류 비봉계곡의 취락, 제언, 농경지 분포 지도를 통해 농지 개간을 찾아볼 수 있다. 입향 시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지 개간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해안 지역 간척의 양상은 내륙 지역의 개간에 비해 훨씬 투입 재원의 크기가 막대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 간척을 통해 조성된 부안 삼간평(三千坪) 용동궁 장토의 간척 사례를 통해서 그 이전 시기의 해안 간척지 간척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궁방이라는 당시의 최고 권세를 누리던 기관에서 소유하던 간척지의 조성과 간척촌의 형성 과정이 매우 특색있게 전개되고 있었다.¹²³

간척지 간척에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간척을 통해서 농경지를 확보하는 과정의 문제라는 점을 전라북도 지역 간척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부안 삼간평 간척의 경우 간척지가 놓인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아, 간척지가 단 한 번의 방조제 축조로 안정적인 경지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간척지는 방조제를 쌓아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도 작답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개시설 등을 구비해야만 생산성이 보장되는 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오랫동안 논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해일 등으로 일순간에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전북 지역의 응지인의 주장에서 개간, 간척과 연관된 부분을 찾으면 거의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개간에 관련된 것이었다. 개간의 여러 부분 가운데 특히 진전(陳田) 개간과 연관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이

123) 양선아, 「19세기 궁방의 간척-부안 삼간평 용동궁 장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러한 사정은 우선 전북 지역 응지농서 응지인이 남원, 무장, 전주, 진안, 순창 등 내륙에 위치한 군현에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지역의 응지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진전(陳田)을 개간하였을 때 수세(收稅)하는 것의 불합리함을 지목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른 지역의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응지농서의 지향점이 소농(小農)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국가의 농민에 대한 정책의 올바른 수행이라는 목표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력과 시일을 투하해야 가능한 간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라북도 지역 개간 간척의 주요한 전개 양상이 18세기 후반의 경우 진전(陳田) 개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었다. 전라북도 지역 응지인들이 응지농서에서 진전 개간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진전(陳田)을 기경(起耕)하였을 경우 정조의 개간 장려책을 확실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진전을 환기(還起, 다시 기경전으로 개간함)하였을 경우 집복(執卜) 즉 전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3년 이내에는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전북 지역 응지인의 응지농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응지농서를 올린 전주 유학 김상직의 주장은 “진전(陳田)을 새롭게 개간하였을 때 3년 동안 집복(執卜) 즉 수세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아주 분명하지만 단호하고 간략한 건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변사의 검토 보고는 다음과 같이 불분명하고 장황한 것이었다.

(김상직이 주장한) 하나는 진전(陳田)을 새롭게 개간하였을 때 3년 이내에는 집복(執卜) 즉 수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변사가 검토한 결과) 새롭게 개간한 후 3년이 지나야 비로소 마침내 집복(執卜)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 것이다. 외방의 군현에서 수세를 담당하는 서원(書員) 무리들이 중간에서 조종(操

縱)하여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반드시 집복하는데도, 마을 주민들이 군현의 향리들을 호랑이와 같이 두려워하여 감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까닭에 농민이 애초에 개간하려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제도(諸道)에 따로 신칙하여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¹²⁴

비변사는 전주 유학 김상직의 건의, 호소, 주장에 대해 이미 분명하게 진전(陳田)을 개간하였을 때 수세가 감행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조종을 서원배를 비롯한 군현의 향리들이 자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령들이 향리들의 농간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18세기를 비롯하여 진전(陳田) 기간(起墾)에 대해서 수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의와 호소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사가 김상직의 주장에 대해서 장황하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하게 주목할 것을 찾기 어렵다. 다만 정조가 비변사의 보고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새로 개간한 전답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잘 다스리면 전토가 개간되고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변사의 검토 보고도 그러한 원칙을 재천명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직의 건의, 호소에 따라 따로 특기할 만한 변화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전주 지역 농업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진전을 개간하였을 때 수세 문제였다는 것은 다른 응지농서에서도 확인된다.

김상직과 같이 전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유학 송상휘(宋相彙)가 올린 응지농서에서 주요하게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전 개간에 대한 감세(減稅)였다. 송상휘는 분명하게 “모래가 뒤덮힌 진전을 개간한 것은 수세하

124)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4쪽) 全州 幼學 金尙直 所陳 農書.

고, 그대로 진전인 곳은 감세하는 일”을 강조하였다. 송상회의 응지농서 진전 감세 주장에 대해서 비변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하였다.

진전을 감세하고, 개간한 것을 징세(徵稅)하는 것은 진실로 정당한 규정이다. 재해를 입은 결부를 조사할 때 향리들이 간사한 것을 벌여 진전을 도리어 수세하고, 개간한 것은 또한 빠져나가고 있다. 가엾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호소하지 못하고, 관장(官長)은 속임을 당하면서도 알지 못하니 그 폐단이 되는 것에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조정에서 칙령을 전후에 여러 차례 내려졌고, 호조에서 보낸 사목(事目)을 매번 가을마다 반포하였으니 영읍(營邑)에서 잘 살펴서 행해야 할 것이다.¹²⁵

비변사는 조정의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졌으니 영읍에서 잘 살펴서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송상회의 진전에 대한 폐단 개혁 주장과 유사한 것을 진안 유학 박종혁의 응지농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종혁의 응지농서는 『일성록』에 일부 내용이 초록되어 전해지는데, 실은 박종혁의 농서 내용은 간략한 제목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실려 있고, 기사의 대부분은 비변사의 검토 보고이다. 박종혁의 응지농서 가운데 진전(陳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종혁의 응지농서에) 네번째로 이르기 “진전(陳田)에서 근거 없이 수세 대상으로 삼는 일이다.” (비변사가 보고하기를) 그 폐단이 한가지가 아니다. 혹은 재해를 입은 진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질로 수확이 있는 실결(實結)이 되어 버리고 있다. 그 책임은 실로 수령(守令)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혹은 재해를 입

125)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5쪽) 全州 幼學 宋相巢 所陳 農書.

은 결부수로 조정에서 인정 받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간사한 향리의 농간을 금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여 실결에서 나누어 거두는 것이 모자라면 진전에서 수세하여 조정에 올려야 할 세액의 숫자를 맞추고 있으니 이러한 부류를 통틀어 백지징세(白地徵稅)라고 이른다. 지금 (박종혁이) 주장하는 바는 단지 그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를 바로잡을 방책은 개량(改量)하는 것인데, 개량하는 일은 여러 차례 보고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아될 것이 없다.¹²⁶

비변사는 성상(聖上) 즉 국왕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러한 폐단을 뼈속깊이 새겨서 생각하여, 전후에 신칙하고 왕명을 내린 것이 매우 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국 수령이 하나하나 폐단될 것을 챙겨서 조사하고 엄히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전라북도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에서 진전에 대한 약탈적인 수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보이는 것은 정조의 개간 장려책이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간에 대한 장려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만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이와 달리 진전에 대한 과도한 수세가 농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진전 수세의 문제는 향리, 수령과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응지인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조정에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이었다. 정조 「농서윤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농서 편찬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농업과 농촌에 대한 현실 개선 및 변통책 마련에 대한 것도 관심을 부여하고 있었다.

박종혁, 송상휘 등은 진전에 대한 수세를 금단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비변사는 대체로 따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도 동조하면서 근실히 앞서 내린 방책을 실행하

126)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6쪽) 鎭安 幼學 朴宗赫 所陳 農書.

도록 독려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진전 수세의 폐단을 해소하는 과제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새로운 변통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정에서 반포한 사목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보다 중요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아니라 철저한 기존 규정의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2.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

조선왕조 근세사회에서 수리시설은 위치 및 용도에 따라 제언, 천방, 해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언의 경우 계곡, 계곡물을 이용하는 수리시설이고, 하천 물을 이용하는 것이 천방이며, 바닷물을 막는 시설이 해언이었다. 수원(水源)에 따라 수리 개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골짜기를 가로막는 제방(堤防)을 축조하여 계곡물과 빗물 등을 저수하는 경우가 제언이었다. 하천을 가로막아 하천물의 수위를 높이고 이를 따로 개설한 수로(水路), 구거(溝渠)를 통해 논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천방(川防, 淤)이었다. 또한 바닷가의 간석지를 농지로 개발하기 위해 해수(海水)가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이 해언(海堰)이고 이렇게 개발된 논밭을 언전(堰田)이라 하였다.¹²⁷

조선 초기부터 중앙정부는 수리시설을 축조하고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수리정책을 펼쳤다.¹²⁸ 우희열, 이은 등 수리에 정통한 관료들을 동원하여 제언(堤堰)을 축조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벽골제, 눌제 등을 개축(改築)

127) 문중양, 『조선 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集文堂, 2000.

128) 李泰鎮, 「조선 초기의 水利정책과 水利시설」 『李基白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下)』, 一潮閣, 1994; 宮嶋博史, 「李朝後期の農業水利-堤堰(溜池)灌溉を中心に-」 『東洋史研究』 41-4, 1983.

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의 수리정책은 제언과 천방의 축조 장려, 제언 천방의 관리 보수 강화 등의 측면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조정의 수리정책의 기초가 문종대 이후 제언(堤堰)에서 천방(川防)으로 크게 변화하였다.¹²⁹

조선의 수리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할 주체로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였다. 제언사는 때때로 치폐(置廢)를 거듭하였지만 조선 전역의 수리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때때로 관리를 파견하여 제언 등 수리시설의 축조 관리를 독려하였다.¹³⁰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비변사 전임당상의 하나로 제언(堤堰)당상을 설치하여 제언에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시기에서도 조선사회의 농업생산에 활용된 수리 이용은 제언(堤堰) 천방(川防) 등과 같은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조정에서 제언과 천방을 중심으로 펼친 수리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하나는 기왕에 축조되어 있는 제언과 천방(보)을 온전하게 유지하여 그 혜택을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수리시설을 관리하여 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었다. 다른 하나는 제언과 천방(보)이 없는 지역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새롭게 수리시설을 수축하여 전체적인 수리시설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이었다.

정조는 1798년에 내린 「농서윤음」에서 농사의 요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리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언 수리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¹³¹ 정조는 수리시설의 축조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추진하던 도중에 축조한 만석거(萬石渠) 축조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에서

129) 李泰鎮, 「16세기의 川防(淤) 灌溉의 발달」 『韓洵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韓國社會史研究-농업기술의 발달과 사회변동』, 知識産業社, 1986 재수록)

130) 崔元奎, 「朝鮮後期 水利기구와 經營문제」 『國史館論叢』 39 국사편찬위원회, 1992.

131) 『日省錄』 正祖 22年 11月 30日條. 『備邊司謄錄』 88冊 正祖 22年 11月 30日條.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¹³² 1795년 화성에 축조된 만석거는 얼마 뒤인 1797년(정조 21)과 1798년(정조 22) 연이어 발생한 큰 가뭄 상황을 해소하는 데 커다란 효험을 발휘하였다. 당시 2년에 걸쳐 가뭄이 들면서 삼남지역 전부가 커다란 피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 화성지역의 대유둔전(大有屯田)은 만석거에 힘입어 극심했던 한재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1798년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만석거의 수리상의 효용성을 지적하면서 제언의 신설축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제언(堤堰, 萬石渠)이 아직 축조되기 이전에는 황전(荒田) 폐답(廢畝)으로 썩만 울창하게 자라는데 불과하였던 땅이 제언이 축조된 이후에는 물줄기가 호탕하게 되어 버려진 땅에서 비옥한 전토(田土)로 변해 버렸다. 비록 지금 4·5월의 가뭄 속에서도 제언 아래에 있는 수백 석의 큰 평야는 한결같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어 재해를 재해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¹³³

정조는 이러한 가뭄의 극복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수리시설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정조에게 커다란 자신감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계속해서 화성에 여러 제언이 새로 축조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조는 화성의 수리시설 축조 경험을 통하여 농업기술과 농업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리에 있음을 절감하였다. 특히 만석거를 통한 수리시설의 실제 효과를 직접 견문하면서 위와 같은 인식을 보다 공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리의 진흥에 대한 정조의 적극적인 관심은 결국 1798년 「권농정구농

132) 華城을 축조하면서 만석거 등 수리시설을 축조한 사정과 그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 화성』, 신구문화사, 2000.

133) 『弘齋全書』 권 170, 日得錄 徐龍輔 戊午錄.

서운음」에서 ‘흥수공(興水功)’이라는 항목에서 일층 강화되어 표출되었다.

정조는 1798년에 내린 「농서운음」에서 당시 조선의 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수리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조정이 수리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제정(堤政)의 구포(久抛)’ 즉 “오랫동안 제언을 비롯한 수리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처지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여 정조는 다음과 같이 당시 수리시설 현황에 언급하였다.

호남의 벽골, 호서의 합덕, 영남의 공검, 관북의 칠리(七里), 관동의 순지(蓴池), 해서의 남지(南池), 관서의 황지(黃池) 등은 나라 안에 자리한 커다란 제언인데 소착(疏鑿)할 곳을 소착하지 않고 저수(貯水)할 때 저수를 하지 않고 있다.¹³⁴

정조는 한마디로 표현하여 제언 등 수리시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었다. 정조가 「농서운음」을 내리기 직전 호서 지역을 견문하고 돌아온 부사과 이희순(李羲淳)은 합덕제에 대하여 정조와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¹³⁵ 합덕제언과 같은 대제(大堤), 또는 대지(大池)로 지목되는 대규모 제언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작업은 보통 한 고을의 힘만으로는 어려웠다. 특히 합덕제와 같은 제언을 관리하고 부분부분 보수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이웃 고을 나아가서는 도내의 여러 군현이 같이 달려들어야 가능한 일이었다.¹³⁶

18세기 후반 당시 조선 팔도 전역의 대체적인 수리시설의 현황은 충청도 홍

134) 『日省錄』 正祖 22년 11월 30일 己丑 (27권 99쪽-101쪽) 「下勸農政求農書綸音」.

135) 『承政院日記』 1800책, 正祖 22년 11월 21일 庚辰 (95-460다) 副司果 李羲淳 啓.

136) 『承政院日記』 1800책, 正祖 22년 11월 21일 庚辰 (95-460다) 副司果 李羲淳 啓.

주 유학 신재형(申在亨)이 올린 응지농서의 내용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다. 신재형은 제보언(堤淤堰)이라는 세 가지 수리시설이 조선에서 사용하는 수리시설의 대중임을 전제하고 세 가지 수리시설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산(山)에 가까운 곳에서는 저수(貯水)로 이용하는 제(堤)가 있고, 야(野)에 가까운 곳에는 인수(引水)로 이용하는 보(淤)가 있으며, 해(海)에 가까운 곳에는 방수(防水)하기 위한 언(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¹³⁷ 제보언 세 가지는 모두 수리를 일으켜서 가뭄을 대비하는 수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⁸ 이러한 설명에 이어서 당대 수리시설의 현황에 대해 신재형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국(我國)은 산야(山野)의 군현이 비단의 무늬처럼 늘어서 있고, 호해(湖海)의 군현이 바둑돌처럼 벌려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축조한 제언보(堤堰淤)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런데 계곡의 하천에서 흘러내리는 모래가 제(堤)를 막히게 만 들고, 하천의 흐름에 굴러 내리는 돌이 보(淤)를 부딪혀 깨뜨린다. 그리고 해수(海水)가 물고 오는 조수(潮水)가 언(堰)을 무너뜨린다.¹³⁹

조선의 전역에 제언, 천방, 해언을 축조할 만한 곳에는 모두 축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은 특별히 신재형만의 독특한 시각이 아니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 언급한 몇몇 응지인의 견해도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 전역에 걸쳐 축조될 만한 곳에 축조되어 있는 제보언은 각각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137)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16일 乙巳 (95-540다) 洪州 幼學 申在亨 上疏.

138) 卜台鎭도 수리시설의 大宗을 堰淤堤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0일 己酉 (95-560나) 副護軍 卜台鎭 上疏).

139)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16일 乙巳 (95-540다) 洪州 幼學 申在亨 上疏: 『承政院日記』 1802 책, 正祖 22년 12월 22일 辛亥 (95-575다) 備邊司 洪州 幼學 申在亨 上疏 覆啓.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었다. 바로 위의 인용문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석(沙石)·조수(潮水) 등이 계속 제보언의 기능을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재형 이외에 응지농서를 올린 다른 응지인도 마찬가지로 제언이 막혀있고, 모경(冒耕)이 성행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었다. 응지인 윤홍심(尹弘心)은 전반적인 대소 제언의 상황을 소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모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하고, 그 결과 관개가 축소되어 옛날의 제언 아래 물리 혜택을 받던 전답이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 많다고 주장하였다.¹⁴⁰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들은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천방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긴밀하게 부여하고 있었다. 남원 유학 허호(許顥)는 자신의 응지농서에서 비옥한 토지(沃壤)가 천변(川邊)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리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허호는 무엇을 수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지에 대해 『일성록』의 축약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허호의 응지농서에 대하여 비변사가 “천변 전답을 위해 제방(隄防)하는 것이 급무(急務)이니, 영읍(營邑)에 엄히 신칙하여 자체적으로 일체 수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⁴¹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호가 언급한 것도 천변(川邊)의 제방 즉 천방(川防)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세기 중반 이후 재지 사족들의 농업경영에 늘상 뒤따르는 수리시설이 바로 천방이었다. 천방의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보여준 사람들이 이른바

140)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5일 甲寅 (95-592나) 前 郡守 尹弘心 上疏; 蓋因近來 無論大小堤 堰 疏鑿之專沒誠實 冒耕相續 知而不禁 貯水之道 從此淺微 灌引漸縮 則古之堤下 美壤 變爲今之薄土者 多矣.

141)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2쪽-293쪽) 備局 以南原幼學 許顥 疏 陳農務 諸條 回啓.

재지사족(在地士族)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² 이러한 향촌 사족들의 천방에 대한 관심은 천변의 개간 가능지로 작답(作畓)이 확대되면서 고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천가에 자연적인 방죽을 허물고 거기에 자라고 있던 초목(草木)을 베어 내어 작답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천변에 새로운 인공적인 방죽 즉 천방을 쌓는 것이 필요하였고 양반 사족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천방 축조에 관심을 기울였고, 여기에 해당 지역의 농민들도 마을 단위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원 유학 허호가 지적하는 천방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하던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방과 관련된 18세기 후반 순창 지역의 상황을 살짝 살펴볼 수 있는 응지농서가 신보권이 올린 농서책자이다. 『일성록』에 초록되어 전해지는 신보권의 응지농서 속에는 구보(舊洩)가 신축(新築)하는 신보(新洩)을 저지하는 일, 건평(乾坪)의 결부수를 줄이고 제언을 축조하는 일, 수차를 관(官)에서 시험삼아 활용하고 이익을 보는 것의 크기를 보아 제언에서 4분의 1을 수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할 것¹⁴³ 등을 농서의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신보권이 건의하는 내용의 주축은 결국 조정-군현으로 이어지는 통치체제에서 천방의 축조와 관련된 갈등양상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수리시설이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축조되고 지역민에 의해서 관리 운용되지만, 궁극적인 관장 책무는 조정에서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음으로 서유구가 순창군수로 재직하면서 정조에게 올린 응지농서에서도 수리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수리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概論)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 특히 제언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각론(各論)을 제안하고 있었다. 서유구는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하

142) 李泰鎮, 「16세기의 川防(洩) 灌溉의 발달」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143)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2쪽) 備局 啓言.

늘의 일이고, 전토의 비옥함과 척박함은 땅의 일이며,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가물면 물을 모아두고, 홍수가 나면 물을 빼내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⁴⁴ 그리고 그는 “땅이 척박한 것은 비옥하게 만들고, 사람이 편안하게 일하면서도 수고하는 자와 대등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수리(水利)가 그러하다”라고 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토지 개간하면서 수리를 강구하지 않으면 개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¹⁴⁵라고 토지개간과 수리를 긴밀하게 결부시켰다.

서유구는 진흥을 시행하는 군현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동원하여 제언(堤堰)을 수축하는 방안을 보다 발전시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제언을 축조할 적합한 지역이 있더라도 공사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제언의 물을 잠기는 곳에서 세금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서유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내의 부호(富戶)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제언을 수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수리시설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고, 경내의 부호를 동원하여 수리시설을 축조하게 하며, 그 대가로 부호들에게 관계(官階)를 내려주는 방안이었다. 서유구는 1820년 무렵에 작성한 「의상경제책」에서도 수리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서유구는 그동안 자신이 축적한 수리지식 가운데 조선의 수리현실에 비추어볼 때 가장 요긴한 것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었다.¹⁴⁶

전북 지역 응지농서 가운데 『일성록』에 초록 정도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의 요책을 잘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응지농서가 바로 고부

144) 徐有榘, 『楓石全集』『金華知非集』卷第一, 上疏, 淳昌郡守應旨疏; 臣聞澇旱天也 沃瘠地也 勞逸人也 而旱則濬之 澇則疏之 地瘠而可使爲沃 人逸而可以敵勞者 惟水利爲然.

145) 徐有榘, 『楓石全集』3冊, 『金華知非集』卷1, 淳昌郡守應旨疏.

146) 徐有榘의 興水利以虞旱澇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지서를 참고할 수 있다. 문중양, 『조선 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集文堂, 2000, 215~226쪽.

유학 박도흙(朴道欽)이 올린 것이었다. 비변사는 정조의 명령을 받아 박도흙의 농서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박도흙이) 주장한 것이 모두 모두 8조목이다. 첫번째는 폐기된 제언을 수치(修治)하는 것, 두번째는 방죽을 쌓아 방천(防川)하는 것, 세번째는 동산(童山)을 금양(禁養)하는 것, 네번째는 진전(陳田)을 기간(起墾)하는 것, 다섯번째는 연변(沿邊, 하천 양안)에서 부종(付種, 직파)하는 것, 여섯번째는 평전(平田)에서 저수(儲水)하는 것, 일곱번째는 오가(五家)마다 목우(牧牛)하는 것, 여덟번째는 재주 있고 선량한 관리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이다.¹⁴⁷

박도흙의 농서에 대해서 비변사가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수령들과 유생들이 여러 응지농서에서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자세하게 논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도흙의 농서 내용으로 소개된 8가지 가운데 3가지가 수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번째로 제시된 폐기된 제언을 수치(修治)하는 것은 조선 팔도 적어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앞선 시기에 축조되어 활용하다가 당시에는 버려진 제언을 다시 보수, 증축 등의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두번째 방죽을 쌓아 방천(防川)하는 것은 하천 양안의 방죽을 높이 축조한다는 것인데 이는 2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천방(川防) 즉 보(淤)와 연계되는 보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방죽이고 다른 하나는 보(淤)로 가둔 하천수의 수위를 보장하기 위해 하천을 가로질러 쌓아놓은 방죽이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147)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6쪽) 古阜 幼學 朴道欽 所陳 農書冊子.

하천수를 관개 용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언과 구별되는 특징은 지닌 것이고 산곡 지대 보다는 평야 지대에서 지류, 지천을 이용하는 천방 방식의 수리시설에 결부된 방죽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 지역 수리시설이 천방, 방천 중심으로 운영되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번째로 언급된 평전(平田)에서 저수(儲水)하는 것은 조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연이어 자리잡고 있는 평전 가운데 하나에 겨울에 내리는 눈과 비를 가둬두기 위해 논둑을 높여 만든 임시적인 저수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평전의 한쪽 귀퉁이에 현재 일컬어지는 명칭으로 둑범이라 불리는 물구덩이를 조성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의 농업수리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할 대상의 하나가 수차(水車)의 보급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조대 이전부터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대천수(大川水)를 관개에 활용하는 수리도구인 수차(水車)의 제조보급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1795년(정조 19) 2월과 9월에 전 좌랑 이우형(李宇炯)이 수차의 제조보급을 건의하였으나 오랜 논의 끝에 시행되지 않았다.¹⁴⁸ 이때 호조(戶曹)는 수차를 제작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결국 정조는 이우형의 출신지인 호남에서 도신이 시험해 본 후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뿐이었다.

전라도 도사를 지내다가 응지농서를 올린 김하련(金夏璉)은 이우형을 수차 제조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하였다. 김하련은 폐사군 지역에서 수차(水車)와 주楫(舟楫)에 쓸 만한 재목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운반하는 것도 하천과 바다를 이용하면 자성(慈城)에서 삼남(三南)까지 10일 정도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우형을 자성으로 보내서 수차를 만들게 하

148) 『弘齋全書』 권44, 批/兵曹佐郎李宇炯請行水車疏批-乙卯.

고 농사를 짓게 하면 농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⁴⁹ 이와 같은 김하련의 주장은 전라도 지역에서 수차를 활용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선 팔도 전역으로 나아가 폐사군 지역까지 보급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개별 작물의 경작법이 기후, 토양 등 지역적인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농기구의 제작 기술의 경우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김하련이 전라도 지역에서 수차 전문가로 알려진 이우형을 폐사군 지역으로 보내자고 건의한 것은 당시 실행 가능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차의 제조, 수차의 보급은 사실 조선 팔도 곳곳마다 관심을 기울인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화성 유학 우하영(禹夏永)도 1796년(정조 20) 4월에 시무 13조를 올리면서 여기에 수차의 제작 보급을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었다.¹⁵⁰ 하지만 비변사를 중심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정조는 그러한 비변사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수차를 도입하려는 조선 초기 이래의 시도는 별다른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수리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사례가 바로 벽골제이다. 당시 전라북도 김제의 벽골제가 치해있는 현황 속에서 수리시설의 특색을 추정할 수 있다. 정조가 응지인 무장(茂長) 유학 강석운(康錫運)이 올린 응지농서에 대하여 내린 비답 속에서 벽골제의 당시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강석운은 정조의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흥수공(興水功), 상토의(相土宜),

149) 『日省錄』 正祖 23년 1월 10일 己巳 (영인본 27권 298쪽) 全羅都事 金夏璉 疏請 水車之材 取用四郡材木 仍請沿海種樹 賜批. 김하련은 경기와 三南·兩西의 沿海邊 수천리에 大小峰巒 이 거의 童濯되어 있어 한 아름이나 한줌 정도 크기의 나무도 取用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50) 禹夏永이 지은 『千一錄』 등에 대한 내용 분석과 우하영의 사상에 대해서는 崔洪奎의 『禹夏永의 實學思想 연구』(1995, 一志社)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농기(利農器) 3개 조목을 부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비변사는 강석운의 응지농서를 검토하여 보고하면서 제대로 의견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전후의 보고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조는 강석운이 독서한 것이 많고 식견이 있어서 언급하는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여 이치에 합당하고 사정에 절실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강석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조는 다음과 같이 비답을 내렸는데, 여기에 벽골제의 현황에 대한 언급이 같이 들어 있었다.

(강석운이) 벽골지(碧骨池)를 논한 것에 대하여 (내가, 정조가) 또한 평소에 생각해 둔 것이 있다. 대개 벽골제는 주위가 77,400여 보(步)이고, 몽리(蒙利) 면적이 9,840여 결(結)인데 지금 385년 후에 중수(重修)하려고 하면 영읍(營邑)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민인(民人)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능히 기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경(卿)들은 이를 고려하여 다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책을 궁구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다.¹⁵¹

정조는 벽골지 즉 벽골제가 당시 385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수(重修)되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고 보았다. 정조가 언급한 시기가 1799년이므로 여기에서 385년을 빼면 1414년이 된다. 1414년은 바로 태종이 벽골제를 대대적인 보수, 개축하였던 1415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15년 10월 태종의 왕명에 따라 벽골제를 개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¹⁵² 1416년 초에 완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골제는 수축된 뒤에 벽골제 아래의 개간가능지[陳地]가 무

151)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1쪽) 茂長 幼學 康錫運 所陳 農書冊子.

152) 15세기 초반 태종대 벽골제 개수에 정리는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염정섭, 「조선 초기의 수리(水利) 정책과 김제 벽골제」 『농업사연구』, 제6권 2호, 79-115쪽, 한국농업사학회, 2007.

려 6,000여 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였다.¹⁵³ 벽골제 아래 개간 가능지의 면적으로 추산된 6,000결은 실제로 망막한 들판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태종대에 활용된 1결의 면적은 고려말부터 채택하여 세종대에 공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활용한 3등 양전척 방식이었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의 토지를 측량하는데 각각의 양전척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3개의 양전척으로 측량한 전토의 넓이는 당연히 상중하(上中下)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대략 상전(上田) 1결의 넓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坪) 단위로 환산하면 2,000평 정도, 중전(中田)은 3,100여 평, 하전(下田)은 4,500평 정도이다.¹⁵⁴ 벽골제 아래 개간가능지 6,000결을 중전(中田)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18,600,000평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막대한 들판 크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태종이 세종에게 국왕자리를 물려준 직후인 1418년 9월 우회열은 김제 벽골제의 석주(石柱)만 좌우에 나란히 서 있을 뿐이고, 제언의 뚝이 무너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¹⁵⁵ 그리고 1420년 벽골제의 뚝이 무너져 제언 아래 2,098결에 피해를 주었다.¹⁵⁶ 세종은 벽골제 보수와 관련하여 풍년이 드는 해에 수축하도록 명하였다.¹⁵⁷ 하지만 이후 벽골제의 수축에 관한 기사가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 자료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 있는 김제 벽골제 관련 설명을 보면 “이득이 적고 폐단이 많아 곧 무너졌다(本朝 太宗

153) 『太宗實錄』 권35, 太宗 18年 1月 13日 甲子 (2-200).

154) 세종대 공법이 확정된 1444년 이후 농경지 면적은 등급별로 1결의 實積이 1등전은 2,753.1평, 2등전은 3,246.7평, 3등전 3,931.9평, 4등전 4,723.5평, 5등전 6,897.3평, 6등전 11,035.5평이었다(金泰永, 『朝鮮前期土地制度史研究』, 知識産業社, 1983.).

155) 『世宗實錄』 권1, 世宗 卽位年 9月 27日 甲戌 (2-271).

156) 『世宗實錄』 권9, 世宗 2年 9月 13日 戊寅 (2-398).

157) 『世宗實錄』 권11, 世宗 3年 1월 己卯 (2-421).

十五年 更築 以利小弊多 尋墮之)”¹⁵⁸ 라고 되어 있다. 벽골제의 형편이 태종대 수축되었다가 세종대 이미 무너진, 부서진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려준다.

김제 벽골제의 17세기 이후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제방이 무너진 채 남겨져 있는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다. 김제 벽골제의 모습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을 17세기의 저명한 경세가인 유형원(柳馨遠, 1622~1673)¹⁵⁹이 지은 『磻溪隨錄』에서 찾을 수 있다. 유형원은 호남(湖南)의 벽골제(碧骨堤), 놀제(訥堤), 황등제(黃登堤)는 모두 커다란 저수지들이고 여러 군현에서 혜택을 받는 곳인데, 지금은 모두 무너지고 제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호세(豪勢)들이 차지하는 바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였다.¹⁶⁰ 벽골제가 17세기 이후 오랫동안 조선 초기에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형원은 벽골제의 제방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장(丈) 정도만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1,000명을 10일 동안 동원하면 벽골제 등을 다시 수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⁶¹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왕조실록기사에서도 벽골제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현종대 실록기사에서 김제 벽골제를 수축하자는 전라도 관찰사의 건의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1666년 1월 홍문관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이 김제 벽골제의 수축을 제안하여 이를 우의정 허적(許積)과 논의하였다. 실록 기사에는 ‘김제 제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뒤이어 비변사에서 이에 관한 보고를 올리면서 ‘벽골제’를 지칭하기 있기 때

158)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全州府 金堤郡 (5-656); 古大堤碧骨堤(新羅訖解王二十一年 始開岸長一千八百步 本朝太宗十五年更築 以利小弊多 尋墮之).

159) 柳馨遠은 1653년(효종 2) 32세의 젊은 나이로 전라도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 은거하기 시작해 20년 간 이곳에서 살다가 1673년에 죽었다. 부안과 김제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유형원의 벽골제에 대한 언급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60) 柳馨遠, 『磻溪隨錄』 권1, 田制上 分田定稅節目.

161) 柳馨遠, 『磻溪隨錄』 권3, 田制後錄上 堤堰.

문에 조복양이 수축하자는 제언이 벽골제임은 분명하다.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던 허적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벽골제를 수축하는 것이 이득이 많고 손해는 적지만, 공역(功役)이 거대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현종은 비변사에 낭청을 보내 살펴보고 품처(稟處)하라는 명을 내렸다.¹⁶² 한 달 여가 지난 1666년 2월 비변사는 벽골제 수축을 가볍게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정지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⁶³ 이후 벽골제 수축에 관한 논의 등은 실록 기사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정조대의 실록 기록에서도 벽골제의 제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던 지적을 찾아볼 수 있다.¹⁶⁴ 몇 개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에 김제 벽골제는 커다란 잠재적 효용가치를 지닌 제언으로 관심 대상이 되곤 하였지만, 실제 무너진 제방을 쌓는 공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62) 『顯宗改修實錄』 권14, 顯宗 7年 1月 23日 甲辰 (37-481),

163) 『顯宗改修實錄』 권14, 顯宗 7年 2月 10日 辛酉 (37-483); 備邊司啓曰 卽見堤堰司郎廳及全羅監司狀啓 則碧骨堤修築之役 實難輕舉 請先以停止之意 行會本道 以定堤內居民疑懼之心 上從之.

164) 『正祖實錄』 권48, 正祖 22年 6月 3日 乙未 (47-89); 且近來災荒之類仍 蓋由於水利之不講 湖南之碧骨堤 若加疏鑿 則如此旱災 不足爲慮 而今盡湮塞 舊時週遭 殆不可復識云 寧不可惜 此堤延袤橫跨十二邑 湖西南之稱 卽以此也.

V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

1. 농촌 구조의 변화
2. 농민층의 처지와 대응



1. 농촌 구조의 변화

18세기 후반 전북지역의 농촌과 농민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응지농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응지농서가 기본적으로 농법(農法), 농정(農政)을 다루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 속에는 농촌(農村)과 농민(農民)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이 담겨 있었다. 농촌사회 구조의 변화 양상과 농민층의 대응과 분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국가적인 지배통제 양상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당시 조선 조정의 입장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조의 여러 번 통책에 호응하여 응지농서를 작성한 응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농촌(農村), 농민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이를 응지농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농촌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부세(賦稅), 특히 전세(田稅)라고 할 수 있다. 전세와 관련하여 궁방(宮房)과 아문(衙門)에서 둔전(屯田), 둔답(屯畓)에 부과하는 조세는 그 수취과정에 도장(導掌)이라고 불리는 중간인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횡령, 착취, 남징 등의 문제가 자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궁방전을 둘러싼 문제가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궁방전(宮房田)과 아문둔전(衙門屯田)이 절수(折受)라는 형식을 통하여 확대되었다.¹⁶⁵ 둔전은 주둔하고 있는 병사(兵士)의 군량을 자급자족하고, 각 관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진황지를 개척하여 설정한 전답이었다. 그런데 궁방전과

165) 임란 이후 屯田은 官의 권력에 의해 창출된 空閑地를 통해 확대되었다. 『大典會通』에 따르면 各鎭의 屯田이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 空閑地로 充給할 수 있었다(『大典會通』 卷之二 戶典 諸田).

아문둔전은 진황지를 절수받아 백성을 모아 경작하는 방식을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민전(民田)의 투탁(投托)을 받거나 또는 민전을 침탈(侵奪)하는 방식으로 그 면적을 크게 확대시켜 나갔다.

궁방의 절수는 구체적으로 어(漁)·염(鹽)·시장(柴場)·선척(船隻)을 비롯하여 토지(土地)·노전(蘆田)·해택(海澤)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어장과 염장은 단기간에 적은 투자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수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궁방의 어장과 염장의 절수는 그 과정에서 어민에 대한 침략과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경영의 미숙으로 차인배(差人輩)가 연해민을 침학하는 계기를 초래하였다.¹⁶⁶

각 궁방들의 궁방전 절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수세권을 획급(劃給)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소유권을 획급한다는 것은 무주지(無主地)를 절수하는 경우이고, 수세권만을 획급한다는 것은 유주지(有主地)를 절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무주지의 절수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주인이 있으면서 명목상의 소유권이 궁방에 있는 것과 실질적인 소유권이 전적으로 궁방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아무튼 절수는 수조권이나 소유권을 영구히 주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일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궁궐한 궁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절수를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점차 광범하게 전개되고, 또한 궁방에서는 영구히 점유하려고 하였다.

궁방이 수행한 절수(折受)는 수조권적 토지 지배의 잔존 혹은 변형형태로서, 왕실·궁방의 과도기적 토지 지배의 한 형태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¹⁶⁷ 궁

166) 박광성, 「궁방전의 연구」, 『인천교육대학논문집』5, 1971 ; 박병선, 「조선후기 궁방염장 연구」, 『교남사학』2, 1986.

167)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 이영훈, 「궁방전과 아문둔전의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1988 ; 도진순, 「19세기 궁장토에서의 중답주와 항조-재령 여물평장토를 중심으로」, 『한국사

방에서 절수하는 토지는 무주진황지(無主陳荒地)나 양안외가경지(量案外加耕地) 등 국가수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궁방에서는 국왕의 권력을 배경으로 주인이 있는 개간지를 양안상무주지(量案上無主地)라는 명목으로 절수하여 궁방전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궁방전의 확대는 매득(買得), 각영(各營)과 각아문(各衙門) 소속 둔전(屯田)의 이속(移屬), 무주지(無主地) 절수(折受)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궁방전과 관련된 사회문제는 바로 절수(折受)에서 비롯되었다. 절수는 궁방이 무주지를 조사하여 토지가 소재한 지방의 관으로부터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방법과 궁방에서 절수 대상지를 내수사(內需司)에 신고하여 이조(吏曹)·호조(戶曹)를 통하여 절급(折給)받는 방법이 이용되었다.¹⁶⁸ 그런데 문제는 궁방이 절급받기 위해 신고한 토지 가운데 무주지(無主地)가 아닌 유주지(有主地) 특히 양인, 천인의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궁방의 토지 절수는 민전침탈과 국가수세지의 감소를 유발하였고, 이에 인민들이 소유권분쟁 등의 사단을 일으키고 있었다. 당연히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궁방은 절수받는 방법 이외에 사여(賜與), 민전 유인·투탁 등의 방법으로 궁방전의 규모를 넓혀나갔다. 그리하여 현종초에 이르면 한 궁가(宮家)가 보유한 궁방전이 1,400여결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지역적으로 삼남에까지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황해도 지역에 궁방전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궁방전은 모두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免稅)의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궁방전의 확대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그리 기분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물론 이 경우 국가와 왕실은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론』 13, 서울대 국사학과, 1985.

168)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궁방이 자신이 이름으로 설정한 궁방전(宮房田) 내부에 민전(民田) 소유자의 투탁을 받은 전토를 섞어두고, 또한 백성 소유의 토지를 침탈한 것은 엮어 놓고 있었던 사정은 겉으로 보아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은 불충분한 파악이다. 이러한 구차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방식의 궁방전 확대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즉 당시 궁방전에 토지를 투탁한 민인의 생각은 이러한 투탁이 과거 수조권(收租權)이 설정되어 있었던 수조지(收租地)와 다를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신들이 보유한 소유권마저 궁방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투탁(投託)이라는 말조차 감히 입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궁방과 실질적인 소유자 사이에 토지소유의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절수(折受)-면세제(免稅制)는 수조권적 토지 지배가 폐지되고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던 토지 소유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수조권(收租權)이 폐기된 가운데에서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왕이라는 최고권력을 매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왕실·궁방의 과도기적 수조권적 토지 지배의 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과도기적 수조권적 토지 지배의 성격을 가진 절수라는 형식은 1695년(숙종 21년) 을해정식(乙亥定式)에 의해서 급가매득제(給價買得制)와 민결면세제(民結免稅制)가 시행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궁방의 토지 획득과정의 대종이 이전의 절수(折受)와 같은 경제외적 방법에 의존하던 것에서 급가매득이라고 하는 경제적 방법으로 전환한 데에 커다란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급가매득의 시행은 토지의 상품화가 크게 진전되던 17세기 중후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면 궁방전은 매득지(買得地)·절수지(折受地)·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의 세 종류로 구성되었다. 매득지는 궁방이 지주가 되어 작인(전호)을

거느리는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토지였다. 즉 궁방(宮房)이 지주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 민전(民田)에서의 지주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절수지의 경우 궁방의 명목적 소유권과 경작자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중첩되는 이중적인 소유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었다. 이러한 점은 지대 수취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매득지처럼 병작반수의 형태가 아니라, 1결(結)당 조(租) 200두(斗)를 수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궁방이 실제 개간의 주체였을 경우는, 공사 참여자 사이에 토지의 분할·도장권(導掌權) 부여·경작권의 부여 등 권리의 분할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답주(中畓主)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궁방전은 유토(有土)·무토(無土)로 분화되어가면서 더욱 복잡한 소유관계를 맺고 있었다.¹⁶⁹ 18세기 말엽에는 궁방전의 면적이 4만 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전국 경지면적의 3% 내외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토에는 궁방(지주)-작인(전호)의 소유구조 외에 궁방(수조자-지주)-기주-중답주-도장(지주)-작인(전호)의 이중구조가 존재하였다. 후자는 인민들의 소유권 성장의 결과이며, 궁방의 사적·공적 지주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하였다. 아울러 궁방은 경제외적 방법에 의하여 이 지역 궁방전의 소유주가 되었으나, 중답주는 경제적인 연유로 성립된 소유자로서의 지주적 성격이 짙으며, 부농들은 중답주로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은 이들의 토지를 소작 또는 자소작(自小作)하는 실작인(實作人)들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중답주의 성장은 직접생산자의 권한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궁방전과 아문둔전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궁방전·아문둔전

169) 有土에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토지소유권이 궁방에 있는 땅이고 2종은 민유지이지만 조세를 궁방에 납부하는 땅인 것 같다. 無土는 민유지이면서 조세를 궁방에 납부하고, 3-4년(정조 이후에는 10년)마다 윤회하여 정하는 곳이다. 2종 유토와 무토의 차이점은 전자는 토지를 고정시키는 데 반하여, 후자는 토지를 윤회시킨다는 점이다.

으로 설정된 토지를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¹⁷⁰ 그런데 실제로 궁방·아문과 일반 민 사이의 토지소유권 분쟁은 궁방·아문의 과도한 수취에 대한 민의 저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궁방·아문의 과도한 수취는 다름아니라, 궁방전과 아문둔전의 중간관리인의 중간 수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둔전에서 수취한 세액(稅額)의 일부만 아문(衙門)에 전달되고 나머지는 둔유사(屯有司)라고 불리는 중간관리인의 수중에 들어가버린다는 중간착취·수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사정이 바로 조선후기 둔전경영에서 파생되고 있는 커다란 폐단이었다.¹⁷¹

한편 궁방전의 세액은 차인(差人) 또는 궁차(宮差)들이 거두었다. 이들 차인들은 궁에 소속된 하인들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상인이거나 공인(貢人)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인이나 공인을 차인으로 활용하였던 이유는 궁방에서 먼 곳의 절수지를 관리·수세·운송하기가 어려웠으며, 또한 이들에게 수세액을 선납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차인권(差人權)은 매매되기도 하였다.

차인의 하송(下送)은 점차 도장(導掌)으로 바뀌어갔는데, 역시 도장권도 매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도장권은 재산으로 세전(世傳)되기도 하고 매매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도장들은 그들의 투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속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도장들의 수세상의 작폐를 보면, 궁방에 절수된 후 백성들은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도장배들의 농간 때문이었다. 도장배들의 이러한 작폐에도 불구하고 지방 수령들은 궁방의 권위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기가 일쑤였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 실시한 궁방전 관련 조치는 바로 궁차(宮差)라 불린 도

170)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171) 『燃藜室記述』 別集 권11, 政教典故 田制

장(導掌)과 궁노(宮奴)가 징세(徵稅)하는 법을 혁파한 것이었다.¹⁷² 도장을 혁파한 이 조처는 후대에 「병신절목(丙申節目)」으로 불렸는데, 『탁지지(度支志)』¹⁷³에 주요한 조목이 전제된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아마도 절목의 온전한 조목 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주모록(籌謨錄)』¹⁷⁴에 「각궁방면세이정절목(各宮房免稅釐正節目)」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18세기 조정의 궁방전 관련 정책, 조치의 귀결점이 바로 「병신절목」이었다.

「병신절목」을 내리기에 앞서 1776년 3월 왕위에 오른 정조는 4월에 궁방의 전결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⁷⁵ 이때 정조는 정액 이외에 궁방전의 면세(免稅) 혜택을 환수하고 출세(出稅) 즉 세금을 내게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궁방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유토면세전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규모가 법전에 규정된 면적으로 한정되고 그 이외의 궁방 소유지에서는 출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궁방이 수세권만 행사하는 무토면세지에서는 정해진 수세액만 받을 수 있게 규제를 강화한 것이었다.

1776년 9월 마련된 「병신절목」은 궁방의 무토면세(無土免稅) 전답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궁방이 1결(結)에서 거두는 것이 전(錢)이면 7냥 6전 7분이고 미(米)이면 23두(斗)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장의 무리들이 법을 뛰어넘어 함부로 거두는 것을 자행하고 있어 도장을 영구히 혁파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궁방에서 직접 수세하는 것이 아니라 호조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이같은 내용의 「병신절목」이 시행된 이후¹⁷⁶ 도장이 무토에서 잃어버린 이

172) 『正祖實錄』 권2, 정조 卽位年 9월 1日(己巳) (44-620).

173) 『度支志』 권5, 版籍司 田制部三 宮結 節目.

174) 『籌謨錄』(규장각, G4250-98). 이 책은 1776년(정조 즉위)에서 1782년(정조 6) 사이에 조정에 서 논의된 여러 사안들을 吏, 戶, 禮, 兵, 刑, 工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날짜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175) 『日省錄』 英祖 52년 1776년 4월 9일 庚戌 命諸宮房田結查出以奏.

176) 『日省錄』 英祖 52년 1776년 11월 3일 辛未.

득을 유토(有土)에서 보상하기 위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보고되고 있었다.¹⁷⁷ 하지만 전반적으로 궁방전에 따른 폐단이 잠잠해지면서 백성들이 의지할 바를 얻은 상황이라고 평가되었다.¹⁷⁸ 이러한 중앙 조정에서의 상황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에서의 양상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라북도 지역의 농촌과 농민의 실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던 궁방전과 관련된 논의가 응지인의 응지농서에 들어 있었다. 궁방전이 조선 팔도 전역에 특히 삼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전라북도 지역 농촌과 농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거리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남원 전 현감 장현경(張顯慶)이 정조에게 올린 응지농서는 둔답(屯畓) 즉 궁방전에서 나타나는 폐단으로 무토면세전을 지목하고 있었다. 장현경은 궁방의 무토면세전에서 도장들이 과도하게 수세하고 있는 폐단을 지목하였다. 이미 혁파되었어야 할 도장이 농간을 부리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도장들이 수세를 함부로 넘치게 거두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장현경의 주장에 따르면 도장들이 남봉(濫捧)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세(稅)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다. 장현경은 둔답에서 양세(兩稅)하는 폐단을 거론하면서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변사는 장현경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하면서 궁방을 옹호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양세(兩稅)라는 것은 하나는 임금에 바쳐야 하는 올바른 공(供)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토지에서 내야 하는 세(稅)이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위로는 공세(公稅)가 있고 아래로는 토세(土稅)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무토

177) 『日省錄』 英祖 52년 1776년 11월 20일 命導掌宮差之橫敍加徵 論報嚴繩.

178) 『日省錄』 正祖 1년 1777년 9월 2일; 召見前完伯李普行于熙政堂; (중략) 予曰 白地徵稅旣云革廢 則可幸 而昨年備局新節目下去後 宮結之弊 似亦寢息矣 對曰 節目頒行之後 民賴以安矣.

면세(無土免稅)는 곧 민결(民結)로부터 확정하여 수세권을 지급한 것이어서 공세(公稅)만 있고, 토세(土稅)로 말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유토면세(有土免稅)라는 것은 공세(公稅), 토세(土稅)가 있어 본래 사가(私家)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다름이 없다.¹⁷⁹

비변사가 주장하는 공세(公稅)는 법전에 규정된 전결세(田結稅)인데 특히 국가가 거둬가는 것을 가리키고, 토세(土稅)는 토지 소유자가 작인에게 받아가는 지대(地代)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면세는 지대에 해당하는 토세(土稅)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토면세에서는 사가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작인인 농민들이 공세와 토세를 마땅히 모두 내야 한다고 궁방의 행적을 변명하였다. 향촌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궁방에서 거두는 공세와 토세를 양세라고 지목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원 유학 허질도 내수사의 궁방전에서 거두는 것이 과도한데 이는 도장이 함부로 많이 거두어 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허질은 “내사(內司) 즉 내수사(內需司)의 전지(田地)가 남원 후평(後坪)에 있는데 매 1부(負)에 정조(正租) 7승(升)을 거두고 있다. 근년 이래로 도장(導掌)으로 수세(收稅)하는 자들이 점차로 가봉(加捧)하여 1부에 세가 1두 3승에 이르고 있다”¹⁸⁰고 지적하였다. 올해와 같은 흉년을 만나 그 1부에서 납부하는 것이 정규의 수세액보다 3배에 달하니 이런 까닭에 그 농사를 짓는 자들이 농사짓지 않고 있다. 이전과 같이 수세하면 함부로 거두는 일이나 농사를 게을리 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

179)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南原 前 縣監 張顯慶 所陳 農書.

180)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3쪽-295쪽) 備局 以南原 幼學 許奎 疏陳 農務諸條 回啓.

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비변사는 “도장이 함부로 혼란을 일으키는 폐단을 엄히 금지하고, 또한 흉년이 든 해를 만나면 어느 아문(衙門)을 막론하고 본도(本道)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수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제를 해당 도장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도 “내수사 도장의 일은 더욱 통탄스럽고 극악하다. 먼저 본사에서 엄히 내수사를 조사하게 하여 초기(草記)로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해당 도에 명령을 보내 따로 조사하여 엄한 형벌로 처리한 다음에 보고하라는 일로 분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¹⁸¹ 도장의 수세 과정에서의 남징, 탐학의 문제는 정조 재위 기간 중에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은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궁방과 관련된 당시 남원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응지농서의 설명을 통해, 우선 장현경의 주장과 비변사의 설명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촌 현실에서는 궁방이 양세를 거두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비변사를 이를 당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장현경과 비변사의 주장은 사실 동일한 문제를 같이 지목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현경은 무토면세임에도 불구하고 궁방이 양세를 거두는 것이 남징이라고 주장한 것이고, 비변사는 유토면세이니까 양세를 거두워도 무방하다고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도장의 폐단을 정치하는 것만으로는 장현경이 제기한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궁방의 무토면세, 유토면세의 구획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가 농민과 궁방 사이의 무토, 유토에 대한 현실 인식의 차이를 사실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허질의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궁방전의 수

181)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3쪽-295쪽) 備局 以南原 幼學 許奎 疏陳 農務諸條 回啓.

세 문제는 도장의 탐학에서 비롯되는 바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18세기 후반 전라 북도 응지인의 응지농서에서 농촌지역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야 할 일로 지목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양전(量田)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양전이란 전토의 전품(田品), 장광척수(長廣尺數) 등을 파악하여 수세 단위인 결부(結負)를 산출하고, 기진(起陳), 전주(田主) 그리고 전토의 위치 등을 국가의 공적인 통치체제로 조사하여 양안(量案)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¹⁸² 결국 실제의 토지 상황을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었다. 양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찌하여 농정개선론의 성격을 지닐 수 있었을까. 바로 부자들의 토지가 수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결부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특히 토지의 비옥도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등을 바로 잡는 국가적인 사업이 바로 양전(量田)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양전이 제대로 수행되어야만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었다.

양전 작업으로 획득할 수 있는 토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로 전정의 문란이나 부세의 불균을 가져오는 요인이었고, 또한 그러한 전정 문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였다. 기진(起陳, 기정전인지 진전인지) 여부, 전품(田品) 등제(等第), 결부수, 전주 등의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전토의 기진 여부를 잘못 파악하거나 또는 누락시키는 경우 전정의 문란과 부세의 불균을 가져올 수 있었다. 양전사목에서 양전 과정의 주요한 탈법행위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기진을 문란하게 조사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전품 등제가 현실의 토품(土品)과 유리되었을 때 비옥도를 제대로 반

182) 金容燮, 「量案의 研究」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Ⅰ』, 一朝閣, 1987; 「朝鮮後期 身分構成的 變動과 農地所有」 『東方學志』 82, 1993; 吳仁澤, 「17·18세기 量田事業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李榮薰, 「量案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韓國史에 있어서 近代로의 移行과 特質」 『經濟史學』 21, 1996.

영하지 못하여 부세가 문란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전품 등제는 양전과정에서 전주가 가장 관심을 부여하는 요소였다. 실제의 절대적인 토지의 면적을 재는 작업 보다는 전품이 매겨지고 이것을 통해서 결부수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품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앞서 18세기 초반 경자양전(庚子量田)이 수행되는 과정이나, 경자양전을 수행하기 위한 양전절목에서도 전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셋째 결부수는 실제의 부세수취에서 기준이 되는 수치인데, 전품의 허위 뿐만 아니라 해부(解負)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실제 매겨져야할 결부수와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즉시 부세 수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네 번째로 전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의 여부도 부세의 불균과 연결된 문제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진, 전품등제, 결부수, 전주의 요소가 양전과 전정문란·부세불균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¹⁸³

위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잘 감안하여 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양전시행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적인 양전은 굉장한 물력과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이었다. 양전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주요하게 제기되는 반대론의 논거는 바로 재원 마련의 문제와 양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령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찾고 있었다. 따라서 양전시행론이 가장 현실적인 농정(農政)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남원 유학 허질(許耄)의 주장을 살펴보면, 명나라

183) 金容燮, 「量案의 研究」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Ⅰ』, 一朝閣, 1987; 이영훈, 제1장 양안 상의 주 규정과 주명 기재방식의 추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 오인택, 「경자양전의 시행 조직과 양안의 기재 형식」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00.

의 어린도(魚鱗圖)에 의거하여 전지(田地)를 개량(改量)하고 결부(結負) 숫자의 다과(多寡)를 상중하(上中下) 3품(品)에 따라 하는 것을 정식(正式)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허질의 주장에 대해서 비변사는 개량(改量)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이지만 중외(中外)의 의논이 매번 인재(人才)가 옛날과 같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였다. 또한 양전이 반드시 좋은 것이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개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 제도(諸道)와 각읍(各邑)으로 말하면 동일한 토품(土品)이지만 동서의 면(面)에 따라 경중(輕重)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옛날의 양전이 실재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강령을 바로잡으면 사소한 득실은 그 대동(大同)의 인정(仁政)에 해로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천하 만사(萬事)는 또한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추수가 풍년이 드는 것을 기다려 개량(改量)과 사진(査陳)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단연코 시행해야 할 것이다.¹⁸⁴

허질의 양전시행론이 농정개선 나아가 농촌사회를 안정화시키는 효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허질의 주장에 대하여 비변사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풍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¹⁸⁵ 그리고 같은 남원 유학인 장윤도 “호남(湖南)에서 개량(改量)하는 것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 전지(田地) 파악이 불균등하고 부세(賦稅)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⁶

184) 『承政院日記』 1803책,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95-618가) 備邊司 南原 幼學 許奎 冊子 草記.

185)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2쪽-293쪽) 備局 以南原幼學 許顥 疏陳農務諸條 回啓.

186) 『承政院日記』 1803책,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95-619가) 備邊司 南原 幼學 張火允의 冊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 남원 지역의 농업에서 절실히 필요한 조정의 대책 가운데 하나가 개량(改量)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조는 허질과 허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남원지역에서 양전을 시험삼아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조는 비변사에 대하여 “양전의 일은 약간 풍년을 기다려 결의(決意)하여 시험할 것이니 묘당[비변사]에서는 다시금 임시로 제척해야 할 것, 즉 그 때가 되면 놓치지 말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⁸⁷ 또한 전주 유학 이장렬(李章烈)이 올린 응지농서에서도 ‘평전결(平田結)’이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정(仁政)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바인 바로 양전(量田), 즉 개량(改量)을 가리키는 것이었다.¹⁸⁸ 이장렬의 양전 주장에 대해서 비변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령이 재량껏 거행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대응방식을 검토 보고하였다.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농촌의 변화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대상은 바로 장시(場市)라고 할 수 있다. 농촌사회의 경제적 변화, 상품화폐 경제의 변동을 바로 장시의 움직임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 15세기 후반에 전라도 지역에서 등장한 장시는 당초 장문(場門)이라고 불렸다. 성종초인 1470년대에 정부는 전라도 무안(務安) 등 여러 읍에서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이 장문을 열어 민에게 해를 끼친다는 보고를 수령하였다.¹⁸⁹ 무안·나주 등 물산이 풍부한 여러 읍에서 대홍황을 맞게 되자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장문을 열었고, 그리하여 여기에 의뢰하여 흉년을 넘겼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구황의 차원

草記함: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1~292면) 備局 以南原幼學 張火允 疏陳農務諸條 回啓. 남원 유학 장운의 응지농서에 대한 비변사의 회답도 “改量하는 政은 이미 다른 곳에서 陳疏하여 覆啓하기를 풍년을 기다려 거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187)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3쪽~295쪽) 備局 以南原 幼學 許奎 疏陳 農務諸條 回啓.

188)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5쪽) 全州 幼學 李章烈 所陳 農書.

189) 『成宗實錄』 권20, 成宗 3년 7월 壬戌.

에서라도 장시의 개설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¹⁹⁰⁾

16세기 이후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정기시장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장시는 농촌사회의 구성원인 농민과 수공업자 등 직접생산자의 소상품생산과 생산자 사이의 직접적인 교역에 기반한 농촌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¹⁹¹⁾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월 3차례씩 출시하는 곳도 있어서 10일장도 생겨나고 있었고 나아가 5일마다 개시하는 5일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장시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장시의 확산 추세는 17세기를 경과하면서 읍치(邑治) 중심의 국한된 범위를 벗어나 심지어 산골짜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¹⁹²⁾ 장시의 확산은 기본적으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농촌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즉 대동법의 실시에 따른 공인(貢人)의 활동, 부역노동에서 급가고립제로의 변화,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이라는 현상들이 결국 농촌사회를 상품화폐경제의 범위로 수용함으로써 장시의 발달이 나타난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장시는 수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시 내부와 장시 사이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장시 개시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장시권과 장시망이 형성되었다. 또한 18세기 후반에는 지역적 상품유통의 거점인 대장(大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 주부군현의 읍치를 중심으로 성립된 장시들이 주변 지역에서 성립된 장시들과 연계되면서 도내의 유통망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연해지역과 도서지역의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전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해로교통망이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팔도의 연해안 지역의 포

190) 『成宗實錄』 권27, 成宗 4년 2월 壬申.

191) 李景植, 「16세기 場市の 成立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한국사연구회, 1987.

192) 韓相權,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韓國史論』 7, 서울대 국사학과, 1981, 181-182쪽.

구(浦口)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해로유통권이 성립되었다. 각 지역의 포구는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는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포구는 대포구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군현 단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구가 중심포구가 되어, 어염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던 주위의 중소포구를 연결하면서 대포구를 중심으로 한 포구시장권이 형성되었다.

장시의 전국적 확대·발전 양상은 전국적 유통망이 조직되면서 각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여러 지역의 특산물이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대개 면포·마포·어염·미곡 등의 거래가 많았다. 이밖에도 담배와 인삼 채소 등도 다수의 장시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장시의 발달 양상은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발달과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인문적, 경제적 요소 등 여러가지 특색 가운데 특히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발전 요인이라는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강조점을 부여하는 인식을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초반에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이 지은 『택리지(擇里志)』는 팔역지(八域誌), 팔역가거지(八域可居誌) 등의 다른 제목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요건 등의 측면에서 살기에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살피는 책이었다. 「복거총론(卜居總論)」을 보면 다음과 같이 생리(生利) 즉 경제적 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무릇 자리잡아 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地理)가 최고이고, 생리(生利)가 다음이다. 그 다음이 인심(人心)이며 그 다음이 산수(山水)이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좋은 땅이 아니다. 지리가 비록 빼어나다고 하더라도 생리가 결핍된다면 오래도록 살 수 없다. 생리가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지리가 나쁘다면 역시 오래도록 살 수 없을 것이다. 지리와 생리는 모두 좋지만 인심이 맑지 않다

면 반드시 후회하는 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완상할만한 곳이 없다면 성정(性情)을 닦을 수 없을 것이다.¹⁹³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중환은 살만한 곳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리 뿐만 아니라 생리 즉 경제적 이로우미라는 요소를 중시하였다. 이중환이 주장한 생리(生利)는 곧 물품이 교역되기에 적당한 곳,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유리한 곳 그리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곧 장시가 개설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농업생산을 통해서 교역 유통의 거래 물품으로 산출되고 있던 농산물과 바다 어업과 하천 어업 등을 통해서 어민들이 쏟아내고 있던 해산물 등이 바로 장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던 포구(浦口)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시, 포구가 자리한 곳이 이중환이 거론한 지리와 생리를 갖춘 복거지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시기 전북을 포함하여 호남 지역의 장시 현황을 『임원경제지』 「예규지」로 살펴볼 수 있다. 「예규지」에 보이는 19세기 전반 개시일별 장시수 분포 상황을 정리하면 대체로 개시일의 분포가 고르게 설정되어 있었다.¹⁹⁴

193) 이중환(李重煥, 1690~1752), 『擇里志』, 卜居總論; 大抵 卜居之地 地理爲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地理雖佳 生利乏 則不能居久 生利雖好 地理惡 則亦不能久居 地理及生利俱好 而人心不淑 則必有悔吝 近處無山水可賞處 无以陶瀉性情.

194) 徐有渠, 『林園經濟志』 「倪圭志」 권4 貨殖 八域場市.

〈표 3〉 19세기 전반 개시일별(開市日別) 시장수분포상황(『임원경제지』「예규지」)

매월개시일 지역	대도시 (월 12회)	오 일 시 (월 6회)						십일시 (월 3회)	십오일시 (월 2회)	합 계
		1,6일	2,7일	3,8일	4,9일	5,10일	소 계			
경 기	-	21	21	21	18	12	93	-	-	93
호 서	3	33	29	32	29	23	146	6	3	158
호 남	1	33	28	44	31	23	159	28	-	188
영 남	-	42	46	47	61	47	243	25	-	268
관 동	-	42	12	10	9	8	51	-	-	51
해 서	-	21	16	14	17	11	79	24	6	109
관 서	-	22	18	5	21	16	92	42	9	143
관 북	-	11	9	7	7	8	42	-	-	42
합 계	4	195	179	190	193	148	148	125	18	1,053

위의 <표 3>에서 호남으로 기입된 지역의 오일장 개시일을 살펴보면 1, 6일에서 5,10일 사이의 다섯 가지 개시일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크게 편중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호남 지역의 5일장의 개시일 159회 가운데 1·6일 33회, 2·7일 28회, 3·8일 44회, 4·9일 31회, 5·10일 23회로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19세기 초반 장시의 숫자와 거래물품의 특색을 살펴보면 호남 지역의 경우 장시의 거래물품 가운데 곡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⁹⁵

〈표 4〉 19세기 초반 장시의 숫자와 거래물품이 기재된 장시 숫자

	경기	호서	호남	영남	관동	해서	관서	관북	계
장시수 (가)	92 34	157 59	187 55	269 72	51 26	109 23	145 42	42 14	1,052 325
쌀	34	21	55	70	11	23	42	4	260
콩	6	14	24	65	-	22	39	5	175
보리	6	6	18	55	-	22	39	11	157

195) 徐有渠, 『林園經濟志』 「倪圭志」 권4 貨殖 八域場市.

(가)항은 장시 가운데 거래물품이 기록된 장시수인데 호남 지역 55곳 모두 쌀이 주요한 거래물품으로 조사되었다. 쌀, 콩, 보리와 같은 곡물은 일반적인 시기의 거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특히 진휼이 필요한 시기와 지역에서 곡물이 적절하게 장시에서 교역이 진행되는 것은 지역민의 생존과 자활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19세기 초반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서유구는 진휼의 시행에 있어서 초기(抄飢), 즉 기민(飢民)을 온전하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그래서 나이, 구수, 호수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진휼에 활용할 곡물은 공곡(公穀)이나 수령의 자비곡(自備穀), 나아가 민간의 기부, 즉 권분(勸分)에 의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 나아가 진휼곡을 각읍 사이에 이송하는 방식도 규정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전라도 연안과 장시에서 경기와 호서의 상인들이 곡물을 매점(買占)하거나 익기도 전에 사들이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도 실행하였다.¹⁹⁶

18세기 중반 이후의 경우 농촌에서 장시와 상공업도시로 성장한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곡물유통이 수행되고 있었다. 농촌에서 부호(富豪)와 부민(富民)은 향촌장시보다는 전국적인 곡물시장을 상대로 곡물을 상품화하고 있던 반면에, 소농·빈농층들은 향촌장시를 상대로 하여 궁박판매를 하고 있었다. 장시의 발달은 일정 정도 농민층의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지만, 상업도시와 상업중심지의 형성으로 출현한 원격지 곡물상인에 의해 곡물이 매점됨으로써 소상품생산자적 농민층 성장의 저지조건이 나타난 것이었다.¹⁹⁷

196) 서유구는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완영일록』이라는 사환일기를 남겼다. 『완영일록』 등에 보이는 서유구의 진휼책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손병규, 「徐有渠의 賑恤政策『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197) 李世永, 「18-9세기 穀物市場의 形成과 流通構造의 變動」, 『韓國史論』 9, 서울대 국사학과, 1985, 243쪽.

장시의 수적인 증가와 함께 시장내부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초기에는 거리와 개시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되던 장시들이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인접한 장시들 사이에서 흡수, 통합, 개시일 변경, 다른 곳으로 이전 등 장시내부의 질적인 변화로 나타났다.¹⁹⁸ 이와같은 상황에서 상권(商權)을 둘러싸고 지역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북 지역의 주부군현에서 장시가 개설되어 농촌시장으로 기능하는 상황 속에서 장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전북지역의 장시에 출몰하면서 농본(農本)의 이념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무리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농촌 지역에 농민들에게 먹을 것을 빼앗는 자들로 지목되었다.

남원 전 현감 장현경(張顯慶)이 올린 응지농서에서 농촌 장시에서 이득을 피하는 무리로 거사(居士)를 지목하고 있었다. 거사라는 자들이 산대놀이, 꼭두각시 놀음을 실행하면서 농촌지역의 장시에서 이득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근심 거리의 하나로 지적한 것이었다. 장현경은 이들을 귀농시키는 것이 요긴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장현경의 주장을 살펴보면 거사로 불리는 무리를 ‘산봉(山棚) 외뢰(僂儻)’의 무리로 표현하였다. 산봉(山棚)은 산대 잡극 연행 시에 진설(陳設)된 나무와 비단으로 장식한 임시 무대를 가리키는 데,¹⁹⁹ 이는 곧 꼭두각시놀이와 가면극을 벌이는 공간이었다.²⁰⁰ 외뢰(僂儻)는 바로 이러한 임시무대에서 꼭두각시 무대를 연행하는 무리들이었다. 장현경은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장시에서 구경꾼들에게 징색(徵索)하는데 심지어

198) 한상권,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사론』 7, 서울대 국사학과, 1981.

199) 『太宗實錄』 2권, 太宗 1년 9월 1일 丁亥 (1-212).

200) 『英祖實錄』 41권, 英祖 12년 2월 22일 丙戌 (42-494); 先是, 湖儒疏有言泮人設棚於聖廟近地, 而齋儒往觀云. 至是, 左議政金在魯請罪齋儒, 館官拿處, 堂上推考竝從之.

도둑질까지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령들이 엄금시켜야 할 대상이고 관찰 사도 규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¹ 이와 같이 장시에 모여서 활동하는 무리는 상인, 행상, 지역 주민 이외에 연행이나 도적질로 이득을 꾀하는 일당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정도를 전라북도 장시에서 벌어지는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라북도의 농업 변동과 관련하여 농업생산 이외의 생산활동 특히 광업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 전라북도의 농촌에서도 서북지역의 채금(採金), 은광과 금광의 개발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사금(砂金)을 캐내는 작업이 번지면서 이를 도금(淘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당시의 광업 변동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관영광업을 위주로 한 종래 정책의 본격적인 변화는 17세기 중엽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전개와 함께 비롯되었다. 1651년(효종 2) 이후 조선정부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관채(官採)를 지양하여 은광업에 부상대고를 유치하고 민인으로 하여금 채은(採銀)토록 허가해서 일정한 세은(脫銀)을 징수하는 형태로 광업정책을 전환하였다. 이것이 바로 설점수세제(設店收脫制)이다. 그런데 설점수세 업무는 호조에서 파견한 별장이 대행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서울에 거주하는 부상대고들로서 권세가의 사인(私人)들이었다.²⁰² 1702년에 60~70개소에 달했던 은점은 1740년(영조 16) 이후 경품설점법(經票設店法)의 규정으로 은광업의 신설이 억제되고 수세실적이 부진한 은점은 혁파되어 갔다.

한편 1782년에 평안도 성천·자산 사금광이 잠채에 의해 개발된 것을 계기로 광산에서 자생(資生)하려는 자들은 금광으로 몰려들었다. 1784년(정조 8)

201)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南原 前 縣監 張顯慶 所陳 農書.

202) 임병훈, 「조선후기 광업경영의 발전-금·은광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3 한국사연구회, 1981.

경에는 청천강 남북 각 읍으로 금광 개발이 확대되어 갔다. 18세기 말에는 함경도 황해도·경기도·강원도·전라도까지 나아가 19세기 초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금광이 개발되었다.²⁰³

18세기말 전라도 등지에서도 금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금광은 사금광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남원 유학 장윤의 응지농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윤은 농본을 도외시하고 나아가 농본을 해치는 무리로 무주(茂朱), 순천(順天)의 사이에 도금(淘金)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있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농사짓는 농부가 더욱 적어지게 될 것이니 일절 금단(禁斷)하면 유식(遊食)하는 무리들이 자연히 농사짓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채금(採金)하는 것의 금지가 법전에 본래 엄한 것이고, 농사를 해치는 일에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별히 엄히 금지하라는 뜻을 도신(道臣)에게 신칙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복계하고 있었다.²⁰⁴ 이와 같이 농촌의 변화 양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광업에 종사하는 부류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장윤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같은 남원 지역의 유학 허질은 농본을 강조하고 상업을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허질의 주장에 대해서 비변사는 상업을 억제하는 것이 결국 농상(農商)을 모두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반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허질의 주장과 비변사의 반론은 18세기 후반 조선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⁵

203) 유승주, 「18세기말 19세기초 '計士'制下の 沙金鑛 개발과 사금광의 '物主'制성립」 『韓國史學論業』, 일조각, 1992.

204)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1쪽-292쪽) 備局 以南原幼學 張윤(火+允) 疏陳農務諸條 回啓.

205) 『承政院日記』 1803책,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95-6187) 備邊司 南原 幼學 許鑒 冊子 草記. 비변사는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農商을 모두 병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에 大小 民人들이 朝家の 農을 貴히 여기고 商은 賤하게 여기는 本意을 잘 알게 되는 것

2. 농민층의 처지와 대응

임진왜란을 경과한 후 17세기 토지소유권 발달과 양반층 농업생산에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16세기 후반 이후 지주들은 대토지 농업경영을 농장적인 요소를 띤 노비제적인 경영에서 병작제로 전환하게 되었다.²⁰⁶ 17세기에 들어서면 사적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양안(量案)이라는 국가의 토지장부를 통해서 일부 보장되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매매에 관련된 문서, 즉 토지문기(土地文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확보되었다. 매도자가 발급하여 매수자가 보관하고 여기에 증인(證人)의 서명이 들어있는 토지문기는 앞서 발행한 것이 연이어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의 토지소유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토지문기를 망실(亡失)되거나 소실(燒失)되는 등 사라졌을 때 관에서 입안(立案)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럴 경우 양안(量案) 기록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방증자료로 이용되었다.

사적소유권의 발달 정도는 양안에 기재된 소유권을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하는가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 개인의 소유권을 제약하는 요소는 왕토사상(王土思想)과 수조권의 존재였으며, 그러한 요소에서 근대의 배타적 소유권과 차이가 있었다. 물론 조선 전 시기에 개인의 소유권 역시 점차 발전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토지소유권자에 대해 ‘기경자위주(起耕者爲主)’라는 용어를 통해 ‘영작기물(永作己物)’할 수 있도록 양전법(量田法)에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 17~18세기 갑술양전(1634년)과 경자양전(1720년) 과정에서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차원의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중엽에는 소유권자를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진전되었

을 기다려 점차習俗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206) 李景植, 「16세기 地主層의 動向」, 『歷史教育』 19, 역사교육학회, 1976, 139~183쪽.

다. 17세기 이후의 토지소유권 발달은 곧 조선국가의 사적소유에 대한 확인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별 소유권자의 권리를 확정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광무양안 단계의 관계(官契) 발급을 통해 완성된 사적소유권의 국가적 법인 과정은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토지소유권의 성장과정을 양안(量案)에 표시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기재 방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17세기 이후 조선후기 지주제 경영의 양상은 토지소유권의 성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을까. 먼저 17세기 이후의 지주 경영은 토지 소유와 경영의 분화과정을 통해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토지소유의 집적 양상, 즉 대토지 소유의 증대 경향에 따라 거주지 중심으로 토지를 집중시키면서 임노동을 고용하여 지주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지주경영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집적을 확산시키면서 중간관리인을 두어 병작(并作)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는 방식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두 가지 지주경영은 신분제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작인농민과의 계약관계가 발달하는 가운데 경영합리화나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성 제고를 꾀했다. 전자의 경우가 자작지(自作地)를 중심으로 소유지를 집중시키고 나아가 집약적 경영을 행하는 형태로서의 경영지주(經營地主) 경영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면(面)단위를 넘어 군현·도 단위의 병작지(並作地) 확대를 통해 부재지주(不在地主) 경영을 행하는 경우였다.²⁰⁷

16~17세기의 양반관료층을 중심으로 한 상인층 및 부농층의 토지점병에 의하여 지주전호제라는 형태의 병작제의 발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전기에 존재하였던 농장제·자영농제·병작제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조선후기에는 병작제가 점차 우세하여졌다. 이러한 토지소유집중에 의한 병작제의 발전

207) 李世永, 「18·19세기 兩班士豪의 地主經營」, 『韓國文化』 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5.

과정 중에서 농민층의 입장에서는 자작농민이 전호농민으로 사회적 처지의 변화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기가 내려올수록 더욱 심화되어, 18세기 말에는 “호남의 백성들을 1백호(戶)로 친다면, 그중 남에게 땅을 빌려주어 조(租)를 받는 자는 5호에 불과하고, 자기 땅을 자경하는 자는 25호 정도이며, 남의 땅을 경작하여 조를 바치는 자는 70호에 달한다.”라거나,²⁰⁸ 심지어는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경(自耕)하는 자는 열에 한두 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지주전호제가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되었다.²⁰⁹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병작제에 바탕을 둔 지주전호제가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되었다. 병작제가 지배적인 형태가 되면서 토지의 소유자인 지주와 직접 생산자인 전호 사이의 부담형태는 경제외적 강제가 약화되면서 경제적 관계가 일반화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한편 개간과정에서 경작권이 분할되면서 소유권으로 성장하면서 그에 따라 경작자인 전호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어가면서 전호의 부담이 가벼워지기도 하였다. 즉, 양반과 토호층이 진전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개간에 필요한 물력과 노력을 제공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이 노력을 제공하면서 개간 토지의 소유권이 분할되거나, 경작권이 농민에게 분급되면서 지주소작관계가 변화한 것이었다. 농민이 일정한 권리를 가진 토지는 도지권화(賭地權化)해가면서 농민적 토지소유권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전호의 지주에 대한 부담은 약화되었다.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수취체제의 변화 및 농민층 분화현상의 진전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특히 신분제의 동요를 매개로 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지주전호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조선후기에 지주제가 일반화되어가면서 차츰 지주제 내에서 소유자와 경작

208) 丁若鏞, 「擬嚴禁湖南諸邑佃夫輪租之俗筭子」, 『여유당전서』1, 권9.

209) 朴趾源, 「限民名田議」, 『燕巖集』 권16.

자의 부담형태에 변화가 일어났고, 직접생산자인 전호의 지주에 대한 부담액이 점차 감소하여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나아가 19세기에는 지주제가 약화되어가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당시의 지주제하에서 직접생산자의 소작료형태가 반분타작(半分打作)하는 타조법(打租法, 定率地代)이 일반적이었는데, 18세기 이후부터 한전을 선두로 하여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전까지도 점차 도조법(賭租法, 定額地代)으로 이행되었다. 그 도조법의 액수는 보통 수확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대 징수 방법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 저절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지주와 전호의 역학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었다. 전호가 납부하는 소작료인 지대의 형태는 지주가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전호의 항조운동과 당시의 사회여건 속에서 지주는 도조법으로 지대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에 전반적으로 지대납부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이행되었는데, 도조법으로의 전환은 부농에게는 경작을 통한 성장조건이 되었다. 도조법이 타조법에 비해 소작료율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작자가 농업경영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도조법하의 농민은 타조법하의 농민보다 인격상 나은 처지에 있었다. 타조법이 수확의 절반을 수취하는 소작제이므로 지주들이 수확량의 많고 적음에 직접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자연히 씨뿌리기부터 가을걷이·마당질에 이르기까지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도조법은 정액지대이므로 그해의 수확에 관계없이 계약된 일정액을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지주는 소작인의 농업경영에 대해서 타조법의 경우처럼 크게 간섭할 필요가 없었다.

나아가 도조법은 18세기 말 이후 금납제(金納制)로 진전되면서 조선사회의 지대납부방식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궁방(宮房)에서 점차 금납으로 소작료를 징수하거나, 정부에서도 조세를 금납으로 징수하였

다.²¹⁰ 나아가 민전에서도 금납으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금납제 시행은 직접생산자인 부농의 자기경영을 강화해주는 것이며,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부농(富農)은 곡물을 판매하여 화폐를 마련해야 했고, 그 가운데서 상품화폐경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다. 또한 상업적 농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즉, 금납제로의 지대납부는 농업경영이 경작강제의 약화, 상업적 농업의 진전, 농민층 분해의 촉진과 부농의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시대의 소농(小農) 경영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소유라는 토지소유관계의 전개 속에서 소규모 개별적 생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²¹¹ 17세기 이후에는 이전부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소농경영과 지주제 생산방식의 공존 상황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양자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지주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17세기 후반을 경계로 소농경영의 안정적인 전개가 어려워지고 지주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물론 조선정부의 소농(小農) 안정을 위한 농정책은 계속 실행되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휼책도 시행되었지만, 농업생산의 주된 흐름이 지주제로 모아졌다. 반면 지주가 아닌 부농(富農)이 크게 증대하였다. 지주와 부농 중심의 농업생산이란 변화는 신분제의 변동과 맞물린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사회의 특징적인 존재였던 소농경영은 점차 농촌사회의 양극화 과정에서 자리를 잃어갔다.

조선후기 소농 경영의 규모는 대체로 50부(負)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결부법(結負法)에서 1결의 실제 면적은 대략 3,000평에서 12,000평 정도였다. 이렇게 커다란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

210) 이영호, 「18, 19세기 지대형태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 『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211) 金泰永, 「조선전기 소농민경영의 추이」, 『朝鮮前期土地制度史研究』, 知識産業社, 1983, 145쪽.

유는 농경지의 1결의 실제면적이 전답의 비옥도에 따라 정해진 전품(田品) 1등~6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등전 1결에 비해서 6등전 1결은 실제면적에서 4배나 넓었다. 따라서 50부(負)는 대략 1,500평에서 6,000평 정도의 농경지로 볼 수 있다.

소농경영은 가족 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두어 세금을 내면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습에서 수백 결에 달하는 토지에 많은 노비 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던가, 많은 작인에게 토지를 나누어줄 수 있었던 대토지소유자에 비해서 소농의 토지소유면적 규모는 너무나 보잘 것 없었다.

토지소유면적의 측면뿐만 아니라 소농의 신분적인 지위도 조선사회의 하층 신분에 속하였다. 양반층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크기가 평민층(平民層)이나 천민층(賤民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보다 평균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신분관계의 우월성이 토지소유의 크기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농지소유 규모에 따른 계층구분을 위하여 1결 이상 농지를 소유한 부농층, 50부에서 1결 사이의 농지를 소유한 중농층, 50부 이하 농지를 가진 소농층, 25부 이하의 농지를 가진 빈농층으로 세분할 수 있다.²¹²

조선후기 소농경영의 성격을 규정한 요건으로 농지 소유의 영세화 경향을 들 수 있다. 농지소유의 영세화는 농업생산력 증진에 따르는 농민층의 향상과 낙오, 인구의 증가로 인한 농민층의 자연적 분화(分化), 토호층의 토지집적과 그에 따르는 무세(無勢) 농민의 영세화, 부세의 가중으로 인한 소농층의 심한 궁핍화, 농민층의 분호(分戶) 별산(別産)의 전개, 천변지이·기아·질병 등으로 인한 농민층의 토지상실과 이농(離農) 등의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

212) 丁若鏞은 25負 정도의 농지가 小農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하였다. 金容燮, 『量案의 研究』,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一潮閣, 1970, 146쪽.

한 농민층의 영세화는 다른 측면에서 영세화된 농민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끌어모은, 또는 영세농으로 전락하는 농민의 토지를 점탈한 부농층(富農層) 내지는 호농층(豪農層)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부농층, 토호층이 광대한 농토를 독점적으로 집적해 갔다는 점이 또한 소농층의 영세화를 초래한 커다란 이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소농경영이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은 개간(開墾)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농민들 사이에 경작지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당시의 농업 여건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번답(反畓)의 증대이다. 번답의 증대는 한편으로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이양법의 보급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소농이 처해 있었던 농업경영 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논으로 만들기 어려운 가장 열악한 처지의 전토마저 논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한 열악한 조건의 번답(反畓)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소농민층이 농업 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토지가 척박하고 수리조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이양법의 보급과 번답(反畓)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소농민에게 그다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²¹³

조선 후기에 전반적으로 지대납부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이행되었는데, 도조법으로의 전환은 전호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전호의 소작지 확보에도 영향을 주었다. 도조법이 타조법에 비해 소작료율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작자가 농업경영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도조법하의 농민은 타조법하의 농민보다 인격상 나은 처지에

213) 『量田謄錄』 庚子 慶尙左道 均田使 量田私節目.

있었다. 타조법이 수확의 절반을 수취하는 소작제이므로 지주들이 수확량의 많고 적음에 직접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씨뿌리기부터 가을걷이·마당질에 이르기까지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도조법은 정액지대이므로 그해의 수확에 관계없이 계약된 일정액을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지주는 소작인의 농업경영에 대해서 타조법의 경우처럼 크게 간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²¹⁴ 나아가 18세기 말 이후 금납제(金納制)로 진전되면서 궁방(宮房)에서 점차 금납으로 소작료를 징수하거나, 정부에서도 조세를 금납으로 징수하였다.²¹⁵ 나아가 민전에서도 금납으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지대수취방식의 변화는 조선후기 전호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의 증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 후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성행하였던 화리(花利, 禾利)라는 이름의 도지권(賭地權)이다. 화리는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전라북도 전주(全州)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작관행의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²¹⁶ 화리 사례를 통해 토지에 대한 농민적 권리의 증대 양상을 살펴본다.

전라도 전주지방에서는 소작인이 자기의 소작지에 대하여 지주의 토지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지주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 권리

214) 賭租法으로의 전환은 부농에게는 성장조건이 되었지만, 빈농에게는 오히려 성장조건이 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을 잘하거나 풍년이 들 경우에는 정액을 납부하는 도조법이 유리하였으나, 흉년이 들 경우에는 오히려 打租法이 훨씬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도조법으로 행하는 지역에서 흉년이 들 경우에는 전호가 지대감하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도조법은 농민충분해를 촉진시키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영호, 「18·19세기 지대형태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215) 이영호, 「18·19세기 지대형태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 방기중, 「17·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4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4 ; 방기중, 「조선 후기 균역세에 있어서 금납조세의 전개」, 『동방학지』 50,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216) 조선총독부, 『소작관행조사』, 전주 화리.

를 매매할 수 있는 전답이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소작 관행을 이 지방에서는 화리라고 부르고, 이러한 소작 관행이 행해지는 토지를 화리부답(禾利付畓)이라 불렀으며, 그 권리의 매매를 화리매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화리부답에서 소작인은 그 화리의 권리를 지주의 승낙 없이 자유롭게 매매·양도·저당·상속할 수 있었으며, 또 다른 소작인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었다. 화리의 매매와 상속은 매우 성행하였으며, 화리의 권리를 매수한 자는 물론 이를 지주에게 대항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작인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새로운 지주에게 대항시킬 수 있었다. 지주가 소작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작인의 동의를 구하여 그 권리를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화리의 권리가 형성된 토지에서의 소작료의 징수방법은 정조법(定租法)에 의거하였으며, 그 소작료율은 보통 소작에서의 소작료율보다 훨씬 저렴하였고, 풍흉(豐凶)에 관계 없이 지주와 소작인 양측이 서로 소작료의 증감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화리 소작은 조선 후기에는 이 지방 외에도 전라도의 전지역과 경상도의 역둔토(驛屯土)에서 행해졌으며, 소작지 면적도 광대하고 소작인수도 상당수에 달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이것이 급격히 소멸되어 1920년경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전라도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속에서도 화리(花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연대가 불확실하지만 ‘임진년에 남원부에 사는 오현의(吳顯義)라는 사람이 관(官)에 올린 소지(所志)²¹⁷를 보면 토지 매매에 화리가 개입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남원 수지방(水旨坊)에 거주하는 오현의는 입마전(立馬田)을 경작하면서 전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읍내에 사는 오 아무개가 그 입

217) 「壬辰年에 南原府에 사는 吳顯義가 官에 올린 所志」,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고유번호 고08572.

마전을 사들여 화리(花利)를 행사하고 있으니 이를 하소연하는 내용의 소지를 올렸다. 여러 입마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는데 읍내에 사는 오 아무개는 입마전을 사서 누군가 소작인에서 화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래 입마전을 경작하고 있던 오현의가 자신의 경작권이 상실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이다. 전후 관련 문서가 보이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화리(花利)라는 경작에 관련된 권리가 애초의 경작권자, 토지를 매입한 사람, 새롭게 화리를 부여받은 또는 획득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즉 화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토지매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작인이 확보하는 경작에 관한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였던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1900년 전주부 조촌면에 사는 백선명(白善明)이라는 사람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²¹⁸에 등장하는 화리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백선명은 전라북도 전주부 조촌면(助村面) 반룡(盤龍)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박인행이라는 사람에게 800여 냇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1천 냇이 넘는 상태였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박인행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백선명은 그의 전답과 농우 및 가대까지 잡고 장기(掌記)를 받아놓았으나, 약속된 날짜로부터 3일 전에 박인행이 야반 도주하였다. 백선명은 이 장기를 첨부하여 관에 올리면서 이에 의거하여 관에서

218) 「1900년에 全州府 助村面に 사는 白善明이 全州府使에 올린 所志」, 광무4년(庚子), 전주역사 박물관 소장, 고유번호 jhm00383; 府居。白善明 右謹陳所志事。挽近人心。雖曰不淑。豈有如助村面盤龍居 朴仁幸爲名人乎。今春夏間。渠之作農次。役糧數百兩請債。故依言施給。而又於七月良中。以乾魚商次。更給六百兩。則似可見利云。故亦依施給。八月良中。又有物貨價五十餘兩。合本八百餘兩。并利爲千有餘兩矣。過限不報。故去月二十二日。招來督錢。則渠之所作禾利田番六十餘斗落與農牛家堡汴(什)物。盡爲成掌記執數。限今十二日準報之意。成票矣。不意今初九日。乘夜逃走。故緣由。票紙帖連。仰訴叅商教是後。依掌記自官推給之地。祝手行下向教是事 官司主 處分 庚子。十一月日 官(押) (題辭) 當者逃躲。徵之何處。當 申飭該洞事 十二日 刑吏。

추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소지를 올린 것이었다.

백선명이 박인행에게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掌記, 물목을 적어놓은 글)에 집어넣은 대상 가운데 ‘그(박인행)이 짓고 있는 화리(禾利) 전답(田畓) 60여 두락(斗落)’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외에 농우(農牛), 가대(家垓), 집물(什物) 등도 같이 잡아놓고 있었다.²¹⁹ 이 문서에 등장하는 화리(禾利)는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전당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리가 붙은 전답의 규모는 그냥 1,2두락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60여 두락에 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백선명은 박인행에게 1,000여 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의 변제를 위해 잡아놓은 것이 바로 화리가 붙은 전답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화리가 붙은 전답이란 그 작자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후기 이래로 조선(한국)의 농민들이 토지에 대하여 중대시커온 경작권, 소작권 등 농민적 권리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적 토지지배권들은 대한제국시기의 광무사검, 광무양전,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등의 근대적 농업체제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러한 농민적 토지지배력의 상실은 대한제국의 주권상실, 한국의 일본 식민지화와 더불어 마무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더욱 과격하고 강제적이며 복원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은 근세적 농업체제가 1880년대 이후 근대적 농업체제로의 변화 시도, 1905년 이후 식민지 근대적 농업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단계적 변동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 나갔다.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변화, 농업생산의 변동 과정 속에서 농민들은 다각도

219) 「1900년에 全州府 助村面에 사는 白善明이 全州府使에 올린 所志」, 광무4년(庚子),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고유번호 jhm00383; 渠之所作禾利田畓六十餘斗落與農牛家垓什(什)物。盡爲成掌記執數.

로 농업생산, 농업경영의 안정성 나아가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농우(農牛)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전북 농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우(農牛)의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농우(農牛)의 일부를 도살하여 이를 통해 이득을 꾀하기도 하였다.

순장 정도성은 농우(農牛)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금(牛禁)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금이 실시된 이후에 소들이 크게 번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가작통(五家作統)의 규율을 활용하여 농민들이 서로 농우를 빌려서 경작하는 데 활용하면 농우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도 때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농우가 늙어서 경작에 활용할 수 없을 경우 계속 보유하는 것은 이로우이 없으니 각 읍에서 낙인(烙印)하여 개비(改備)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농가의 긴요한 쓰임에 보탬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²⁰ 정도성의 지적하는 농우를 관리하는 방법은 건장한 소를 기경에 활용하고, 늙은 소를 도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금에 대한 강조는 남원 유학 허호(許顥)가 올린 농서에도 보인다. 허호가 주장한 내용의 요점은 『일성록』에 보이는데, 그에 따르면, “10년을 한정하여 도살(屠殺)을 금지하면 소의 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고 기경을 때맞춰 할 수 있다.”²²¹는 내용이었다. 농우의 도살 금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비변사는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 법전에 이미 있다는 점, 그리고 근래에 제도(諸道)에 자못 엄격하게 신칙하여 수년 사이에 송아지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변했다는 점을 지목하였다.²²² 비변사의 주장은 법전에 들어있는 도살 금지를 실제

220) 『日省錄』 正祖 22년 12월 29일 戊午 (27권 275면) ; 命巡將鄭道星左相招見草記.

221)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2쪽-293쪽) 備局 以南原幼學 許顥 疏陳農務諸條 回啓.

222)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2쪽-293쪽) 備局 以南原幼學 許顥 疏陳農務諸條 回啓.

경외(京外)에서 법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잘 이행하면 농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남원 유학 허호의 주장이 일부만 남아 있지만, 농우(農牛) 도살의 금지를 주장하면서 특히 소 매매가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소값을 언급하고 있는 배경 속에는 소의 사육과 소의 도살이 병행되는 당시 상황이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호의 주장과 비변사의 보고에 대해서 정조는 농우를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부터 금석(金石)의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근래에 폐단을 이야기한 여러 조항을 보니 도살 금지를 그 도(道)에 따라 하지 않아 잘못된 단서를 주는 것이 많은 것도 지적하면서, 암행어사(繡衣)가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폐단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²²³

농우 확보 문제에 대하여 전주 유학 이여효(李汝孝)는 군현에서 농우를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파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여효의 응지농서는 『일성록』에 수록된 내용 자체가 매우 빈약한데, 비변사가 검토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일부 농서 내용을 알 수 있다. 비변사는 이여효의 농서에 대하여 점후(占候), 간전(墾田), 관개(灌溉), 수확(收穫) 등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내용은 고인(古人)의 서적(書籍)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어서 따로 보고할 만한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 뒤에 관우(官牛) 즉 군현에 농우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여효의 농서에) “관(官)에 농우(農牛)를 두어 경종(耕種) 작업을 돕고, 민(民)이 세조(稅租)를 납부하면 관가에서 보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외면으로 살펴보면 이런 방안이 아래 백성들을 돕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우(官牛)의 폐단은

223)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2쪽-293쪽) 備局 以南原幼學 許顥 疏陳農務諸條 回啓.

몇 년 지나지 않아 목판으로 찍어내는 것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관장(官長) 노릇하는 사람이 만약 능히 절용(節用) 애민(愛民)하여 민호(民戶)에게 <농우를> 사서 보급하여 백성들이 큰 재산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진실로 좋을 것이다. 소를 보급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결토 논할 만한 것이 아니니 <그의 주장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²²⁴

이여효가 주장한 군현에서 세금을 거둬 관우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필연적으로 관장 즉 군현 수령과 군현의 향리들이 농간, 작폐 등에 간여하는 폐단이 나타날 우려가 분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변사는 이여효의 농서 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그 대신 군현의 수령이 농우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안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었다. 비변사의 보고에 대해서 정조의 별다른 언급이 보이지 않지만, 농우의 보급, 관리를 군현에서 담당하는 것은 당시 이미 민간에서 소 사육을 전업적으로 실행하는 상황에서 커다란 개혁 방책으로 수용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의 존재가 기경(起耕) 작업에서 관건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사의 하나가 소의 사육과 번식 문제였다. 소를 사육하고 번식하는 방책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소를 도살하는 것을 막는 금령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했다. 이른바 우금(牛禁)이라는 금제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강조사항이었다. 우금은 조정의 중요한 정사의 하나였는데, 1788년 『정조실록』에서 우금과 연관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해 10월 29일에 북로(北路)의 폐막(弊瘼)에 대해서 올린 박상춘(朴尙春)의 상소 내용을 영의정 김치인 등을 소견하여 의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박상춘의 상소가 주요하게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연해 지역에서 해마다 소를 도살하고 있으니 도

224)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4쪽) 全州 幼學 李汝孝 所陳 農書.

금(屠禁)을 신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박상춘의 상소 내용에 대하여 김치인은 법금(法禁)을 엄하게 펼치고 오래도록 시행하더라도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우축(牛畜)이 크게 번식되게 하여야 한다고 건의한다. 그리하여 이성원(李性源), 채제공(蔡濟恭) 등의 의견을 모아 결국 “도신(道臣)에게 엄칙(嚴飭)하여 법금(犯禁)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²⁵

우금(牛禁)이라는 소 도살 금지조치가 실행되고 있었지만, 우육(牛肉)의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민(官民)이 소 도살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제사(祭祀), 연음(燕飲), 양로(養老), 공병(供病) 등의 쓰임에 소고기만 이용되고 있어서, 우금을 범하는 자들이 매우 많아서 법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18세기 후반에 소를 사육하는 것이 경우(耕牛)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용(食用)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우금(牛禁)이 기본적으로 조정의 원칙이었지만 실재는 많은 소들이 도살되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당시 소의 도살이 문제가 되고 우금(牛禁)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달리 살펴보면 목우(牧牛)가 성행하여 소의 숫자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박도흙의 응지농서에서 “오가(五家)에서 소를 맡아 키우는 일”을 주장한 것에 대한 비변사의 검토 보고 내용에서 우축(牛畜)의 번식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있던 상정을 짐작할 수 있다. 비변사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5) 『正祖實錄』 권26, 正祖 12년 10월 29일 丁巳 (46책 11쪽); 丁巳, 召見大臣備堂及曾經北伯人. 上謂領議政金致仁等曰, 朴尙春疏陳北路弊癘, 頗有意見. 卿等須逐條稟處...致仁曰, 其一, 沿海漁箭里社歲時之屠殺牛畜, 千百殆盡, 價寡者無以辦得, 申明屠禁事也. 屠牛之禁, 年前行會, 何等申嚴, 而況本道開市之需, 牛畜爲多, 地又磽确, 倍用牛力, 屠禁之蕩然, 誠亦寒心. 令道臣, 申嚴法禁, 持久勿弛, 俾有牛畜蕃息之效. 性源曰, 法禁本嚴, 只在營邑, 按而行之. 濟恭曰, 外方牛禁之蕩然, 良可寒心. 嚴飭道臣, 俾無犯禁之弊. 可之.

(박도흙의 농서에서) “오가(五家)에 목우(牧牛)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비변사 검토 보고) 근래 우축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엄정하여 이로 인해 국내 우축의 번식이 예년에 비할 정도가 아닌 상황이다. 우금(牛禁)을 오래도록 실행하면 장차 집집마다 가득차고, 마을마다 넘쳐날 것이니 어찌 오가(五家)에 한 마리 소를 기르는 것에 그칠 것인가.²²⁶

이와 같이 비변사는 현재의 우금을 그대로 잘 실행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변사는 박도흙이 면리(面里)에서 소의 색깔을 조사하여 군현에 아뢰고, 표를 받아 백성들이 서로 매매하게 하고 춘추에 점검하여 소의 건강을 논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올렸다. 박도흙의 방안이 너무나 번쇄하고 백성들을 어지럽히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남원 전 현감 장현경은 농우(農牛)를 확보하고 기경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수적이고 향촌사회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민인(民人)에게 엄히 신칙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우(耜牛, 農牛)를 빌려주고, 그 세(稅, 빌린 대가)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을 장차 행해야 할 방책으로 제시하였다. 장현경의 주장에 대해서 비변사는 검토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현경이) 세(稅)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용임(傭賃, 일당)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사우(耜牛)를 빌려주고 그 용(傭, 대가)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비록 혹 향리(鄉里)의 후풍(厚風)은 될지라도 이것을 만약 법규를 정해서 힘써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다른 폐단이 생길 것이다. 비단 이익이 없을 뿐 아니

226)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06쪽) 古阜 幼學 朴道欽 所陳 農書.

라 도리어 농사를 망치게 할 것이다.²²⁷

비변사는 농우(農牛)를 농업생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농촌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농우를 빌려 쓰는 대가의 수수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장현경이 농촌사회 내부에서의 상부상조에 의거하여 농우를 수급하는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농우를 빌려쓰고 금품을 제공하는 상황과 맞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었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소를 사육하는 것이 경우(耕牛)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용(食用)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우금(牛禁)이 기본적으로 조정의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소들이 도살되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금(牛禁)이라는 소 도살 금지조치가 실행되고 있었지만, 우육(牛肉)의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민(官民)이 소 도살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제사(祭祀), 연음(燕飲), 양로(養老), 공병(供病) 등의 쓰임에 소고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특히 소비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던 한성부, 서울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았다.²²⁸ 이와 같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의 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농우(農牛), 육우(肉牛) 등의 개념 속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변화 상황에 대해서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와 이에 대한 비변사의 검토 보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수행하는 농업생산이 원활하

227)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南原 前 縣監 張顯慶 所陳 農書冊子.

228) 엄정섭,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의 농촌생활과 농법·농업생산의 특색- 이옥(李錡)의 『백운필(白雲筆)』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50,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이옥에 따르면 지방에서 사육한 육우(肉牛)를 매입하는 상인은 대개의 경우 경상(京商), 즉 서울 장사치였다고 한다.

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농업체제를 구상하였고, 그러한 구상의 한 부분은 바로 농업행정에 대한 것이었다. 농촌에서 농업생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권장하고 감독하는 것은 주부군현의 수령(守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직무였다. 하지만 농촌의 수많은 마을을 모두 상세하게 장악하여, 농형이나 우택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여기에 면리(面里)의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이 일정 정도 권농과 감농을 담당하였지만, 농업생산과 관련된 직무를 전담할 새로운 직임(職任), 직책(職責)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등장하였다.

남원 전 현감 장현경의 응지농서에 “전준(田畧, 권농관 성격의 직임)을 선택 임명하여 근실한지 태만한지 살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일이다”라는 조목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바로 마을의 농관(農官)을 택정하여 권농, 감농을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²⁹ 장현경의 주장과 유사하게 순장 정도성도 마을 주민이 힘써 경작하게 하는 책무를 면임(面任)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⁰

장현경은 ‘농관(農官)’의 임명과 더불어 권농의 한 방법으로 종곡(種穀)의 분급(分給)을 주목하였다. 그는 환곡을 운용하면서 가을에 돌려받을 때 종자로 활용할 것을 따로 보관하고 이때 호명(戶名)을 기록해두었다가 봄에 분급할 때 호명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수행해

229)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南原 前 縣監 張顯慶 所陳 農書. 장현경에 주장에 대하여 비변사는 “이미 面任을 置하였고 또한 里正이 있으니 이것은 足히 勸農의 任이다. 躬行하고 勸課하는 것은 곧 守令의 責이니 何必 名目을 다로 세워 田畧을 刪出하고 일 써 村閭의 酒食을 소비하고 指揮의 多門을 열 것인가.”라고 설명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230)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9일 戊午 (95-603가) 巡將 鄭道星 上疏. 정도성은 이와 더불어 어사를 때때로 파견하여 농사를 근실하게 짓도록 독려하고 遊食하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야 할 책무를 짊어진 것이 바로 농관, 수령으로 이어지는 권농 직무 담당의 선 후 체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현경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비변사의 검토보고에서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종곡의 분급은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만 수령이 일 처리를 중요롭게 하는가 여부에 달린 것이다. 호명(戶名)을 각각 적어두었다가 해당 호에 나중에 돌려서 분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식으로 삼아 군현마다 강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대개 종자를 잘 살펴서 좋은 종곡을 가려서 보관하다가 각별히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것은 권농(勸農)에서 먼저 해야 할 임무이고 수령이 담당할 커다란 직무이다. 이것을 대충 소홀하게 한다면 (수령의) 다스림의 잘못됨을 알 수 있다. 제도(諸道)에 분부하여 해마다 담당해야 할 과업으로 삼고 수령의 치적을 평가하는 하나의 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²³¹

장현경이 주장한 종곡 분급 관련 부분이 결국 수령의 권농(勸農)에 연관된 것이었고, 이는 수령의 지시를 받아 마을에서 농사 관련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설정된 '농관'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남원 유학 장윤이 올린 응지농서에서 남원 지역의 농력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조는 장윤이 제시한 남원 지역의 작업 일정에 대하여 적시(適時)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 김매기와 타작 등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작업을 하나 하나 조목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해당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따로 보개(保介, 농사일을 감독하는 직임)로 임명하여 가을 수확한 후에 근실함과 태

231)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2쪽) 南原 前 縣監 張顯慶 所陳한 農書.

만함을 헤아려 감영에게 보고한 다음 장계로 보고하라는 일로 관찰사에게 분부(分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²³² 정조의 지시 내용은 장운을 지역적인 농정을 수행하는 이른바 ‘보개(保介)’라는 직임에 임명하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실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응지농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수령, 면임, 이임, 그리고 몇몇 권농관만으로 농정의 큰 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당시 국왕, 관료, 그리고 지배층 및 일반 민인들까지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원 유학 노익원(盧翼遠)도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직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익원은 수차를 제조하는 것, 제당(堤塘)을 축조하는 일, 부종(付種) 즉 직파를 권장하는 일 이렇게 3가지를 무농(務農)의 커다란 요체라고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읍(邑)에 농사(農師)를 두어 만약 농사를 일으키고 농사를 권장하는 실효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때 농사의 임용은 지벌(地閥)에 구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점으로 지목하였다.²³³ 노익원의 주장은 농업기술의 보전과 전승을 농사를 통해서 군현마다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현경, 장운, 노익원 세 명의 남원 출신 응지인은 공통적으로 농정의 커다란 줄기, 농업기술의 전승, 농본의 권장을 담당할 새로운 직임의 선발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농업기술의 개발과 전승, 농본의 이념과 실천, 농정의 구체적인 실시 등 농업의 여러 부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리잡아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232) 『日省錄』 正祖 23년 1월 8일 丁卯 (영인본 27권 291쪽-292쪽) 備局 以南原幼學 張雲(火+尤) 疏陳農務諸條 回啓.

233) 『日省錄』 正祖 23년 5월 22일 己卯 (27권 913쪽) 南原 幼學 盧翼遠 所陳 農書冊子.

수 있다. 사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박지원,²³⁴ 우하영²³⁵, 서유구²³⁶ 등 실학자로 불리는 인물들도 ‘농관(農官)’의 성격에 해당하는 직임을 통해 농업의 진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바로 전라북도 지역의 응지농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단면을 잘 살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34) 朴趾源이 『課農小抄』에서 주장한 法田은 경작법의 연구와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로운 農學을 크게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설치할 것을 제안한 관서였다. 朴趾源, 『課農小抄』, 「田制」.

235) 禹夏永은 『千一錄』에서 당시의 농업현실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농정개선 방안으로 농관(農官) 설치를 주장하였다. 禹夏永, 「田制 附農政」 『千一錄』 2輯(『農書』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80쪽).

236) 徐有渠가 『擬上經界策』에서 제안한 京師屯田은 農法, 水利法 등을 시험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도판도로 보급하는 곳으로 ‘조선농사시험장’으로 볼 수 있다. 徐有渠, 『楓石全集』, 「金華知非集」 卷第十一, 策, 擬上經界策.

VI

결론: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성격



결론으로 전북 지역 농업의 성격을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전북 지역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 농업기술 즉 농법의 특색, 개간·간척과 수리시설의 축조 운영에서 보이는 특징, 전북 지역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 등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북 지역 농업의 특색을 보다 뚜렷하게 살피기 위해 전체적으로 18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조선 팔도의 농업의 특색, 농법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양자를 구체적으로 대비하면서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성격을 시론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우선 조선시대에 팔도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별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농업지대의 구별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남부지방에 위치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하삼도(下三道)라 하여 따로 떼어놓았고, 그 다음 경기, 강원도, 황해도를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하였으며, 평안도와 함경도를 양서(兩西)지방이라 병칭하였다. 이와 같이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하삼도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적당하여 가장 농사짓기에 적당하였고, 경기, 강원, 황해도가 그 다음이었으며, 양서지역은 토지가 척박하고 기후가 한랭하여 농사짓기에 적당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지역은 논농사, 즉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지역의 농민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경기도와 황해도지역의 농민은 논농사와 밭농사의 비중을 비슷하게 고려하는 형편이었다.

조선시대에 전반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이러한 농업지대 구분은 전체적으로 각 지역 농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농업의 실태, 농촌의 실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농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또는 그보다 약간 넓은 소규모 지역 단위였다. 왜냐하면 마을이라는 미소한 지역 단위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각각 소기후 특성, 토양 구획의 특징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넓은 의미의 지역 구분이기는 하지만 강원도는 동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여러 개의 고개, 즉 영(嶺)을 통해서 왕래할 수밖에 없었고, 고개를 기준으로 양쪽지역의 기후적인 특성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영서(嶺西)지역과 영동(嶺東)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한북(漢北), 한남(漢南)으로 구분되었고, 이러한 소규모 지역 구분은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적인 경제 중심지가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하게 나타났다. 전라도의 경우에도 좌도와 우도, 그리고 해안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해안지역도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구별되었다. 경상도의 경우 낙동강(洛東江)의 이동(以東)지역과 이서(以西)지역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안동, 상주, 진주 등 주요 중심지와 연결시켜 파악하였다. 이러한 넓은 지역 특성과 구분은 기본적으로는 커다란 자연환경, 산천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이었지만, 마을 단위의 지역 특성은 토질이나, 수리조건 등과 같은 세부적인 농업환경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농업과 농업의 지역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먼저 전 순릉(純陵) 참봉(參奉) 이상희(李尙熙)는 조선의 산천이 강해(江海), 산협(山峽) 등으로 구별되고, 비옥함과 척박함이 섞여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 적당한 작물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각 지역마다 기후와 토양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적당한 재배작물이 다르고 이를 곧 지역마다 농업의 성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²³⁷ 또한 후릉령(厚陵令) 김응린(金應麟)도 농업의 지역적 성격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김응린은 자신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늙었으며, 말하는 바와 힘쓰는 것이 농사라고 강조하면서도 70년 동안 농업에 익숙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농리(農理)라고 토로하였다. 그는 특히 팔도에서 토성이 서로

237)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3일 壬子 (95-582가) 前 參奉 李尙熙 上疏.

달라서 농법이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였다.²³⁸ 마찬가지로 언양(彦陽) 유학 전만성(全萬誠)도 조선이 남북이 수천리여서 풍기(風氣)가 동일하지 않고 토성(土性)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³⁹

응지인 신계(新溪) 생원(生員) 정석유(鄭錫猷)는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의 비율로 찾은 팔도의 전토를 설명하면서 결국 지리(地利)와 전토(田土)의 차이에 따라 농기(農器)까지 차이가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 다음의 <표 5>가 정석유가 설명한 팔도의 지리(地利)와 전토(田土)의 특성이다.²⁴⁰

<표 5> 18세기 후반 신계 생원 정석유가 정리한 팔도의 지리와 전토의 특성

팔도	지리(地利)	수전(水田)	한전(旱田)	비고
기전(畿甸)	토양이 척박하고 산이 험준하며, 바닷가는 소금기가 많고 산 근처는 사석(沙石)이 많다.	2만여	2만여	수전과 한전이 절반이다.
해서(海西)		1만여	1만 8천여	수전과 한전이 절반이다.
호서(湖西)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며, 산과 바다의 영향이 반반이다.	6만여	6만여	수전과 한전이 절반이다.
호남(湖南)		12만여	6만여	수전 중심이다.
영남(嶺南)		9만여	9만 9천여	수전과 한전이 절반이다.
관동(關東)	산이 막혀 있고 물이 깊으며 토양이 척박하고 들판이 습지이다.	3천여	6천여	한전 중심이다.
관북(關北)	산이 많고 바다의 영향이 크며, 토양이 척박하고 바람이 차갑다.	4천여	4만여	한전 중심이다.
관서(關西)	서북쪽으로 산이 자리하고 동남쪽으로 들판이 열려 있다.	1만여	7만여	한전 중심이다.

238)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19일 丁丑 (95-765다) 厚陵 令 金應麟 上疏.

239)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19일 丁丑 (95-768가) 彦陽 幼學 全萬誠 上疏.

240)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9일 戊午 (95-605다) 新溪 生員 鄭錫猷 上疏.

정석유는 삼남 지역이 수전 중심지역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호남의 수전이 도내의 전토 결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잘 요약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관동, 관서, 관북 지역이 한전 중심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세 지역 모두 지리적인 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²⁴¹ 정석유가 정리한 내용 가운데 호남 지역의 경우 영남이나 호서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수전 중심 즉 벼농사 중심 지역이라는 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전라북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전 중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내륙의 산악이 많은 군현과 연해의 바다에 접해 있는 군현 사이에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경기 화성(華城)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과 농촌 개혁 방안을 제시한 우하영(禹夏永)은 토성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구별하면서 이를 통한 농업지대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성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호남이고, 그 다음이 호서라고 비정되었다.²⁴² 구체적으로 토성의 측면에서 각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호남→호서→영남·해서→서관→기전→관동·관북의 순서라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우하영은 토성의 비옥도와 더불어 인력(人力)의 근면(勤勉)이라는 조건을 결부시켜 지역 농업의 특색을 특화시키고 있었다. 우하영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호(兩湖)는 그 비옥한 것 때문에 수확하는 것이 저절로 많고 물산이 풍부하다. 영남은 토질이 단단하고 비옥하여 힘써 농사지으면 수확이 많고 풍성해진다. 서관은 비옥함은 비록 해서에 미치지 못하지만 힘써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성함이 많다. 해서는 비옥함은 비록 서관보다 뛰어나지만 근실히 농사짓는 것이 부

241) 『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29일 戊午 (95-605다) 新溪 生員 鄭錫猷 上疏.

242) 禹夏永, 『水原儒生禹夏永經綸』(규장각 奎3202) 務本.

족하기 때문에 빈한함이 많다. 관동은 토양이 척박하여 오직 산경(山耕, 火耕)에 힘쓰고, 그 획득하는 바가 많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토성과 민속이 각자 같지 않은 것이니 또한 (조정과 수령이) 권과(勸課)하는 것이 좋은 방도를 얻은 이후에라야 아마도 먹을 것이 어려운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²⁴³

우하영이 토성과 민속을 중심으로 팔도의 농업지대를 구분한 결과 호남 지역은 비옥할 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다. 지역적인 농업의 특색을 살피는 데에 가장 주요한 요소가 토질이었다. 전라 남도 담양에 거주하면서 응지농서를 올린 남극曄(南極曄)은 토질에 따라서 농지를 구분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지가 지닌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높고 낮은(高卑) 또는 마르고 습한(燥濕) 성질에 따라서 흙의 색깔과 점착도 등이 달라지는데, 이 가운데 낮고 습한 흙이 수전에 적당한 것이라고 정리하여 제시하였다.²⁴⁴

자연환경의 지역적 특색에 대한 파악은 바람의 영향에 대한 지역적 차별까지 도출해내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관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응지인 김응린(金應麟)은 응지농서에서 동풍(東風)과 서풍(西風)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선호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응린에 따르면 관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풍을 좋아하고, 서풍을 두려워하는데, 이와 반대로 관서 지역의 거주민은 서풍을 좋아하고, 동풍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바람에 대한 기호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람이 바다를 건너면 따뜻하게 되고, 산을 넘으면 차가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관북과 관서의 지역민이 바다를 건너

243) 禹夏永, 『水原儒生禹夏永經綸』(규장각奎3202) 務本.

244) 南極曄, 『愛景堂遺稿』卷之五, 農書簿冊 (향토문화연구자료 22집, 전라남도)

오는 바람을 좋아하고 산을 넘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²⁴⁵

위에서 살펴본 토성, 민속, 바람 등의 자연적인 인문적인 요인에 따라 18세기 후반 구체적인 지역적 농업의 특색을 특히 소에 쟁기를 매어 전토를 기경(起耕)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에 쟁기를 매어 전토를 갈아주는 기경은 무엇보다 토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 응지농서를 올린 김양직은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기경 방식의 차이를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김양직이 영동, 호남, 경기 세 지역을 대상으로 토질 특성과 기경 방식의 차이를 연결시켜 설명하였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⁴⁶

<표 6> 18세기 후반 김양직이 정리한 영동, 호남, 경기 지역의 기경 방식의 특색

지역	소 숫자	매는 법	기경 깊이	토질 특성	비고
영동	두 마리	횡가(橫駕)	깊게 갈기	토양이 두텁고 지력이 깊이 갖추어짐	깊게 갈면 지력을 얻음
호남	두 마리	연가(連駕)	깊게 갈기	토양이 두텁고 지력이 건실함	깊게 갈면 지력을 얻음
경기	한 마리	단가(單駕)	얕게 갈기	산천이 얇게 드러나 있고, 지기도 겉으로 떠있음	깊게 갈면 지력이 흩어져 불리함

김양직의 지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호남 지역의 경우 두 마리의 소를 앞뒤로 연결하여 깊게 가는 방식으로 기경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경작업을 수행하여 지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양직은 영동이나 경기에 비하여 호남의 기경방법이 가장 정밀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245)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19일 丁丑 (95-765다) 厚陵 令 金應麟 上疏.

246) 『承政院日記』 1806책, 正祖 23년 3월 28일 丙戌 (95-793나) 司直 金養直 上疏

18세기 후반이라는 시기를 특정하여 전라북도 지역 농업의 특색은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기술의 지역적 성격, 개간·간척과 수리시설의 특징, 농촌과 농민의 변화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본문에서 정리한 구체적인 전라북도 지역 농업의 특징을 요약 제시하는 것에 앞서서 전라북도 지역의 농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인상을 살피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북 지역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단상 자체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전북 농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지역이 ‘곡창(穀倉)’, ‘곡향(穀鄉)’으로 지목되는 것은 일반적인 한국의 상식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 연해 지역의 간척과 경관변화를 살핀 연구성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예나 지금이나 ‘곡창’으로 소개된다. 그만큼 평야가 넓고 미곡의 산출량이 많았다는 뜻이다. 지금은 달리 불리지만 한때 만경강과 동진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전북의 들녘을 호남평야(湖南平野)라 했던 것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감안한 명명이었다. 물론 지역민들은 김제들, 만경들, 김제만경들로 평야를 지칭하며, 외지인들에게도 김제만경(김만경)평야는 그리 생소한 이름이 아니었다. 1949년 3월 어느 날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이용우(李容雨)는 업무 차 김제를 방문하면서 짧은 기행문을 남겼다.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며 목격한 드넓은 평야를 그는 ‘옥야천리(沃野千里)’와 ‘백야천리(白野千里)’로 묘사하면서, 무주, 진안, 장수 등 산간지대 한개 군의 미곡생산량이 김제군 한개 면에서 생산한 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해하기 쉽게 대비를 시켰다(李容雨1949, 68-69). 전라북도의 간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들 평야를 먼저 거론하는 이유는 해안에 연한 일부 구역이 간척사업의 결과로 얻어졌기 때문이다. 언뜻 이 지역이 전국 유수의 곡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들린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그간의 내력을 더듬어보면 그것은 바다를 상대로 한 부단한 싸움에서 얻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천 하류부의 저습지와 하구 일대의 간석지를 농경지로 개발하기 위한 오랜 노력 끝에 오늘의 김제들과 만경들이 생겨났다는 말이다.²⁴⁷

전북지역이라는 지역 단위는 19세기 최말기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분리된 것이었다. 행정적인 지역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을 하나의 농업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은 기후, 토양이라는 지리적인 조건에 근거하고 여기에 전북 지역이 갖고 사회경제적인 조건, 생태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전북 지역의 농업이 동질적인 하나의 특성만을 갖춘 농업지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 특색을 지닌 세부 지구가 위도상으로 연속된 전북 농업지대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라북도라는 농업지대를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역사적으로 생활한 주민들의 농업생산 등 경제활동이 상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위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호남평야로 대표되는 평야지대인 서부와 무진장으로 대표되는 산악지대로 크게 구분된다. 평야지대와 산악지대의 점이지대라 할 수 있는 남원, 순창, 임실, 완주 등도 위의 두 지대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전북의 지역농업이라고 할 때 전북이라는 단위가 20세기에 만들어진 행정단위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북 지역의 농업지대를 크게 서해안에 접해 있고 예전에 전라우도에 속해 있던 벼농사 중심 지역과 내륙 산간 지역에 해당하고 예전에 전라좌도로 지목되었던 밭농사 중심지역으

247) 홍금수, 2008 『전북의 민속문화 5: 전라북도 연해지역의 간척과 경관변화』, 국립민속박물관, 6쪽.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 전라북도 지역의 농업의 특색 가운데 먼저 농업기술의 지역적 성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벼농사에서 이앙법이 지배적인 경종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16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벼 경종법의 하나인 이앙법(移秧法)의 보급이 삼남(三南)으로 특히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던 양상이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 이앙법의 보급, 확산과 관련된 논의에서 제기되는, 관개 가능 여부, 토성과의 연관성, 재해 발생과 부세 감면 부여 여부 등 다양한 논점이 남김 없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 지역은 벼농사 중심의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앙법과 직파법에 관련된 특유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적합한 경종법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발작물과 상품작물의 재배에 보이는 특징을 응지농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16세기를 거쳐 17·18세기를 경과하면 한전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방식은 15세기 조선전기에는 1년1작이 지배적이던 단계에서 1년2작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16세기 후반을 거쳐 17세기에 이르면 근경(根耕)의 일반적인 채택, 간종(間種)의 확대 적용, 맥전(麥田)에서의 조세법과 한전에 급재를 하지 않는 국가정책의 원칙 등을 배경으로 1년2작식, 즉 한전이모작이 보편화하였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발작물 재배법의 특색이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별히 구전법과 같은 오래전부터 노동력을 절약하고 시비 효과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경종법이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사업적 작물로서 특히 상품화가 활발하게 진전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쌀이었다. 미곡이 주된 상품생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반도지풍(飯稻之風)’, 즉 쌀밥 먹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면서 다른 잡곡에 비해 고가(高價)로 거래될 수 있었던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간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시기에는 보다 나은 시세를 따라 다른 군현(郡縣)의 장시로

진출하여 팔기도 하고, 서울 근교에서는 서울까지 올라와서 매매하기도 하였다. 호남에서 개설된 다수의 장사에서 미곡이 주요한 거래물품으로 교역되고 있었다.

상품 작물의 재배 양상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남초 즉 담배 재배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남초 재배지역이 증대하여 산지가 형성되었고, 남초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남초 매매가 증대되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남초 재배의 상황을 살펴보면 18세기 중엽에 진안(鎭安) 장수(長水) 등이 연초 산지로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남초재배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비옥한 농지가 급속하게 연전(煙田)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지만, 남초재배의 확산은 상업적 농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남초의 유행과 경작의 확대라는 조선 농업의 변동 양상이 전라북도 지역 18세기 농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바로 남초가 농민들에게 수익을 전해줄 수 있는 상품작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 전북 지역의 개간·간척의 전개 양상은 살펴보면 우선 하천 인근 지역의 개간작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김만경평야를 중심으로 농지개간과 정을 추적할 수 있다. 해안 지역 간척의 양상은 내륙 지역의 개간에 비해 훨씬 투입 재원의 크기가 막대하였다. 19세기 간척을 통해 조성된 부안 삼간평(三千坪) 용동궁 장토의 간척 사례를 통해서 그 이전 시기의 해안 간척지 간척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궁방이라는 당시의 최고 권세를 누리던 기관에서 소유하던 간척지의 조성 과정이 특색있게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지역 개간 간척의 주요한 전개양상이 18세기 후반의 경우 진전(陳田) 개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었다. 전라북도 지역 응지인들이 응지농서에서 진전 개간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진전(陳田)을 기경(起耕)하였을 경우 정조의 개간 장려책을 확실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진전을 환기(還起)하였을 경우 3년 동안 집복(執卜) 즉 전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 시기에서도 조선사회의 농업생산에 활용된 수리 이용은 제언(堤堰) 천방(川防) 등과 같은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전북 지역 수리 시설 현황에 대해서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천방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긴밀하게 부여하고 있었다. 진흥을 시행하는 군현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동원하여 제언(堤堰)을 수축하는 방안을 보다 발전시켜 경내의 부호를 동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라도 지역에서 수차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을 폐사군 지역으로 보내서 수차를 제조하고 이를 통해 수차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18세기 후반 김제 벽골제의 제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던 지적을 찾아볼 수 있다. 벽골제가 커다란 잠재적 효용가치를 지닌 제언으로 관심 대상이 되곤 하였지만, 실제 무너진 제방을 쌓는 공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8세기 후반 정조는 농촌사회 구조의 변화 양상과 농민층의 대응과 분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국가적인 지배통제 양상 속에 자리매김하려고 하였다. 전북 지역에서 응지농서를 작성한 응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농촌(農村), 농민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이를 응지농서에 포함시켰다. 그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농촌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부세(賦稅), 특히 전세(田稅) 문제의 해결방안이었다. 특히 궁방의 무토면세전에서 도장(導掌)들이 과도하게 수세하고 있는 폐단의 해결을 조정에 촉구하였다.

전라북도 응지인의 응지농서에서 농촌지역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야 할 일로 지목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양전(量田)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호남(湖南)에서 개량(改量)하는 것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 전지(田地) 파악이 불균등하고 부세(賦稅)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지(田地)를 개량(改量)하고

결부(結負) 숫자의 다과(多寡)를 상중하(上中下) 3품(品)에 따라 하는 것을 정식(正式)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변사는 수령이 재량껏 개량(改量)을 거행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대응방식을 검토 보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전북 지역의 주부군현에서 장시가 개설되어 농촌시장으로 기능하는 상황 속에서 장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전북 지역의 장시에 출몰하면서 농본(農本)의 이념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무리들이 존재하였다. 장시에 모여서 활동하는 무리는 상인, 행상, 지역 주민 이외에 연행이나 도적질로 이득을 꾀하는 일당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정도를 전라북도 장시에서 벌어지는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농업 변동과 관련하여 농업생산 이외의 생산활동 특히 광업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 전라북도의 농촌에서도 서북지역의 채금(採金), 은광과 금광의 개발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전반적으로 지대납부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이행되었는데, 도조법으로의 전환은 전호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전호의 소작지 확보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대수취방식의 변화는 조선 후기 전호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의 증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 후기에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성행하였던 화리(花利, 禾利)라는 이름의 도지권(賭地權)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로 조선(한국)의 농민들이 토지에 대하여 중대시케온 경작권, 소작권 등 농민적 권리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적 토지지배권들은 대한제국시기의 광무사검, 광무양전,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등의 근대적 농업체제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사라져 버렸는데, 그 대표적인 농민적 토지 지배권이 바로 전주 지역에서 뚜렷하게 자리잡았던 화리였다.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변화, 농업생산의 변동 과정 속에서 농민들은 다각도로 농업생산, 농업경영의 안정성 나아가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농우(農牛)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전북 농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우(農牛)의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농우(農牛)의 일부를 도살하여 이를 통해 이득을 꾀하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소를 사육하는 것이 경우(耕牛)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용(食用)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제사(祭祀), 연음(燕飮), 양로(養老), 공병(供病) 등의 쓰임에 소고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특히 소비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던 한성부, 서울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의 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농우(農牛), 육우(肉牛) 등의 개념 속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변화 상황에 대해서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와 이에 대한 비변사의 검토 보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조선 국가에서 수행하는 농정의 커다란 줄기, 농업기술의 전승, 농본의 권장을 담당한 새로운 직임의 선발을 전북 지역 응지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응지농서의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농업기술의 개발과 전승, 농본의 이념과 실천, 농정의 구체적인 실시 등 농업의 여러 부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리잡아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박지원, 우하영, 서유구 등 실학자로 불리는 인물들도 ‘농관(農官)’의 성격에 해당하는 직임을 통해 농업의 진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바로 전라북도 지역의 응지농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단면을 잘 살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농업의 역사적 실상을 복원하여 재구성하였다. 전북 지역 농업의 현황을 18세기 후반 정조에게 응지인이 올린 응지농서(應旨農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

나아가 전라도 지역의 농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정리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숙제도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

- 『일성록(日省錄)』 1799년 1월 8일: 南原 幼學 張炆, 許顯, 許奎
- 『일성록(日省錄)』 1799년 5월 22일: 淳昌 幼學 申輔權, 全州 幼學 金尙直, 李汝孝, 宋相彙, 李章烈, 鎭安 幼學 朴宗赫, 古阜 幼學 朴道欽, 茂長 幼學 康錫運, 康洵, 南原 前 縣監 張顯慶, 幼學 盧翼遠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99년(正祖 23년) 3월 30일: 咸悅 縣監 李寅采
- 『풍석전집(楓石全集)』 3冊 金華知非集 권1: 徐有渠 淳昌郡守應旨疏
- 『옹수재유고(慵睡齋遺稿)』: 康洵 進御農書(『일성록』 1799년 5월 22일의 자료와 동일인)

[저서]

- 權赫在, 2003 『제3판 韓國地理 總論』, 法文社.
- 김성우, 2012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 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 金榮鎭, 李殷雄, 2000 『조선시대농업과학기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 文중앙, 2000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集文堂.
- 박영한·오상학, 2004 『조선시대 간척지 개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안승택, 2009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 신구문화사.
- 葉正섭, 2002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 葉正섭, 2014 『18~19세기 농정책의 시행과 농업개혁론』, 태학사.
- 이해준, 1996 『조선시대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 洪금수, 2008 『전북의 민속문화 5: 전라북도 연해지역의 간척과 경관변화』, 국립민속박물관.

[논문]

- 宮嶋博史, 1983 「李朝後期の 農業水利」 『東洋史研究』 41卷 4號.
- 김상태, 2005 「조선 전기의 水利施設과 벼농사」 『국사관논총』 106집, 국사편찬위원회.
- 김용섭, 1968 「十八世紀 農村知識人の 農業觀 - 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韓國史研究』 12, 한국사연구회.
- 김재호, 2000 「경북 산간농촌지역 수리체계의 특수성」 『실천민속학연구』 2, 실천민속학회.
- 남궁봉, 1999 「한국의 농지개간과정 - 김만경평야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손병규, 2003 「徐有渠의 賑恤政策 - 『完營日錄』, 『華營日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송찬섭, 1985 「17·18세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경영형태」 『한국사론』 12, 서울대 국사학과.
- 양선아, 2012 「19세기 공방의 간척-부안 삼간평 용동궁 장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염정섭, 2000 「조선시대 農書 편찬과 農法의 발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염정섭, 2018 「18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 儒生 南極曄의 農法 정리와 農政 개혁책」 『歷史學研究』 69집, 호남사학회.
- 오영교, 1999 「18세기 原州牧의 행정체계와 향촌조직의 운영」 『韓國史研究』 104, 한국사연구회.
- 吳仁澤, 1991 「18,19세기 水稻 乾播法의 지역적 전개와 農法의 성격」, 『釜山史學』 20, 부산사학회.
- 이경식, 1991 「조선초기의 農地開墾과 大農經營」 『한국사연구』 61·62, 한국사연구회(『조선 전기 토지제도사연구Ⅱ』 지식산업사, 1998 재수록).
- 이선아, 소순열, 2006 「조선시대(朝鮮時代) 농서(農書)의 지역적(地域的) 간행(刊行)의 의의(意義) -“농사직설(農事直說)”과 “농가집성(農家集成)”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5-1, 한국 농업사학회.
- 이영학, 1997 「대한제국의 경제정책」 『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 李榮薰, 1992 「제3장 馬九坪水利組合의 展開過程과 歷史的 意義」 『近代 朝鮮 水利組合研究』, 一潮閣.
- 이정수, 2011, 「조선후기 盧尙樞家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29, 부경역사연구소.
- 이태진, 1983 「16세기 沿海地域의 堰田 개발-威臣政治의 經濟的 背景 一端」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1986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재수록).
- 이해준, 2001 「한국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체제 시론」 『한국사론 32: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 이호철, 박근필, 1997 「19세기 초의 기후변동과 농업위기」 『조선시대사학보』 2, 조선시대사학회.
- 전성호, 2002 「18-19세기 조선의 기후, 작황, 가격의 변동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25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성진, 2004 「19세기 후반 湖南의 農形과 給災」 『농촌경제』 27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崔洪奎, 1999 「正祖代 水原地方의 水田農業의 발전」 『正祖思想研究』 第2號 -八達李大均會長古稀記念, 正祖思想研究會.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

초판 1판 인쇄 2022년 12월 31일

초판 1판 발행 2022년 12월 31일

지은이 엄정섭

발행인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Tel. 063-280-7212 (Fax. 063-286-9206)
홈페이지 <http://jbstudies.re.kr>

제작 동인기획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물왕벌길 13
전화 Tel. 063-901-0066 (Fax. 063-901-0067)
등록 제2010-000036호
이메일 hun0205@hanmail.net

비매품

ISBN 978-89-6612-454-1 94910

ISBN 978-89-6612-452-7(세트)

御製勸農歌求農書繪卷

王者曰明年已未即我

先王親耕耨田之年也五紀 光御八方清言蓋以 勸民重農爲治教之原而恭考之化

豐功烈烈謐謐光顯大歲星周鼎甲儼臨于小子其敢不欽承

前聖人遺志以對揚 歌光之萬一也哉國以民爲本民以農爲生農不殖則民不穀民不穀

則國何又子食雖可減民不可以國食也民食之國其責在農農若不勤易云有秋民之爲

農也雖困於天時而當盡其地利也雖資於地利而當修其人事也雖五行之交運體四季

之寄旺土爰稼穡爲民司命而農田之勞勞亦多矣曰蓋壤之勞也曰引水之勞也曰鋤耨

之勞也曰耕耨之勞也曰播種之勞也曰耘耨之勞也曰收穫之勞也曰藏之勞也曰冬

祖春恰爲百日之勞及夫秋熟又有刈穫之勞場圃之勞而勞之遠深年分豐歉雖我農人

曷敢言勞言者朱夫子爲吏於東澤勞農山間對新墾而有錢又中熟之詩蓋所以勞之也勞

者民也勞之者吏也民之勞矣吏豈逸編我國被山帶海野多膏腴素稱禾食之鄉而興

作味方情放畝田暇失其職保介是時一有水旱籽種相繼空易故語微一言曰人事

之不能修而地利之不能盡也農之本在乎勤與勞而其要則水權曰興水功也相土宜也

利農器也三者爲數水功居先在易水地爲比地水爲師此井田之所以由法耳欲相土宜捨

水功奚爲哉故小劉荒原皇訓是矣大王胥手西詩是車甚以元聖之明農先立匠人以制

溝洫而載之周官魏有李憊之河秦有鄭國之渠於漢文翁之浚於唐韋丹之隄寧之碧

以濬以蕪難時雨不降六七月之間其苗勃興而今也堤敗久損官耕相繼如湖南之碧

湖西之合陽嶺南之恭儉關北之七里關東之蓮池海西之南池關西之黃池號稱關中大

堤而疏處不疏浮時不浮行灌其潤歲比不登爲當今之碩畫莫先乎已有之大堤而着手

推以及於均舍事使諸路各就掌內咸效其能誠力所到其應如響且水功之於土宜相

須而行酌險勝之異等種稈摩之殊性彰池則沒鰲鰲場則有瓜圃人新舍而來牟畝

人披芟而耘耨墾人重禾即詩書之所欲歌者也未藝而燥稷播行次美壤率歸

於烟茶而農則爲厲名山多人於火粟而穀不加賤宜南者不宜於北喜畝者不喜於野而

雲夢均澤原隰無別從以注缺盛而付種者罕則世利害相半而畢竟害二而利一愈兩

則歎在在皆然至於農器之便利東俗尤殊殊無異於義農以勇乃庫斯趨固向矣只言其

緊且要者水車者所以備暵也役車者所以乘人也無筆者所以貯穀也確確者所以春糧

也自古及今行者無間斷不能修其事而盡其利向曰農也不務耕也其餘云爾則不其近

於倒植而求茂乎菴之以九功勸之以九歌俾綠猷機之民靡不極其功而竭其智田無

不闢闢無不種種無不食則常事所謂人生在勤勤則不置觀志所謂人皆力勤義數豐穰

是耳竊嘗有爲於敦本務實之政命編農書欲領州郡而古今之各異也風土之不並也貧

富之難齊也事力之不逮也有不可以確定而膠乎則陪處萬里人各進良策我則受之

折衷而用之可謂農家之大矣夫農作之工仰候中星初叶氣運丑之半大寒之節土運始

生來之半大暑之節大陰濕土之氣始生丑與未相對而土始用事則載已往之難追擬方

來之資金以興嗣歲以圖農夫所貴乎孔以奚待春元之發驗今日丑日也明日丑月也未

刻之正節候安至壬午朔年此政其時况在國前功日月依辰安乎仰述之一端乎去爾京

外小大臣庶咸須熟悉如有已見可以有裨於三農者或以章疏或以歸問京而呈于廟堂

外而轉于監司而毋延乎異俗毋拘平古方山沿使毋各陳其當人謀允職克享千天以

康年貽我十粒我添集同我太平則斯可以仰副我

寧考厥功田功之 盛德至善而又可以助予小子育播百種之至誠苦心畏我農政緣我農

畫不翅如農夫之豐秋

予即昨二十二年建丑月朔一日己丑未正



9 788966 124541
ISBN 978-89-6612-454-1
ISBN 978-89-6612-452-7 (세트)



비매품